

## 제2부

# 언론 관련 판결 사례

---

제1장 손해배상청구

제2장 보도거제청구

제3장 기사삭제청구

제4장 기타 참고사례



# 제1장

## 손해배상청구

---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366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21574 판결

보도의 핵심적 내용이 허위이고 언론사가 각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취재활동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사건 개요]

원고는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이고 피고는 방송사이다. 피고 언론사는 원고가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모 협회 상대로 소송을 했으며, 아예 소송 자체를 몰랐다는 제자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원에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정정보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 기사 삭제를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자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들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개인정보를 원고 또는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 언론사에게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00만 원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 언론사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동일한 결론으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3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 이 사건 각 보도의 핵심적 내용이 허위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취재활동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가 '원고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 이른바 갑질을 고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학생들 모르게 그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적 내용을 보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보도의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1심 판결문

사	건	2021가합36625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5.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가. 'C' 프로그램의 말미에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 나.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초기화면에 위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D, E 등 피고가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해당사이트에서도 위 정정보도문이 검색 및 노출되도록 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1. 피고는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F> 기사를 삭제하라.
2.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방송되는 평일 'C' 프로그램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4]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고는 위 2.항의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한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09:00 부터 48시간동안 [별지 4]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G 뉴스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G 홈페이지 '뉴스'란 중 'H'면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본 뉴스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한다.
4. 피고는 위 3.항의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별지 4]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5. 피고는 [별지 4]의 정정보도문을 <D>, <E>, <I> 등 본 뉴스 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 전송한다.
6.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J대학교 생활체육대학 생활무용학과의 교수로 재직중이고, 피고는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 나. 피고는 2021. 5. 18. C 'H'라는 코너에서 "F"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F」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위 방송 보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정작 해당 학생은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라며 ‘원고가 명의를 도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소 제기의 당사자가 된 학생들에게 소송의 취지를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지 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 1) ‘명의로용’은 원고의 행태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 2) 설령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명의로용’은 진정한 동의 없이 제3자가 명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이 사건 보도는 허위보도가 아니다.
- 3)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피고는 교수의 갑질행태를 고발하고 사회적 경감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다.

## 3. 판단

### 가. 사실적시 여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보도 중 “해당 학생은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문장이나, “명의로용” 등의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고, 이 사건 보도는 그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들 몰래 명의를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1) 허위 사실의 적시 및 명예훼손 여부

가)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71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보도의 제목은 “F”이고, 그 보도 내용 중에는 “아예 소송 자체를 몰랐다는 제자의 이름까지 포함돼 있다”거나, “정작 해당 학생은 고소(소 제기)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과, “명의를 도용해 선거권 소송까지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 제기 전 학생들에게 ‘학생들 명의로 제소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사전에 알려 동의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두고 ‘원고가 학생들 몰래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학생들이 소송 자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 ① ‘도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그 주도 하에 K, L, M, N, O, P의 명의로 Q협회를 상대로 ‘선거권자 지위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확인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②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0. 4. 17. 위 학생들 중 K에게 전화하여 ‘Q협회에 가입승인이 된 사람들 중 일부가 투표권이 없어 선거권자 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규 가입한 회원 중에는 K을 대표로 하려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K에게 생각이 어떠한지 물어본 후 K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요구하였는데, K은 원고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나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 ③ 원고는 2020. 4. 20. L에게 전화하여 ‘Q협회에 신규 가입된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그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 하며, 신규 가입된 사람들 중 대표로 한두 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L의 이름으로 하려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괜찮겠는지 물어보았고, L은 이에 대해 “예. 괜찮아요.”라고 답하였다.
- ④ M, N, O, P은 2020. 7.경 직접 법무법인 R의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확인의 소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사건위임계약서 중 ‘사건의 표시’란에는 ‘사건명: 선거권자 지위확인의 소, 상대방: Q협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⑤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들 명의로 이 사건확인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원고 또는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피고는 제보자(1) 및 제보자(2)와의 통화내용을 이 사건 보도의 정당성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두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확인하였다  
 거나,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3) 피고 측 취재기자인 S은 2021. 5. 17. 원고와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중 S이 원고에게  
 “고소장(소장)을 냈던 제자들 가운데 그 고소장(소장)을 자기가 냈다라는 걸 모르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자, 원고가 “K, L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변호사에게 보내줬고,  
 변호사가 다 듣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S은 원고가 언급한 통화 녹음내용이  
 나 변호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보도가 원고와의 통화 바로 다음 날인 2021. 5. 18.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원고의 해명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4) 이 사건 보도 이후 2021. 8.경 원고는 위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위임장, 소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경찰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 (5) 이 사건 보도 직후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 국립대 무용과  
 교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오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담은 기사가 스크랩되었는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위법성의 조각 여부

- 가) 피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국립대학교 교수인 원고의 ‘교수 갑질’ 행태를  
 고발하고 사회적 경감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의 핵심적 내용이 허위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취재활동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가 ‘원고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 이른바  
 갑질을 고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학생들 모르게 그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적 내용을 보도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보도의

1) 비록 L에게는 ‘선거권자 지위확인’의 소가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려 한다고 설명하였지만,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혼동하기 쉽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Q협회를 상대로 쟁송을 하게 된다’고 인식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L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그의 명의를 도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방식(특히 “F”라는 제목, “명의 도용”이라는 표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및 형식,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보도에 필요한 취재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가 입은 피해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 등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각 보도를 제작·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각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2나2021574 손해배상(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3662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 가. 피고는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F> 기사를 삭제하라.
- 나.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방송되는 평일 'C' 프로그램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4]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다. 피고는 위 나.항의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한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48시간동안 [별지 4]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G 뉴스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G 홈페이지 '뉴스'란 중 'H'면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본 뉴스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한다.
- 라. 피고는 위 다.항의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별지 4]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마. 피고는 [별지 4]의 정정보도문을 <D>, <E>, <I> 등 본 뉴스 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 전송한다.

바.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보도의 제목은 “F”이고, 그 보도 내용 중에는 “아예 소송 자체를 몰랐다는 제자의 이름까지 포함돼 있다”거나, “정작 해당 학생은 고소(소 제기)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과, “명의를 도용해 선거권 소송까지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 제기 전 학생들에게 ‘학생들 명의로 제소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사전에 알려 동의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두고 ‘원고가 학생들 몰래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학생들이 소송 자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① ‘도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그 주도 하에 K, L, M, N, O, P의 명의로 Q협회를 상대로 ‘선거권자 지위확인소’(이하, ‘이 사건 확인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②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0. 4. 17. 위 학생들 중 K에게 전화하여 ‘Q협회에 가입승인이 된 사람들 중 일부가 투표권이 없어 선거권자 지위확인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규 가입한 회원

중에는 K을 대표로 하려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K에게 생각이 어떠한지 물어본 후 K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요구하였는데, K은 원고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나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 ③ 원고는 2020. 4. 20. L에게 전화하여 ‘Q협회에 신규 가입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그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 하며, 신규 가입한 사람들중 대표로 한두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L의 이름으로 하려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괜찮겠는지 물어보았고, L은 이에 대해 “예. 괜찮아요.”라고 답하였다. 비록 원고가 L에게 ‘선거권자 지위확인’의 소’가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려 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원고가 Q협회 협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협회에서 신규 가입자들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다투려는 취지’임을 L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L의 명의를 도용해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M, N, O, P은 2020. 7.경 직접 법무법인 R의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확인의 소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건위임계약서 중 ‘사건의 표시’란에는 “사건명: 선거권자 지위확인 소, 상대방: Q협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⑤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보도 이후 2021. 9.경 원고는 위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위임장, 소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경찰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도 직후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 국립대 무용과 교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오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담은 기사가 스크랩되었는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위법성의 조각 여부

가) 피고는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 원고 및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국립대학교 교수인 원고의 ‘교수 갑질’ 행태를 고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의 핵심적 내용인 「원고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이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취재활동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보도의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방식(특히 “F”라는 제목, “명의도용”이라는 표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1) 피고는 제보자(1) 및 제보자(2)와의 통화내용을 이 사건 보도의 정당성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두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확인하였다거나,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2) 피고 측 취재기자인 S은 2021. 5. 17. 원고와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중 S이 원고에게 “고소장(소장)을 냈던 제자들 가운데 그 고소장(소장)을 자기가 냈다라는 걸 모르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자, 원고가 “K, L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변호사에게 보내줬고, 변호사가 다 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S은 원고가 언급한 통화 녹음내용이나 변호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보도가 원고와의 통화 바로 다음 날인 2021. 5. 18.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원고의 해명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1158/2021가합3477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9765/2022나2009772(병합)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7246/2022다287253(병합) 판결

##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보도에서 모 국회의원 아들이 회사 대표임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면 정정보도해야 한다

### [사건 개요]

원고들은 J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가 최대 주주로 있었거나 가족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건설 관련 회사 다섯 곳이다. 피고 언론사가 J 의원과 그 가족들이 지배하는 건설회사인 원고들과 관련한 J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자 원고들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원에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 중 A 회사의 대표이사가 J 의원의 아들이 아니긴 하나, 피고 보도내용이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국회의원인 J 의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보도의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기각하였다.

2심 법원은 피고가 방송 중에 이해충돌 문제의 근거로서 J 의원의 아들이 A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라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보도이므로 1심과 달리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심을 유지해서 기각하였다.

피고 언론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A 회사에 대하여 J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서두에 J 의원이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점을 1번 언급한 외에는 J 의원과의 관계를 뒷받침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회사에 대하여는 J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건설회사라는 사정을 이해충돌 가능성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 A 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내용이 그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거나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1심 판결문

사	건	2020가합1158 각 정정·반론 청구 2021가합34773(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1.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E 주식회사 5. F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G
변	론	2021. 11. 26.
판	결	2022. 2.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H 프로그램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1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또한 피고는 별지1 정정보도문을

I면과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H 프로그램에 별지2 반론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2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또한 피고는 별지2 반론보도문을 I면과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고는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별지1 정정보도문 또는 별지2 반론보도문을 I 사이트의 대상방송이 게시된 화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은<sup>1)</sup> 건설 관련 회사이고, 피고는 「H」를 비롯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이다.
- 나. J은 국회의원(이하 위 J을 'J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7. 12.경부터는 해당 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자인데, ① A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L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는 J 의원과 그 배우자가 2014년경까지 최대주주로 있었고, J 의원의 배우자가 2016년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회사이며, ②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J 의원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고, ③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J 의원이 2014년경까지 최대주주로 있었던 회사이며, ④ 원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J 의원이 2013. 6.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J 의원과 그 배우자가 2014년경까지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이며, ⑤ 원고 F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M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는 J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고, J 의원과 그 배우자가 2014년경까지 주식의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이다.
- 다. 피고는 2020. 8. 23. 20:25분경부터 방송된 H 코너에서 「N」이라는 제목 하에 ① 원고들은 J 의원이나 그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로, 원고들이 보유한 O 공법(건설 신기술)을 사용하기로

1) A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0. 12. 2.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B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가 이 사건 소의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공사 수주의 주체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회사인 A 주식회사와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예정된 서울특별시 공사 4건에서 공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기술사용료로 총 33억 원 2,000만 원을 받았고, ② J 의원은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2015년경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용을 늘리라고 주문한 적이 있으며, ③ J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이후 원고들은 J 의원이 활동한 국회 K위원회 피감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내용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2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	허위 사실인 이유
①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O 공법을 사용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공사 4건에서 공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술사용료로 총 33억 2,000만원을 받았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공사 4건에서 ‘기술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설계 당시 정해진 하도급 계약금액만을 지급받았다.
②	2012년 J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외압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O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원고들은 2012년 이전에 21건을 수주하였고, 이후 16건을 수주하여 J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오히려 수주 건수가 줄어들었다.
③	원고들은 J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2년 이후 J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원고들은 개별 회사의 기술, 노하우, 신용, 회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하여 정당하게 공사를 수 주하였고, J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다.
④	A의 대표이사는 J 의원의 아들이다.	A의 대표이사는 J 의원의 아들이 아니다.

## 3.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이때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 지는 표현의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 나. [표] ①, ④항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표] ①, ④항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3 내지 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의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내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들(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이 A, 원고 E, 원고 F 등이 보유한 O 공법(건설 신기술 P)을 사용하는 공사 4건(Q, R, S, T)을 발주하였고, 위와 같이 발주한 공사들의 계약금액 중 신기술 비용은 합계 33억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의원실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등이 발주한 위 4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은 기술사용료가 아니며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기술사용료라고 보도한 33억 2,000만 원은 서울특별시 등이 위 4건의 공사를 발주할 당시 신기술(O 공법)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K부 훈령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건설신기술의 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이용의 대가로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면서 받는 공사대금에 기술사용료 상당의 대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등이 발주한 위 4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각 공사별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sup>2)</sup>을 지급받았는데 위 공사대금에는 서울특별시 등이 신기술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위 4건의 공사 중 Q의 경우 신기술 사용협약은 발주처와 신기술 보유자인 A, 주식회사 U, 원고 E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정작 하도급계약은 위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원고 D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신기술 보유자인 A, 원고 E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한 ‘공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술사용료로 총 33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그 세부내용에 있어 진실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사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세부내용을 함축한 표현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완전한 허구의 영역에 다다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A의 대표이사는 B로 J 의원의 아들이 아니긴 하나, 피고는 A이 J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J 의원의 아들이 A의 대표이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J 의원과 그 배우자가 2014년경까지 최대주주로 있었고 J 의원의 배우자가 2016년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J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 J 의원의 아들인 V은 A이 보유한 O 공법 관련 특허권의 최초 등록권리자로서 A과 함께 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J 의원과 그 배우자도 A의 최대주주로 있었으므로 V도 A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보도 내용은 그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거나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표] ②, ③항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표] ②, ③항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란 기재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2) A은 R 공사 중 O 공사를 계약금액 4,492,400,000원에, S 중 O 공사를 7,447,600,000원에 각 하도급 받았고, 원고 D은 Q 중 O 공사를 3,477,87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며, 원고 F은 T 중 비개착공사(O 공사로 보인다)를 1,339,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증거가 없다.

- 1) 원고들은 J 의원이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2015년경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용을 늘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과, J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이후 원고들이 K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 2) 피고의 보도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들에 더하여 J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원고들과 J 의원 사이의 밀접한 관계 등을 전달함으로써 J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J 의원의 행보가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어떠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언론사로서의 사회 감시기능, 합리적 의혹제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핵심을 나타내는 제목을 「N」이라고 설정하여 J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하여 보도할 것을 분명히 하였고, 보도내용에서도 “부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국회의원 아버지는 피감기관에 대해 지적을 하고, 건설업자 아들은 피감기관에서 공사를 따내고, 이걸 이해충돌 아닌가요?”, “잡음을 없애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J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면 되잖아요”,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J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과 그에 대한 J 의원의 행보에 대하여만 주로 논평하였을 뿐 J 의원이 원고들의 공사 수주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상을 줄만한 단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지도 아니하였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의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 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J 의원이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J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K위원회의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왔고, 이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J 의원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공사를 수주하였다거나 J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액이 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 점, J 의원이 K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J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K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이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정하여 발주한 공사에 신기술 보유 회사로서 참여하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서울특별시 등이 '신기술 비용'으로 책정한 공사대금을 원고들이 '기술사용료'로 지급받았는지 실제 하도급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이라는 보도의 핵심 주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대표이사 J 의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J 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들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하여 '모두 공개경쟁 입찰이긴 했다'고 보도하였고, '회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고 공사 수주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J 의원의 해명을 함께 보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그에 관한 이 사건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보도가 전달하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기본적으로 J 의원이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기간 J 의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그 피감기관들 사이에 상당 액수의 공사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을 토대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J 의원 행보의 부적절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보도내용의 일부에 다소 과장되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 한 소지의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점, J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하고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더욱 완화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방식이 사용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내용은 보호되는 언론 자유의 영역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2나2009765 각 정정·반론 청구 2022나200977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희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E 주식회사 5. F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G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1158, 2021가합 34773(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9. 2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희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H 프로그램 말미에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
  - 나.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H’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공지글 게시 방법으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H’ 프로그램 중 2020.

8. 23.자 100회 방송 “N” 다시보기(인터넷주소 2 생략) 동영상 첫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 방송이 검색되는 한 위 정정보도문도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다. 원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H 프로그램에 [별지2]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2]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피고는 [별지2] 정정보도문을 I면과 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H 프로그램에 [별지3] 반론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3]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또한 피고는 [별지3] 반론보도문을 I면과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고는 위 제2항 또는 제3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별지2] 정정보도문 또는 [별지3] 반론보도문을 I 사이트의 대상방송이 게시된 화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20.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A 주식회사(2020. 2. 17. 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 건설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0. 12.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이사 B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2. 3. 2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편의상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 건설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지상파 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이다.
- 나. 국회의원 J(이하 ‘J 의원’이라 한다)은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해오면서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7. 12. 경부터 해당 위원회 간사를 역임하였다.
- 다. ① 원고 A은, J 의원과 그 배우자가 보유 지분을 합쳐 2014년경 무렵까지 주주명부상 최대 주주로 있었고, J 의원의 배우자가 2010. 3. 26.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이다. ②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J 의원의형이 2003. 8. 18. 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③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은 J 의원과 그 배우자가 보유 지분을 합쳐 2014년경 무렵까지 주주명부상 최대 주주로 있었던 회사이다. ④ 원고 E 주식회사(이하 ‘원고 E’이라 한다)는 J 의원이 1997. 7. 8.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J 의원과 그 가족이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다. ⑤ 원고 F 주식회사(이하 ‘원고 F’이라 한다)는 J 의원의 아들이 2013. 5. 30. 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고, J 의원과 그 가족이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다.
- 라. 피고는 2020. 8. 23. 방송된 H 프로그램 100회 방송에서 「N」이라는 제목 아래 J 의원과 그 가족들이 지배하는 건설회사인 원고들과 관련한 J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에는 J 의원이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에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4건의 공사에서 J 의원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A이 보유한 신기술(O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A 이 신기술사용료 3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고, J 의원이 국회위원으로 된 이후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14건의 합계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호증, 을 제4 내지 1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3]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	허위 사실인 이유
①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O 공법을 사용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공사 4건에서 공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술사용료로 총 33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공사 4건에서 '기술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설계 당시 정해진 하도급 계약금액만을 지급받았다.
②	2012년 J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외압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O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원고들은 2012년 이전에 21건을 수주하였고, 이후 16건을 수주하여 J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오히려 수주 건수가 줄어들었다.
③	원고들은 J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2년 이후 J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원고들은 개별 회사의 기술, 노하우, 신용, 회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여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하였고, J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다.
④	A의 대표이사는 J 의원의 아들이다.	A의 대표이사는 J 의원의 아들이 아니다.

## 3.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위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위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표] ①항 원고들 주장의 보도 내용에 관한 판단

### 1)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 A(변경 전 상호 L)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기술사용료로 8억 5,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허기술의 이름은 O 공법입니다.’, ‘원고 A은 총 4건, 33억 2,000만 원을 가만히 앉아서 서울특별시에서 받아 갔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4건의 공사에서 원고 A이 보유한 특허기술인 O 공법이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A이 위 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3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 A이 그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용 대가로만 위 3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3 내지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적시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신기술인 ‘O 공법’은 원고 A, E, F을 비롯한 3개 회사와 J 의원의 아들을 비롯한 개인 2명 등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국회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그 산하기관들(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이 위 O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 4건을 발주하였고 위와 같이 발주한 공사들의 계약금액 중 신기술 관련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 합계가 33억 2,000만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② 원고 A은, 서울특별시 등이 발주한 위 4건의 공사에서 공사를 실제 하도급 받아 그 하도급대금을 받은 것이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기술사용료 명목으로만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K부 훈령 제463호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사용의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6조)고 정하고 있다. 원고 A, D, F 등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위 4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각 공사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기술사용료라고 보도한 33억 2,000만 원은 서울특별시가 위 4건의 공사를 발주할 당시 신기술(O 공법)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 중 이 부분 기술사용료의 핵심적 내용은 국회 K위원회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발주처가 특정 관급 공사들에 대하여 J 의원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건설회사가 보유한 신기술(O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이 위 신기술의 보유업체로서 해당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원고 A이 실제로 위 신기술 보유업체로서 위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서울특별시가 위 신기술의 사용료 명목으로 33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보도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보도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술사용료로 총 33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그 세부내용에 있어 진실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사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세부내용을 함축한 표현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4건의 공사에서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3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건설회사로 원고 A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그와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있는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도 중 원고 A이 위 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3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실적 주장이 그 자체로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그로 인해 위 나머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표] ②, ③항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표] ②, ③항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표] ④항 원고들 주장의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A의 대표이사 J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0,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A의 대표이사는 B로 2016. 3. 3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해오고 있고, J 의원의 아들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의 대표이사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원고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도에서 다루는 주된 주제는 그 제목과 이 사건 보도 말미에 언급된 “가족과 측근 명의로 5개 건설회사 보유. 그런 사람이 계속 국회 K위원회를 맡아도 되는 걸까? 이해충돌 소지는 없을까?”라는 표현처럼, J 의원의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서의 지위와 J 의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J 의원의 국회의원 재직 중 수주한 공사 내역 등에 비추어 J 의원이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J의 의원의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J 의원과 원고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는 이 사건 보도가 전달하려는 주제인 J 의원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시청자들에게 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이러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 사례로서 이 사건 보도 첫 부분을 신기술(O 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원고 A(변경 전 상호 L)의 공사 참여 사례를 들었다. 즉, 이 사건 보도에서는 J 의원이 2015년 국회 K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서울특별시에 신기술 사용을 늘리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이후 서울특별시는 일부 공사에서 특정 신기술 사용을 공사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였고,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한 원고 A은 2017년부터 매년 1건씩 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참여한 점 등을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보도 서두에 원고 A에 대하여 “W 정당 J 의원이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J 의원의

장남이 대표이사입니다.”라고 원고 A의 대표이사가 J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 원고 A이 신기술(O 공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위 신기술 사용을 조건으로 한입찰 공고를 하였음을 언급한 후 “공사를 따내려면 L, 즉 J 의원 아들 회사에게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 보도에서는, 공사에 어떠한 특허기술을 사용할지는 공공기관이 결정하는데, 조금씩 변경시킨 비슷비슷한 특허 기술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홍보전 또는 로비전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에 이어 “J 의원 아들의 회사는 어떻게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후 J 의원의 2015년 국회 K위원회의 국정감사 발언을 발췌하여 보도한 다음, 그에 이어진 보도에서는 “공교롭게도 J 의원이 이런 말을 한 뒤에 2017년부터 매년 한 건씩, J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따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 중 3건이 J 의원 아들 회사, 즉 L이 보유한 O 공법을 발주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도 국회 국토위원회의 피감기관입니다.”, “모두 J 의원 아들 회사라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발주 담당 공무원도 J 의원 아들 회사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로 아들 회사가 돈을 벌었다?”, “부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국회의원 아버지는 피감기관에 대해 지적을 하고, 건설업자 아들은 피감기관에서 공사를 따내고, 이건 이해충돌 아닌가요?”라고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A에 대하여 J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서두에 J 의원이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점을 1번 언급한 외에는 J 의원과의 관계를 뒷받침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 대하여는 J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건설회사라는 사정을 이해충돌 가능성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 A의 대표이사에 관한 내용이 그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거나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기초사실 등에서 본 것처럼 원고 A이 그 지배구조와 역대 대표이사 등에 비추어 J 의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이고, J 의원의 아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언급된 신기술(O 공법)의 공동특허권자 중 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다) 이 사건 보도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A에 대해 J 의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실제로 원고 A은 2016. 3. 30.경 이후부터는 J 의원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로 재직해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해 원고 A의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도에서 이 부분 적시사실은 원고 A의 대표이사가 J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거나 위 사실적 주장이 위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그로 인해 위 나머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소결론

- 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앞서 라항에서 본 것처럼 [표] ④항 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사실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허위사실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2)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이 사건 보도와 위 정정보도문과의 관련성,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한 문구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별지1]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같은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정보도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

## 4.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A의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된 부분 제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0쪽 마지막행부터 제12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20행부터 제12쪽 제8행의 “J 의원이 … 해당하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J 의원이 국회 K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J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고 A이 국회 K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이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정하여 발주한 공사에 신기술 보유 회사로서 참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서울특별시 등이 계약금액 중 ‘신기술 비용’으로 책정한 공사대금을 원고 A이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실제 하도급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그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이라는 보도의 핵심 주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 A의 기술사용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설령 이를 통해 J 의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의 기술사용료 문제 역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5항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2쪽 제18행부터 제14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6, 17행의 각 “2003.”을 “대법원 2003.”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8행부터 제14쪽 제15행까지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5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이 사건 보도는 J 의원이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기간 J 의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국회 K위원회 피감기관들 사이에 상당 액수의 공사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을 토대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J 의원 행보의 부적절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보도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보도 중 ‘원고 A의 대표이사가 J 의원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적 주장이 허위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일부에 다소 과장되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의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점, J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도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적인 사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더욱 완화되어야 하는 점, 원고 A은 J 의원과 그 배우자가 최대 주주로 있었고 J 의원의 배우자가 2016년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J 의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J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원고 F이고 원고 A의 변경 전 상호였던 L과 그 상호가 서로 유사한데, 담당 기자는 이 사건 보도에 앞서 원고들의 각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상호의 유사성으로 인해 원고 A의 대표이사를 J 의원의 아들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A은 물론 다른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보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청구 등까지 하는 것으로 선택하더라도, 그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6.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C, D, E, F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3심 판결문

사	건	2022다287246 각 정정·반론청구 2022다287253(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1.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원고, 부대상고인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E 주식회사 5. F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9765, 2022나2009772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3. 2. 2.

###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100239 판결

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언론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모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이다. 인터넷신문의 발행·편집인이자 대표기자인 피고가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 원고를 포함한 정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선거 사흘 전에 게재하자 원고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대표기자와 인터넷신문 등을 상대로 법원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선관위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보도가 국회의원 선거가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점, 원고와 경쟁 후보가 계속 접전을 벌이다가 선거 개표 결과 불과 564표(0.73%) 차이로 경쟁 후보가 당선된 점, 피고 언론사에서 보도 게재 7시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고발되었다는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2천만 원 지급을 명하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항소했으나 취하해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선거가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0. 4. 12. 피고 대표기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선거개표 결과 원고와 불과 564표 차이로 피고 경쟁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경쟁후보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법익의 침해 정도, 법적 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위 피고들은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인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음에도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낙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결문

사	건	2022가단100239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3. 8

##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2. 부터 2023.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자 G 선거에서 'H' 선거구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고 B는 정기간 행물발행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인터넷신문인 'J'의 발행인, 편집인, 대표기자이며, 피고 D는 위 'H' 선거구에 출마한 K정당(현 L정당)의 후보자이고, 피고 E은 위 선거에서 피고 D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 B는 2020. 4. 12. 15:34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N'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F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H선거구 지역에서 투표 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I정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J'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I정당 H선거구 선거구 후보자인 원고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 다. 피고 E은 2020. 4. 12. 19:15경 피고 D의 휴대폰 번호로 이 사건 기사에 연결되는 “선관위 I정당 H 관계자 선거법 위반 무더기 검찰고발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H' 선거구민 55,905명에게 전송하였다.
- 라. F자 G 선거 'H' 개표 결과, 전체 유권자 125,840명 중 77,591명의 유효투표수 가운데 원고가 37,603표(49.09%), 피고 D가 38,167표(49.82%) O이 826표(1.07%)를 득표하여 피고 D가 당선되었고, 원고와의 득표수 차이는 564표(0.73%)이다.
- 마.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J'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합211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한편 P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B와 함께, 피고 E이 2020. 4. 12. 19:15경 피고 D의 휴대폰 번호로 이 사건 기사에 연결되는 “선관위 I정당 H 관계자 선거법 위반 무더기 검찰고발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H' 선거구민 55,905명에게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고 E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0213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피고 D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1698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피고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하였고, 피고 D와 피고 E은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기사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 하였다.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 행위의 공동만으로 성립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허위기사의 게재 및 배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참정권 침해, 낙선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C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당하였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인인 피고 B는 공직후보자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 D, E의 주장

피고 E은 이 사건 기사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허위내용인 이 사건 기사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 D는 이 사건 기사의 작성과 피고 E의 배포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 E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없다.

### 3.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인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신문인 'J'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음에도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낙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 심에서는 피고 B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고 원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B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참고하였다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4. 12. 제공한 'Q'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등 문건에는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 3) 피고 B는 2020. 4. 12. 15:34경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고, 7시간 후인 같은 날 22:52경 스스로 원고가 고발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여, 피고 B도 해당 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4) 'H' 선거구에서 원고와 피고 D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격차가 근소하였고,

실제 개표 결과 피고 D가 불과 564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피고 B는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0. 4. 12.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들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경위, 보도의 형식, 내용, 표현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 1)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선거가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0. 4.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 2) 선거개표 결과 원고와 불과 564표 차이로 피고 D가 당선되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D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법익의 침해 정도, 법적 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다만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고, 약 7시간 후에 ‘원고가 고발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한 사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I정당 H선거구 지역위원회 간부들이 R면 및 S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P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피고 D가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기사 게재일인 2020. 4.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참조).
- 2) 피고 E이 2020. 4. 12. 19:15경 피고 D의 휴대폰번호로 이 사건 기사에 연결되는 문자메시지를 ‘H’ 선거구민 55,905명에게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함에 있어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수사를 받는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 E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E의 항변은 이유 있다.

- 가) 피고 E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0213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나) 피고 E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피고 B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 다) 피고 E은 2020. 4. 5.경부터 이 사건 기사 게재 시점까지 피고 B와 연락한 내용이 없다. 피고 D는 'J' 외에도 38개 언론사와 선거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피고 D는 2020. 4. 11. 15:30경 기자회견을 통해 “I정당 측이 주최한 모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다. 원고의 당원으로 활동 중인 T, U 등이 적발되었다. 원고는 이 모임 도중 참석하여 피고 D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여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① I정당 H선거구 지역위원회 간부인 V, W, X 등이 R면 및 S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P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② I정당 당원 T, U을 원고의 당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당시에 위 모임에서 피고 D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기재된 인쇄물이 배부되었고, 원고가 위 모임의 중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의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D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피고 D의 선거사무장인 피고 E이 2020. 4. 12. 19:15경 피고 D의 휴대폰번호로 이 사건 기사에 연결되는 문자메시지를 'H' 선거구민 55,905명에게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피고 D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1698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② 피고 D가 피고 E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피고 B의 허위기사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고 D가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 B도 피고 D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 E의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B 등의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피고 E의 이 사건 기사의 배포를 인식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나아가 피용자가 제3자 등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45396 판결 참조), 피고 E이 이 사건 기사에 연결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됨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 D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38288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다수 매체에 얼굴을 알리면서 공적 인물로 활동한 사람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한 반론 인터뷰를 하였고,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최초의 모 합창단을 운영하였던 단체 대표로, 중요한 모 행사에 합창단이 초대받자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원고와 직원들을 촬영하였다. 피고 언론사는 해당 촬영 영상을 제공받아 보도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다. 원고는 촬영한 학부모, 언론사 및 간부를 상대로 본인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총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1심, 2심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할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침해 행위로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하므로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고 언론사와 간부에게 명하였다. (학부모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1심 판결문은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전문 수록함)

3심 대법원은 원고가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 와서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방송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초상권 침해 방송 전날 원고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반론 인터뷰를 한 점, 언론사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가 피고가 입을 초상권 침해 피해보다 더 크다고 보고 기각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 요지]

-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 원고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원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 전날 원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보도영상의 다른 부분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방송 자막에도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다. 여기에 피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여 이 사건 방송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19나38288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 고 , 피 항 소 인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C 2. D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8가단21556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7. 16.

### 주 문

1. 원고와 피고 C,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C, 피고 D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000,000원, 피고 C, D는 각자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C, D는 각자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 :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C, D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카톡방에 공유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제1심증인 L의 증언,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부모 3명(피고 B 포함)과 피고 C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동영상을 올려 공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판단하였듯이 피고 B가 I 측 기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달해 준 것이 원고의 공표 거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보기 어려운 이상 그 과정에서 촬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피고 C만이 참여한 대화방에 이 사건 동영상을 올린 것이 별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피고 C, D가 이 사건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클로즈업시키고 원고의 음성을 확대하여 원고의 악성향을 강하게 증폭시키는 편집기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음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여 청구금액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로는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악성향을 부각시키는 기법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편집하여 제작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12호증(이 사건 방송)과 갑 제23호증(이 사건 동영상)의 영상을 비교해 보면 화면의 비율이 일부 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오랜 기간 활발하게 정치·사회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얼굴이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공표거절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1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오랜 기간 다문화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해 오면서 다수의 언론매체에 원고의 이름과 얼굴이 등장하였고, 또한 원고가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며 활동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공인의 경우 언론에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넓게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앞서 든 이익형량의 법리(제1심판결의 이유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 참조)는 여전히 적용된다. 갑 제2, 1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C, D가 보도를 통해 알리고 문제제기하고자 하였던 부분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창단의 참가비 전액을 지급함에도 이 사건 센터가 학부모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과 비영리단체의 대표자인 원고가 정치활동을 하며 단원인 어린이들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앵커가 진행하는 도입부분 및 이 사건 방송 부분 이후 분량에서 원고의 얼굴(공식석상에 나온 모습)을 노출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의 목적과 원고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송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이 명백하고 학부모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고 소통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 이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고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 사건 동영상을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방송할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심 판결문

사 건	2020다253423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1. C 2. D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38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E합창단인 F 합창단(이하 '이 사건 합창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로 있다.
- 나. 이 사건 합창단은 K올림픽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행사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3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 B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 다. 피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M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위 방송 중 18초 부분에서 50초 부분까지 약 32초간 이 사건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다(이하 위 약 32초간의 방송 부분을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그대로 방송할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하므로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3.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 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 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가)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원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합창단의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함에도 이 사건 센터가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 방송 전달에는 관련 보도도 방송되었다. 그 보도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이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E합창단인 이 사건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라)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 전날 원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보도영상의 다른 부분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방송 자막에도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다. 여기에 피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여 이 사건 방송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을 통한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을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 이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5. 서울고등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200731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7531 판결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면책된다

#### [사건 개요]

원고는 부산 모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방송사이다. 피고 언론사는 원고가 2014년 시의원으로 한 규제 해제 촉구 시정질의가 원고측 소유 부지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사 및 소속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및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심 법원 역시 원고가 시의원 재직 중 한 시정질의의 발언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했다는 보도는 시정질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 사실 적시가 아니며, 순환도로 개설 공사가 원고 측 소유 토지 지역에서 담보 상태에 있다가 중단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보도는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고 봐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심을 확정하였다.

#### [판결 요지]

-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가 부담한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일몰제로 인한 미집행 도로구역 해제를 '공사 중단'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 허위보도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도로구역 중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된 부분만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가 2020년 상반기경 도로구역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사의 중단'이란 전체적인 도로 개설공사가 장기간 조금씩 진행되다가 원고 측 소유 토지지역 부분에서 더 진행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것이 설사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 원고는 전직 부산광역시의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 또는 공적 업무에 대한 사회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의 경우 그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된다. (중략)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그 편집 방법이 사실을 본질적으로 왜곡할 정도에 이르러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들이 정치적 의도 하에 이 사건 보도를 한 의심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 또는 그 외에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사안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 내지 감시 기능 차원에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2나2007318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원 고, 항 소 인	D
피 고, 피 항 소 인	1. E 주식회사 2. F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가합3184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G'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되,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며, 자막의 크기는 정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고,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첫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통상 기사 제목에 사용하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 48시간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이 통상의 기사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후, 2020. 4. 15.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부산 I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 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종합편성채널 E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F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 나. 피고들의 보도

- 1) 피고 회사는 피고 F의 취재에 기초하여 2021. 2. 8. E의 'G' 프로그램에서 J, K 라는 제목으로 [별지 2-1] 및 [별지 2-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 2)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진행 중이던 M 순환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순환도로 공사계획은 일몰제에 따라 무산되었는데, 이는 공사 예정이던 일부 부지가 원고 측 소유인 것과 관련이 있다.
  - ②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뒤에는 원고 측 소유 토지에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 ③ 원고가 2014년 시의원으로서 한 규제 해제 관련 시정질의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보도의 개별 내용을 특정할 때 그 순번에 따라 ‘① 내지 ③ 부분’이라 한다).

순번	원고가 특정한 사실적 주장
①	진행 중인 도로공사의 특정 부지가 원고 측 소유인 점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중단, 무산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끊겼다.
②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뒤에 원고 측 소유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③	원고의 2014년 시정질의를 당시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달리, ① L 인근에는 애초에 순환도로라는 명칭의 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사유지에 도로가 만들어지다가 중단된 사실도 없으며, 원고 측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예정하고 있던 도시관리계획이 2020. 7.경 그대로 실효된 것은 해운대구청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② 원고 측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전후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등으로 원고가 특혜를 얻은 바 없으며, ③ 원고의 시정질의는 원론적인 내용일 뿐 이해충돌성 발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실의 적시 여부

#### 1)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 2) 판단

### 가) ①, ② 부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부산에는 L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미터를 남겨 놓고 도로가 끊겨서 순환도로란 말과 다르게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긴 땅의 주인을 확인했더니, O정당 D 의원이었습니다. 이 땅은 다음 달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규제도 풀릴 전망입니다. E 취재 결과 부산 시의회가 특혜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걸로 파악했습니다.’는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와 같이 ‘L 근처의 순환도로가 200미터를 남겨놓고 도로가 끊겼다.’는 부분 바로 뒤에 ‘도로가 끊긴 땅의 주인이 원고였다.’는 부분과 ‘부산시의회는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는 부분이 이어지는 이 사건 보도의 구성과 함께, 이 사건 보도 중 지역주민의 “L 가는 길인데 이걸 하나 해놓고 길 만들 때 땅 내준 사람은 뭐냐고요. 바보잖아요. 재(D 의원 측 땅)는 살려주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로서는 M 순환도로 공사가 중단, 무산되어 해당 도로가 끊긴 것은 해당 부지 중 일부가 원고 측 소유인 것과 관련이 있고, 원고 측 소유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릴 예정이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①, ② 부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③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5, 3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경 부산광역시의회으로서 시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이 방지되고 있으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를 추진해 달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일명 쓰나미처럼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시장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는 취지의 시정질의를 한 사실, 당시 Q이 위 시정질의에 대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해지하기 바란다.’, ‘존치하거나 해지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바란다.’, ‘전폭적인 예산확보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시정질의를 마무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보도 중 ③ 부분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2014년경 M 순환도로로 예정된 부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를 추진해 달라.’,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들에게 보상할 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하였던 것은 이해당사자가 규제 해제를 요구한 것이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 같은 당시 시정질의 내용과 ③ 부분의 보도 취지와 함께,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위 발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상한 시정질의’, ‘이해충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인 점,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가 일부 구간으로 편입되어 지정된 T 도시계획시설(도로 : U) 역시 2014. 3.경 원고가 시의회에서 지적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 중 ③ 부분은 원고의 시정질의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피고들의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 1) 관련 법리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 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 2) 판단

갑 제28, 36호증, 을 제1, 9, 10, 11, 12, 14, 18, 27,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② 부분에 관한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록 ‘M 순환도로’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부여된 바는 없으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위 도로는 L 주변을 한 바퀴 둘러싸는 형태로 연결될 예정이었고, 이 사건 보도 전부터 이미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M 순환도로'라고 지칭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나) L 주변을 한 바퀴 도는 형태로 이어지는 도로의 개설은 이미 1970년대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이래 수년에 걸쳐 조금씩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된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개설은 모두 이루어졌으나<sup>1)</sup>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된 부분만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 다) 해운대구청은 2019. 6.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후, 2020년 상반기경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를 도로 부지로 예정하고 있던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실효 결정을 하였으나, 2017년경에는 반대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M 순환도로 예정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반려한 적이 있고, 일부 주민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해운대구에 M 순환도로 완공을 위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 언론 등이 위와 같은 순환도로 관련 도시계획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실효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집행계획 검토 내용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나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일몰제로 인한 미집행 도로구역 해제를 '공사 중단'으로<sup>2)</sup>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 허위보도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도로구역 중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된 부분만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가 2020년 상반기경 도로구역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사의 중단'이란 전체적인 도로 개설공사가 장기간 조금씩 진행되다가 원고 측 소유 토지지역 부분에서 더 진행되지 못한 채 담보 상태에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여 지도 있으므로, 이것이 설사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의 해제가 있거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몰제' 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이 실효되어 당장의 제한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일단 그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는 있게 된 상태로, 그 무렵 부산시에서는 제한이 사라지게 된 후 건축이 허용되는 용적률 등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의 해제', '아파트 등 건설' 등의 표현은 장래의 가능성 등을 기초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으로 볼 수

1)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된 부분만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2) T 도시계획시설(도로 : U)은 전체 1,300m 중 86%가 넘는 1,124m 구간에 도로가 개설된 상태이다.

있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위 도로 완공이 무산된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어떠한 비위행위나 부조리를 저질렀다는 등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내용 또한 함께 보도하였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사실이 적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정정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가 사실과 정황에 근거한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표명을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사실이 적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 2) 이 사건 보도는 L 근처의 도로 완공이나 시의원으로서 이해충돌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위 도로 완공 무산 및 장기간 미집행 경위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및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이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이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원고는 전직 부산광역시의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 또는 공적 업무에 대한 사회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의 경우 그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된다.
- 4)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취재활동을 수행하였고, 논란이 된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을 듣는 등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 5) 이 사건 보도는 ①, ② 부분 적시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도 내용에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혹 제기임을 알 수 있고,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의 가치를 더 높일 것이다(따라서 도로 개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한 보상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반론도 소개하고 있다.
- 6) 원고는,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F과 통화 당시 '공사비용과 견주어보면, 보상비가 둘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도에는 마치 도로공사 중단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보상비가(공사 중단 이유의)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진술한 것처럼 허위로 각색되어 있는바, 이는 취재 내용의 본질적 왜곡이자, '악마의 편집'을 통하여 허위 보도를 작성한 것이거나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위 공무원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M 순환도로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공사비용은 보상비용에 비하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보상비가 제일 큰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 F이 당시 위 공무원에게 한 질문의 정확한 내용과 해당 공무원의 답변 내용 중 일부가 생략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보도의 성격상 방송 시간의 제약이 있고,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들의 편집 방법은 위 공무원의 전체적인 답변 취지에 대한 피고들 나름의 해석 내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그 편집 방법이 사실을 본질적으로 왜곡할 정도에 이르러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7) 원고는 피고들이 정치적 의도 하에 이 사건 보도를 한 의심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 또는 그 외에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사안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 내지 감시기능 차원에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3심 판결문

사 건	2023다227531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원 고, 상 고 인	A
피 고, 피 상 고 인	1. B 주식회사 2.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200731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106829 판결

###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공론 형성을 위한 주관적 논평을 넘어 기자의 실제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잘못 인식되도록 하였다면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하다

#### [사건 개요]

원고는 모 언론사 소속 기자로, 수감 중이던 모 회사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비리내역이 있으면 알려달라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향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유튜브 채널 출연자로, 본인이 진행하거나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원고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편지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피고가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편지 내용의 단순한 인용 내지 정리한 것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해당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 이후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법원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비록 기자는 다양한 사회현실을 취재하고, 공적인 관심과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제를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원고가 기자의 신분이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기자인 원고의 취재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만으로 원고가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는 국가·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고, 원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비판함으로써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언론개혁에 관한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할 목적에서 공론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관적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요지를 인용 내지 정리한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원고를 ‘검사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하였다 할 것인데, 이는 우리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는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판결문

사	건	2022가단10682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3. 5. 30.
판결선고		2023. 7. 1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6.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C언론 소속 기자로서 2020. 2.경부터 수감 중이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에게 4차례에 걸쳐 '검찰이 F 관련 수사를 재개하였으므로, 당신과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G 등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건넨 것과 같은 비리내역이 있으면 알려 달라. 해당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당신이 향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보냈고, 이후 2020. 2. 25.부터 2020. 3. 22. 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동료 기자인 H와 함께 E의 대리인 I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편지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나. J정당 K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편지와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기재된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고 한다)을 전달받았다.

- 다. 피고는 2020. 4. 6.부터 2020. 10. 9.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L의 라디오 프로그램 'M'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O의 프로그램 'P'에 출연하여 별지 목록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와 H는 2020. 8. 5. '이 사건 편지 등을 통하여 E에게 자신들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G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E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 하여금 정관계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강요미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구체적인 해악고지의 점에 관한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고단5321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23. 1.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노1918호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피고는 자신이 진행했던 L 라디오 프로그램 및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O에서 '원고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G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C언론가 보도하는 모든 방송, 신문이 따라 할 것이고, Q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고, 다음 정권은 R정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G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을 우리가 이미 준비해뒀고 그리고 지체 없이 G 집과 가족을 털고, S 재단을 압수수색한다.'"라고 이 사건 편지 및 녹취록에서 말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 사건 편지 및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무고의 교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수사기획의 취지로서, 이 사건 편지 및 녹취록의 내용을 인용 내지 정리한 것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느냐, 이로 인하여 언론인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느냐.
- 3) 피고는, 이 사건 발언 당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언론인으로서 피고가 같은 시기에 정치적 논쟁 및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었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sup>1)</sup>과 관련 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 내지 사회적 이슈에 관한 보도와 함께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은 언론인으로서의 의견 내지 추상적 가치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이 이 사건 편지 등에서 언급된 내용 또는 그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의 표현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청취자들로서는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발언이 피고의 해석을 근거로 한 피고의 독자적인 의견 내지 추상적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원고가 사실상 검사와 공모하여 E에게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이 단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의견 내지 추상적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피고는 이 사건 발언 당시 이 사건 편지 및 녹취록을 직접 검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4. 6. 자신이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인 M에서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것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할 수 없이 밝히자면 정확하게 2월 22일입니다. C언론기자가 수감된 F회사 E 전 대표에게 편지를 쓴 게 2월 17일이에요. 5일 만에 제가 편지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M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 2020. 4. 8.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O에서도 "제가 이 사건을 제보받은 것은 F회사 E 전 대표에게 C언론

1) 원고와 검찰 고위관계자가 결탁하여 E로부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제보 받으려고 하였다는 의혹

기자가 편지를 쓴 2월 17일로부터 5일 후에요. 2월 22일 날. (중략) 구체적이고 확실한 녹취와 함께 드러날 공작 그거를 잡아낼 기회라고 저는 봤어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발언 이전인 2020. 2.경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을 입수하여 이를 검토한 후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위법성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 다84236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이 사건 발언은 언론보도가 아니고, 비록 기자는 다양한 사회현실을 취재하고, 공적인 관심과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제를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원고가 기자의 신분이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기자인 원고의 취재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만으로 원고가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언론보도에 관한 법리나 공적 인물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설령 위 법리나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이

- 운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및 유튜브 방송에서 청취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편지 및 녹취록에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편지를 검토하였거나 이 사건 녹취록에 근거한 제보를 받음으로써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발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
  - 3)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각 방송 말미에 ‘이런 것이 공작이다’,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시키고 원고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는 국가·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고, 원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비판함으로써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언론개혁에 관한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할 목적에서 공론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관적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요지를 인용 내지 정리한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원고를 ‘검사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증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하였다 할 것인데, 이는 우리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는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발언의 게시 동기, 유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00241 판결

제보자가 허위의 사실을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하고 기자는 그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 게시함으로써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제보자와 기자는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타운하우스 등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의 실질적 대표의 자녀이자 모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이다. 해당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의 제보를 받은 피고 인터넷 신문사가 원고 회사가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이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원고들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 2명과 제보자를 상대로 총 7억 원이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회사에서 대표 자녀가 연예인임을 내세워 사기성 짙은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는 모두 허위로 인정된다면서 언론사에서 별다른 사실 확인의 노력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보도한 점, 기자 1명과 제보자가 형사 처벌(각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자와 제보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회사 대표 자녀이자 연예인인 원고에게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원고 회사의 공사비 대출 불가로 인한 손해, 원고 연예인의 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는 따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 자녀의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양 당사자가 모두 항소해서 현재 2심 법원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이 피고 제보자는 허위의 사실을 피고 기자에게 제보하고 피고 기자는 그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의 타운하우스 시행·분양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제보자, 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문

사	건	2021가합100241 손해배상(기)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1. C
		2. D
		3. E
변	론	2023. 4. 20.
판	결	2023. 7. 20.
선	고	

## 주 문

1. 피고 C, E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1. 1. 16.부터, 피고 E은 2021. 4. 30.부터 각 2023. 7.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 C,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 B이, 나머지 25%는 피고 C, E이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5,598,361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건축물공사업, 주택 및 상가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귀포시 G 소재 타운하우스인 'H 1차' 등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I의 자녀이다.

- 나. 피고 C은 2017. 6.경 위 'H 1차' 타운하우스의 전체 29채 중 2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7.경 원고 회사가 서귀포시 J 외 3필지에서 시행하는 'H 3차' 타운하우스 신축 및 분양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 다. 피고 D은 주식회사 K 신문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 E은 L 신문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 E은 2017. 12. 29. L신문 인터넷사이트에 <M>이라는 큰 제목과, <N>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본문 내용에서는 <O소속 연기자 B씨가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진 (주)F(원고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원고 회사'로 통칭한다)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G타운하우스 H 1차가 공정률 제로인 상태에서 분양돼 현재 약 5일분의 터파기 공사만 하고 중단된 상태...(중략)...분양계약자들에 따르면 전체 8가구 중 분양을 받은 4가구 · 총 7억여원과 분양피해자 중 한 명은 3차 사업에 10억 원을 다시 투입해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중략)...원고 회사는 지난 3월 H 분양을 시작한 이후 O가 게스트하우스용으로 분양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도 타운하우스 분양 업계의 P 실장도 이들과 전화통화에서 "O가 분양을 받은 것이 맞다"고 소개했다. 또 "O에서 여러 채 샀다"고도 덧붙였다. 즉 H 분양 계약을 맺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O가 분양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와 함께 P 실장은 "B의 아빠 I이 과거 코미디언 Q와 집고쳐주기 프로그램 'R'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R'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 또한 I의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은 P실장의 발언은 '녹취'가 돼 있는 상황이다...(중략)...만약 이같은 홍보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들은 다 같은 사기공모자인 셈이라고 비난했다...(중략)...도내의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대표법인 아니냐"면서 "대표법인을 정상적인 기업이라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라. 피고 C, E은 2020. 11. 4. "피고 C은 2017. 11.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 E에게 'I이 O 소속 연예인 원고 B을 내세워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 E은 피고 C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원고 회사 관계자, I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2017. 12. 29.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원고 회사의 타운하우스 시행 ·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가 인정되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360호).
- 마.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C, E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4. 피고 C, E의 공모관계는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각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단독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 E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0노934호). 이에 대하여 피고 C, E이 상고하였으나 2021. 12.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피고 C, E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피고 C, E에 대한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 B은 O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경에는 30여편의 작품 및 화보 촬영 등에 참여하였으나, 2018년경에는 4편, 2019년경에는 2편, 2020년경에는 2편 정도의 작품 활동을 하는 데 그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 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C은 ① 2017. 11. 중순경 다른 수분양자인 S에게 전화하여 ‘원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라. PF 대출은 거짓말이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이하 ‘제1 불법 행위’라 한다), ② 피고 D, E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신문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이하 ‘제2 불법 행위’라 한다), ③ 원고 B의 소속사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을 못하게 방해하였다(이하 ‘제3 불법 행위’라 한다).

나. 피고 D은 ① 2017. 11. 23.경 원고 B의 소속사 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이하 ‘제4 불법 행위’라 한다), ① 2017. 11. 22.부터 2017. 11. 29.경까지 원고 회사에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이하 ‘제5 불법 행위’라 한다), ② T와 U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신문 기사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제6 불법 행위’라 한다).

다. 피고 E은 2017. 12. 29.경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제7 불법 행위’라 한다).

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예정되어 있던 공사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이율이 더 높은 대출을 받게 되어 추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배상금 515,598,361원(=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게 되어 추가 지출한 이자 195,598,361원 + 주관수수료 110,000,000원 + 신탁사 비용 110,000,000원 + PF수수료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 B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이후로 소속사에서 작품 활동을 자제시켰고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소속사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므로, 100,000,000원 상당의 기대수익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 가.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

##### 1) 피고 C, E에 대한 원고들 주장의 각 불법행위 인정 여부

##### 가) 피고 C의 제2 불법행위와 피고 E의 제7 불법행위 부분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이 피고 C, E에 대하여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은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을 달리 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 원고 B 및 그의 아버지, 피해자 원고 회사에 대한 의혹제기와 그 근거사실, 제3자의 발언 등을 정리한 기사이다. 그중 의혹제기 부분은, “원고 B이 설립한 원고 회사는 사실상 대표법인인바, 원고 B과 그의 아버지는 타운하우스 분양을 하면서 연예인 원고 B을 앞세우고, 대형 연예기획사 O가 여러 채를 분양받았다고 허위 홍보를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사기성이 짙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위 의혹제기 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제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제기한 의혹 역시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② 의혹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사실 중 하나로서, 피고 C, E은 원고 회사의 H 신축 사업에 관하여 ‘현재 H은 약 5일분의 터파기 공사만 하고 중단된 상태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고, 그럼에도 피고 E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5일분 터파기 공사만 하고 중단된 상태’라고 이 사건 기사에 기재하였다.
- ③ 피고 C, E은 당시 O가 게스트하우스용으로 H 1차 등 원고 회사의 타운하우스를 분양을 받았거나 그와 같은 소문이 없었음에도 ‘P실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있다는

것만 알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거나 그것이 진실한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O가 게스트 하우스용으로 H 1차를 여러 채 분양받았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 ④ 피고 C, E은 '원고 회사는 원고 B이 연예인임을 내세워 사기성 짙은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도 하였으나 피고 C은 원고 회사가 실질은 I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원고 회사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E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사실 확인의 노력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C의 말만 듣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 사건 기사에 기재하였다.

-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은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피고 E에게 말하고 그 허위의 사실이 I신문에 이 사건 기사로 게재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회사의 타운하우스 시행·분양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E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회사의 타운하우스 시행·분양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C의 제1 불법행위와 제3 불법행위 부분

- (1) 먼저, 피고 C이 원고 B의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제3 불법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7. 12. 4.경부터 2018. 1. 17.경까지 3회에 걸쳐 당시 원고 B의 소속사였던 O에게 '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요청서의 주된 내용은 O 소속사가 H 1차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보이고, 위 요청서에 '사기 분양' 등의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원고 B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다음으로, 피고 C이 다른 수분양자인 S에게 전화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제1 불법행위 부분과 관련 하여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3) 따라서, 제1 불법행위와 제3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원고들 주장의 각 불법행위 인정 여부

- 가) 먼저 제4 불법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 B의 소속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 D이 원고 B이나 원고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취재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 D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만으로는 원고 B의 사회적 가치

-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한편, 피고 D이 원고 회사에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T와 U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신문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는 제5, 6 불법행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결국,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 C은 허위의 사실을 피고 E에게 제보하고 피고 E은 그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회사의 타운하우스 시행·분양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C,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원고 B은 피고 C,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속사에서 작품 활동을 자제시켰고 결국 소속사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므로, 연예인으로서 기대되던 10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추단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C, E의 불법행위와 원고 B의 기대수입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C,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되, 다만 이러한 사정들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 나)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B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였고 이후에도 실명으로 후속 기사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은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자신의 이미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③ 피고 C로서는 거액을 투자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투자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 B이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피고 E을 만나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던 점, ④ 피고 E은 기자라면 마땅히 충실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실명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던 점 등에 더 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사정,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및 태양,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및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회복에 관한 태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3)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회사는 피고 C, E의 불법행위로 인해 종래 예정되어 있던 공사비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이율이 더 높은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합계 515,598,361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E의 불법행위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 이자 비용, 주관수수료, 신탁사 비용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C, E에 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E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 16.부터, 피고 E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4. 30.부터 각 피고 C,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C, E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합5060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2012805 판결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은 적은 반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쉽사리 규명하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으로, 이 보도가 허위라면 원고에게 큰 명예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언론사는 더욱 철저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사건 개요]

원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확정 후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 뉴스통신사가 과거 원고가 몇 차례 무속인을 찾아갔고 그 무속인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굿을 해주었으며, 원고가 무속인과 장관 인사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모 정치인 상대로도 다른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1심 법원은 보도 내용이 비록 허위로 보이지만 국정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무속인이 피고 언론사 기자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기자로서는 무속인의 진술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은 원고가 무속인을 찾아 굿을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 적시에는 해당하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는 보도 내용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대상자인 무속인과 신도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보자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취재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정보도 및 2천만 원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였다.

2심 판결 선고 후 피고가 상고해서 현재 3심 대법원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 비록 원고가 무속인을 찾아가 장관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보도

내용의 취지는 원고가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장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관여했다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서도 쉽사리 규명하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인 점, 만약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원고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명예의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뉴스통신사가 언론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위치하는 지위에 비추어 이 보도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한 점, 이 보도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뉴스통신사로서는 이 보도 이전에 이 사건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더욱 철저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칠 필요성이 있었다.

## 1심 판결문

사	건	2022가합506089 손해배상(기)		
원	고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피고 C의 기사 보도

- 1) 피고 C는 2016. 11. 14. 원고가 몇 차례 무속인을 찾아갔고, 그 무속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굿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
- 2) 피고 C는 2016. 11. 15. 원고가 무속인과 사이에 E 장관 인사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 나. 피고 D의 연설 발언

피고 D은 2021. 10. 2.경 F센터에서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이던 G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며 이리다가 H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무속 신앙을 믿지 아니하므로 무속인을 찾아간 사실도, 무속인에게 굿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허위이고,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발언이나 당시 피고 D이 한 연설에는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이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 1) 피고 C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피고 C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사실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피고 D

이 사건 발언이나 피고 D이 한 연설 내용에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1) 사실의 적시 여부

#####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 45857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이 사건 각 기사 중 2016. 11. 14.자 기사의 경우 ‘원고가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원고가 그동안 사이비 종교 신자이거나 무당일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었으나 무속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는 내용, ‘원고가 주로 금전 쪽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원고의 무속인에 대한 태도, 원고가 지급한 대금의 범위’ 등에 관한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한편, 원고의 남편이 다른 역술인을 만나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을 소개하면서 결국 ‘H 씨 부부가 모두 무속인이나 역술인에 의지했던 셈이다’라며,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기사는 원고도 무속인인지 여부 및 당시 원고가 I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무속인 측에게 맡기기도 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 (2) 이 사건 각 기사 중 2016. 11. 15.자 기사의 경우 ‘원고가 무속인과 정부 장관 인사를 의논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원고가 신당에 종종 찾아왔고, 무속인에게 어떤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힐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위 기사는 위와 같은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과 당시 검찰이 원고 등을 수사하며 드러난 이른바 ‘국정농단’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 당시 원고의 측근 J이 K 전 E 장관과 L 전 M수석을 해당 직위로 임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I 전 대통령의 사주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2015년 봄 무렵부터는 무속인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다.

####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점에 관한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에 부합하는 원고에 대한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원고의 입장 등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고, 무속인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굿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허위성 인정 여부

#### 가)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 (1)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원고가 몇 차례 무속인을 찾아갔고, 무속인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곳을 해주었다거나,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일시 및 장소(피고 C는 이와 관련하여 위 무속인의 신당이 하남시 N에 있고, 원고가 위 신당에 2015년 봄경까지 왔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 C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그런데 을가 제1호증의 2,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위 각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사실이 허위임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피고 C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몇 차례 자신을 찾아온 적이 있다는 누군가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O 단독보도 기사(을가 제1호증의 2)와 그와 신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녹취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가 제2호증)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가 제3호증)이 전부이다.
  - (나) 우선 O 단독보도 기사(을가 제1호증의 2)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영상에 담긴 인터뷰 내용은 그 대화자의 음성이 변조되어 있고, 그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그가 실제 무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 (다)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가 제2호증)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가 제3호증)에도 그 대화자가 실제 무속인이라거나 그 신도에 해당한다거나, 이들을 특정할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라) 기록상 피고 C 측에서 어떠한 경위로 인터뷰 대상자를 원고가 찾아갔다는 무속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증거나, 그 무속인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에 관한 다른 증거도 없다.
  - (마) 피고는 인터뷰 대상인 무속인과 관련하여 하남시 N에 있는 신당의 80대 무속인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무속인 또는 그 주변 인물을 통해 이 사건 각 기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 3) 소결

위와 같이 원고가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무속인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곳을 해 주었다거나,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보도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가나 인격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피고 C의 주장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위 사실의 보도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펴건대,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은 모두 I 전 대통령의 지인으로서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던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고, 나아가 장관 인사와 관련하여서도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국정이 무속인의 의사 등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무속인이 피고 C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위 신당에 찾아오게 된 이유와 당시 원고가 지급한 대가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위 신당의 신도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기록상 당시 위 기자가 위 무속인이나 신도와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나 위 무속인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자가 위 무속인이나 그 신도의 인터뷰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3) 소결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언 및 피고 D의 연설에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 인정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D의 이 사건 발언 무렵 개최된 TV 토론회에서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이던 G 후보의

손바닥에 한자로 ‘왕(王)’자가 그려진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었다.

나) 피고 D은 2021. 10. 2.경 F센터에서 개최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위 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이어 ‘(G 후보가) 왕의 시대, 모든 권력 기관을 사유하는 시대에 대해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해야 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어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서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이나 당시 피고 D이 한 연설에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D은 여당 대표로서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발언에 이어 과거 I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계기가 된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위 사건은 I 전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닌 원고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원고의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대의민주제의 원리를 해하였다는 의혹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 D의 이 사건 발언을 비롯한 당시 연설의 전체적인 취지 및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에서 언급된 ‘H 시대’는 G 후보에 대하여 그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운영할 때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공직자 아닌 사람이 국정 운영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발언이나 당시 피고 D이 한 연설에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까지 적시되어 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 나.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3나201280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B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D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합50608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7.
판 결 선 고	2023. 12. 15.

## 주 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4.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1) 피고 주식회사 C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해당 기사목록의 다른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전문이 [별지 3] 제2항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같은 활자체, 활자크기 및 줄 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되도록 하며,
    - 2) 피고 주식회사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 3] 제2항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그 제목 및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같은 활자체, 활자크기 및 줄 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그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도 함께 표시되도록 하라.
  - 다. 피고 주식회사 C가 위 나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판결문 송달 후 일주일 이내에,
  - 가. 피고 C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하단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 나. 위 가항이 이행된 이후에도 가항의 보도문을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일주일 동안 18픽셀 이상의 폰트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이 사건 판결문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한 다음 그 제목과 판결문 이미지를 클릭하면 위 가항 기재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형성하고,
  - 다. 위 가항 기재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영구적으로 검색이 되게 하며,
  - 라. 위 가항 기재 기사를 제휴한 포털사이트에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2. 만일 피고 C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피고 C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기재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를 추가하였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200,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를 추가하기 전에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이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 C의 기사 보도

- 1) 피고 C는 일간통신과 기타 통신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 2) 피고 C는 2016. 11. 14. 원고가 몇 차례 무속인을 찾아갔고, 그 무속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굿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별지 3] 제1항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 3) 피고 C는 2016. 11. 15. 원고가 무속인을 찾아가 E 장관 인사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별지 3] 제2항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

#### 나. 피고 D의 발언

- 1) 피고 D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2021. 5.경부터 2022. 3.경까지 P정당 당대표를 역임하였다.
- 2) 피고 D는 2021. 10. 2.경 F센터에서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 경선 행사에서 당시 야당(Q정당) 대통령 후보이던 G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리다가 H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 1)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해 원고가 2015년 봄까지 수차례 무속인을 찾아갔고, 무속인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굿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무속 신앙을 믿지 아니하므로 무속인을 찾아간 사실도, 무속인에게 굿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기사를 통해 원고가 무속인을 종종 찾아갔고, 장관 인선에 관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허위이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C를 상대로 민법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간접강제 신청 포함)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에는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D를 상대로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C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그 사실이 일부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피고 C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고, 위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는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사실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 D

피고 D의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단지 대통령 후보자 G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사실의 적시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으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 3519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의 경우 「R」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 원짜리 곳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원고가 그동안 사이비 종교 신자이거나 무당일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었으나 무속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는 내용, ‘원고가 주로 금전 쪽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원고의 무속인에 대한 태도, 원고가 지급한 대금의 범위’ 등에 관한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한편, 원고의 남편이 다른 역술인을 만나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로 특정한 ‘원고가 수도권 신당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무속인을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 원짜리 곳을 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무속인을 찾아가 곳을 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지위에 원고가 있다거나 위 기사에 그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부분을 아래에서 인정하는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적시된 사실과 별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 중 ‘원고 부부가 모두 무속인이나 역술인에 의지했던 셈이다.’는 부분은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위 기사에서 ‘일부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I 대통령 연설문 등을 무속인 가족에게 맡겼고, 연설문을 수정해 주는 대가로 원고가 고급 외제차를 선물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는 부분 등이 있기도 하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서 소문임을 명시하면서도 위 인터뷰를 한 무속인은 ‘연설문 같은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등 나름의 의혹 제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설희영, 원고의 주장처럼 기독교인인 원고가 수차례 무속인을 찾아가 곳을 하였다는 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의 명예에 다소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명예 감정의 손상이나 평가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고, 한편, 피고 C가 무속인이라는 A씨와 또 다른 사람(신도) 등을 인터뷰한 내용에 기초하여 ‘그동안 소문은 파다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

이라면서 그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것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거나 위법한 보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제2기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기사의 경우 「S」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무속인과 정부 장관 인사를 의논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원고가 정부 고위직 인사 내용을 미리 입수했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일각의 의심을 굳히는 정황으로 읽힌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원고가 신당에 종종 찾아왔고, 무속인에게 어떤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힐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위 기사는 위와 같은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과 당시 검찰이 원고 등을 수사하며 드러난 이른바 ‘국정농단’ 행위와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 당시 원고의 측근 J이 K 전 E 장관과 L 전 M수석을 해당 직위로 임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과 표현,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기사를 접하는 독자로서는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이 적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기사의 내용 중에 원고가 무속인을 찾아갔다는 부분의 경우에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자체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71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적시사실은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일시 및 장소(피고 C는 이와 관련하여 위 무속인의 신당이 하남시

N에 있고, 원고가 위 신당에 2015년 봄경까지 왔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적시사실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 C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을가 제1호증의 2,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C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몇 차례 자신을 찾아온 적이 있다는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O 단독보도 기사(을가 제1호증의 2) 및 그와 신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가 제2호증)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가 제3호증)이 전부이다.

우선 O 단독보도 기사(을가 제1호증의 2)를 보면 위 기사 영상에 담긴 인터뷰 내용은 그 대화자의 음성이 변조되어 있고, 그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또한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가 제2호증)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가 제3호증)을 보더라도 그 대화자가 실제 무속인이고 그 신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맞는지, 원고가 위 무속인을 찾아간 것이 맞는지 등의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다.

(나)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 인터뷰 대상자인 위 무속인의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에 관한 다른 증거는 더욱 없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기사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후 직접 취재원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터뷰의 계기가 된 제보의 취재원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 피고 C는 인터뷰 대상자인 무속인과 관련하여 하남시 N에 있는 신당의 80대 무속인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무속인 또는 그 주변 인물을 통해 무속인의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적시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를 문의하였다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민감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원고가 정부 고위직 인사 내용을 미리 입수했을 개연성,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의심을 굳히는 정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인터뷰 대상자인 무속인에 의하면 막연하게 원고가 어떤 사람을 어느 장관 자리에 앉힐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일 뿐, 물어보았다는 인물이나 직책 등은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뷰 대상자인 무속인의 진술 내용에만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적시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 3) 명예훼손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연을 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보도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권한이 없는 원고가 사실상 국정 등 공적 업무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위법성 조각 여부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나,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주장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기사를 통해 이 사건 적시사실을 적시한 것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제2기사의 취지는 모두 I 전 대통령의 지인으로서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던 원고가 장관 인사와 관련하여 무속인에게 조연을 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국정이 사인인 원고나 무속인의 의사 등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주장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비록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기사 내용의 취지는 원고가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장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관여했다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서도 쉽사리 규명하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인 점, 만약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원고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명예의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언론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위치하는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제2기사 보도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제 2기사의 보도 이전에 이 사건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더욱 철저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칠 필요성이 있었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인 무속인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가 제2호증)에는 위 기자들이 나눈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정리하면 H이 작년 봄까지 와서 곳을 했다는 얘기는 무당 포함 3명에게 들었으나 무당 아들이 연설문 봐줬는지는 확인이 안됨”, “성과가 영 만족스럽지 못해 아쉽네요.”와 같이 인터뷰 등 취재 내용이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인터뷰 대상자인 무속인이 ‘원고가 어떤 사람을 어느 장관 자리에 앉힐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일 뿐, 장관 인사 관련 구체적인 인물이나 직책 등을 특정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무속인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 소속의 담당 기자들이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를 위한 취재과정에서 원고 또는 관련자들을 만나 실제로 원고가 장관 인사에 관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포함 하여 취재 내용을 확인해 보는 등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 (라) 피고 C는,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 이전에 이미 언론에서 원고 부부가 무속 신앙을 믿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여러 선행 보도(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7호증)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언론 보도 역시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들고 있지 않거나 원고의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다.
- (마)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제2기사의 표현 방법이나 수위를 달리 조절하면서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부각시키며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1) 피고 C는 이 사건 제2기사를 통해 이 사건 적시사실을 보도하였고, 이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피고 C가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형식, 내용, 표현 방법,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피해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 피고 C가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정정보도의무, 정정보도의 내용, 방법 및 간접강제

-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이 사건 제2기사를 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회복에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도한 피고 C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제2기사 중 허위 부분을 정정하는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2)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기사와 원고 청구 정정보도문의 관련성, 이 사건 제2기사의 표현 및 게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고 그 게재 및 보도 방법과 활자 크기 등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
- 3) 또한,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 라.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 1) 피고 C는, 원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가 제4호증 참조),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이전부터 원고의 무속 신앙 관련 의혹의 제기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원고는 본인과 관련된 기사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당시 이 사건 각 기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가 규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22. 1. 25.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정정보도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 2) 살피건대, 원고는 2016. 11. 3.경 구속되어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 C가 특정한 진술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당시 그 기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당시 손해를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에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뜻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취지 참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2) 인정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고 D의 이 사건 발언 무렵 개최된 TV 토론회에서 당시 Q정당 대통령 후보이던 G 후보의 손바닥에 한자로 ‘왕(王)’자가 그려진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 나) 피고 D은 2021. 10. 2.경 F센터에서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 경선 행사장에서 위 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이어 ‘(G 후보가) 왕의 시대, 모든 권력 기관을 소유하는 시대에 대해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해야 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어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서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 D이 한 이 사건 발언이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D의 이 사건 발언 중 우선 'H 시대'라는 표현만 놓고 본다면, 이는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고, 듣는 사람의 관점이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매우 큰 압축적 표현에 해당한다.

나) 피고 D은 여당 대표로서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정치적 연설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발언에 이어 과거 I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계기가 된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위 사건은 I 전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닌 원고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원고의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대의민주제의 원리를 해하였다는 의혹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라) 위와 같은 피고 D의 이 사건 발언을 비롯한 당시 연설의 전체적인 취지 및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G 후보에 대하여 그가 대통령이 되려 하는 과정에서 또는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운영할 때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공직자 아닌 사람이 국정 등 공사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H 시대'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위 'H 시대'라는 표현을 통하여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무속신앙(내지는 이를 믿는 사람)에 의지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려 하거나 국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치적 의견을 비판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한 상징적,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마)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적시사실인 '원고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은 원고 개인의 신앙이나 가치관·생활방식 등과 관련된 사생활 문제이고, 이 사건 발언에는 원고 개인의 신앙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적시사실 그 자체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설령 여기에 부가적으로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내포, 암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비판이나 의견표명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다).

## 나.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210353 판결

언론에서 원고를 ‘이단 목사’라고 지칭한 것 자체는 원고의 언행이나 행보가 일반적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모 교회 담임목사이며, 피고는 인터넷 언론사이다. 피고가 상위 종단에서 원고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원고는 상위 종단이 원고를 정식으로 이단 규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단 목사’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언론사는 보도 후 기사를 일부 수정하였음)

법원은 ‘이단 목사’ 부분은 일반적 범주를 벗어난 원고의 언행이나 행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볼 수 있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설령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더라도 공적 인물에 대한 진실 또는 상당한 비판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단 목사’ 표현은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모욕적이고도 경멸적인 인신공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항소해서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범,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이단(異端)'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전통이나 권위', '세속적인 상식에 반항하여 자기 개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이르고, 종교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뜻한다(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단'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종교집단의 내부에서는 특정 교리나 교파가 정통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어긋남을 배타적으로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원문기사에서 원고를 '이단 목사'라고 지칭한 것 자체는 필자 또는 다른 교단의 입장에서 일반적 범주를 벗어난 원고의 언행이나 행보에 대해 비판적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

## 판결문

사	건	2023가단210353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2023. 11. 24.
판	결	2023. 12.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방송업(인터넷방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언론 산하의 인터넷콘텐츠업체로서 'E'라는 인터넷뉴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방송국 소속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E'에 원고에 관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
- 나. 원고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23. 1. 23.부터 2023. 2. 9.까지 미국 10개 주를 순회하는 "H"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C은 그중 2023. 1. 31.경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I에서 진행된 위 행사(이하 'I 행사'라고만 한다)를 취재하였다.
- 다. 피고 C은 2023. 2. 1. 14:47경 "J"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원문기사'라 한다)를 작성·보도하였다가, 같은 날 22:06경 이 사건 원문기사의 내용 중 아래 밑줄 또는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수정하여 "K"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하였다(이하 수정된 기사를 '정정 후 기사'라 하고, 정정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 또는 '이 사건 보도'라 한다).

L종교단체 산하 위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 받은 A G교회 목사가 미국 연방 하원 M 의원과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추진중이던 'N법안'을 막았다고 밝혔다.

A 목사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I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O' 연설에서 재작년 워싱턴DC 방문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날 연설은 그가 89명의 극우 인사들을 대동한 채 23일부터 미주 10개주를 돌며 진행중인 이른바 'H'의 일환이다. 그는 100분간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P 정부 당시 추진되던 종전선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사기극"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광주사태인 광화문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 OOO가 당시 워싱턴DC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300만 달러씩 주고 포섭해 평화협정, 종전선언, 연방제 통일에 동의를 받기 위해 발악했다"며 근거 없는 말을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당시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으로 날아와 상하원 의원을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M 의원(Q정당)을 만나 반대해 달라고 설득했다"며 유일하게 M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이어 "M 의원님은 얼굴도 이쁘지만 아주 똑똑하더라"며 "(M 의원이) '목사님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12월에 의회에서 종전협정 평화협정 안한다고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R정당 S 의원 등이 종전선언과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을 담은 'N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M 의원이 돌연 그해 12월 7일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서한에 동료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하는 맞불 작전으로 'N법안' 무력화를 시도했다. 결국 이 법 안은 이후 46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 끝내 상정이 안돼 지난해 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됐다.

A 목사는 I 집회가 열린 이날도 워싱턴DC의 연방 상하원 20명을 만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고 왔다고 소개했다.

A 목사의 이날 발언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재작년 M 의원을 만난 것과 이후 M 의원의 행적은 사실로 보인다.

A 목사가 대표로 있는 T정당의 2021년 12월 21일자 유튜브 영상에는 두 사람의 당시 만남에 대해 더욱 자세히 묘사돼 있다. A 목사는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신이 M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핵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이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M 의원이 처음에는 자신을 만난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공개해도 된다는 연락을 해왔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M 의원에게 ‘하원에 이어 상원 의원에도 진출하라고 권유하고 한국에서 후원도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M 의원님 말고도 미국 교포중에 젊은 정치인들을 빨리 개발해서 일단 주지사를 한 번 해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니 이 일에 앞장서 주면 한국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겠다고 격려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하더라.”

우리 국민이 미국 의원에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중범죄 행위다.

A 목사는 이날 I 연설에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며 “내가 종전선언을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앞서 L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A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L 실행위원회가 이단 규정을 미루면서 L 차원의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주최측은 이 지역 한국계 교계에서 A 목사에 연설 장소를 제공하기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미국 교회(U)를 어렵게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 일행은 다음 날인 1일에는 시카고로 이동해 같은 행사를 연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원문기사 중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의 정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원문기사	정정 후 기사
① 기사제목	J	K
② 첫 문장	L종교단체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A G교 회 목사가 미국 연방 하원 M 의원과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N법안’을 막았다고 밝혔다.	L종교단체 산하 위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 받은 A G교회 목사가 미국 연방 하원 M 의원과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N법안’을 막았다고 밝혔다.
③ 마지막 2문장 → 3문장 (수정 · 추가)	① L은 지난해 12월 7일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A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② A 목사 일행은 다음 날인 1일에는 시카고로 이동해 같은 행사를 연다.	① 앞서 L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A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바 있다. ② 다만 L 실행위원회가 이단 규정을 미루면서 L 차원의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③ A 목사 일행은 다음 날인 1일에는 시카고로 이동해 같은 행사를 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원문기사의 작성 및 게시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 원고는 L종교단체(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원문기사에 L이 원고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그 자체를 훼손하였거나, 최소한 원고의 명예감정을 심히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D언론은 기독교 언론을 대표하며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로서, 기독교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단 규정'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점, 원고를 "이단 목사"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회적 비판'에 포함될 수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점, 피고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전에 L이 원고를 정식으로 이단 규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적시(揭示) 부분이 이 사건 원문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파급력이 크고,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단 목사의 미국 현지 교회에서의 집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원문기사를 일부 정정하였을 뿐 원고에게 사과를 하거나 후속기사나 해명 기사를 통해 피해회복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정정하면서 '한국계 교계에서 원고에게 연설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추가하였던 점, 피고들은 이후에도 재차 이와 같은 형태의 언론보도를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문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나.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측이 원고를 '이단 목사'라고 지칭한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훼손과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3. 판단

###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 1) 관련 법리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된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 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나)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등 참조).
- 다) 한편,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도12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사실’이라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 5214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원문기사의 보도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문기사에는 ① “이단 목사”, ② “L으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원고가 미국 연방 하원 M 의원과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N 법안’을 막았다고 밝혔다”, ③ “L은 지난해 12월 7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A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할 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① ‘이단 목사’ 부분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표현은 원고에 관한 허위의 내용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단(異端)’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전통이나 권위’, ‘세속적인 상식에 반항하여 자기 개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이르고, 종교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뜻한다(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② ‘이단’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종교집단의 내부에서는 특정 교리나 교파가 정통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어긋남을 배타적으로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원문기사에서 원고를 ‘이단 목사’라고 지칭한 것 자체는 필자 또는 다른 교단의 입장에서 일반적 범주를 벗어난 원고의 언행이나 행보에 대해 비판적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실제로도 원고에 대해 V종교단체(W)가 ‘이단성 있음’, V종교단체(X), V종교단체(Y) 교단 등이 ‘집회참여 자제’를 표명 하는 등 ‘이단성’ 논란이 있었고, 이 사건 보도 당시에도 L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라 한다)에서 ‘이단 규정 및 제명’ 결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④ 이러한

배경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정정 이후에도 이 부분 표현을 ‘이단 논란 목사’라고 수정하였을 뿐이고,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의 사회적 의미가 정정 전·후로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아니한다. ⑤ 이 부분 표현만으로 어떠한 허위의 사실을 묵시적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② ‘L으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원고...’라는 표현 및 ③ ‘L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단으로 규정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1) 판단기준

(가)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 6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적시사실 ②, ③ 부분(이하 ‘이 사건 적시부분’이라 한다)의 경우, ① 구체적인 날짜(2022. 12. 7.)와 근거(“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를 명시하면서 특정 단체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았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②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적시부분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일부 표현만을 떼어놓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원문기사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적시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까지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원문기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원문기사 상단에는 “핵심내용”이라는 제목 아래에 “A 목사, M 의원 통해 N협정 막아냈다”는 문구가 눈에 잘 띄이도록 박스 표시 안에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원문기사의 주된 내용은 I 행사에서 있었던 원고의 ‘N협정을 막았다’는 등 여러 발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말을 늘어났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히 원고의 로비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이 미국 의원에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중 범죄 행위다”라고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인바,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목적과 내용이 ‘원고가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함은 쉽게 알 수 있다.

(나) 다만, L 운영세칙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중 이대위의 결의내용은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최종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해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단계임을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문 기사를 작성·송부하여 보도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원문기사에서 ‘L 소속 이대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이단으로 규정’하였다거나, ‘실행위원회가 이단 규정을 미루면서 L 차원의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다소간의 생략이나 과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정정 전·후로 사실관계가 반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L의 이단 규정’ 관련 부분은 전체 기사에서 불과 2-3문장 정도를 할애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뉴스 기사’의 형식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필요성도 큰 점(가령, 이 사건 원문기사에서 L의 이단 규정일로 적시된 ‘2022. 12. 7.’은 이대위의 이단

규정이 있었던 전체회의 일자에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부분으로 인해 원문기사의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단’이라는 표현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라는 ‘이단(異端)’의 사전적 의미 등 비추어 볼 때, ‘특정 집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을뿐더러, 그 기초로 적시된 사실, 즉 ‘L이 원고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에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피고 C은 이 사건 원문기사를 게시한지 불과 약 10시간 정도 만에 동료의 지적을 받고 원고의 이단 규정 관련 표현 부분을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수정한 점, 비록 ‘L 전체 조직’에서 원고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절차를 완료’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러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원고를 이단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피고들로서는 더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차이는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 취지, 형식과 내용,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마) 한편,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적시부분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다) 위법성 조각 여부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적시사실을 통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문기사를 보도한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이 사건 원문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목회자의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위법한 정치적 로비행위를 하거나 공개적인 행사 장소에서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N법안을 막았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단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다만, 피고 C은 이 사건 원문기사에서는 ‘L 산하 이대위에서 이단 규정 결의를 마친 사실’을 ‘L의 이단 규정’으로 표현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나, 일반 독자들로서도 앞서 본 ‘핵심내용’과 원문기사 주요 부분의 내용 및 전·후 맥락 등을 통해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는 I 행사에서 있었던 원고의 발언 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원고의 불법적인 로비행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다소간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과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하므로 단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을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또한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4) 원고는 종교인으로서 목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러한 본연의 직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정치적 집회나 연설 등을 통해 스스로 공론의 장에 나서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이단’으로 비판받게 되었으며, 공적(公的) 인물로 볼 수 있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의혹제기에 이어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부터 스스로 원고라는 인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배경사실로서 원고의 이단성과 관련한 L의 최근 결의내용을 제시하려던 것이었고, 이 사건 적시사실 부분에 대한 표현들은 공론의 장에 나선 원고의 발언 등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보도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그 표현에 다소간의 과장 내지 오류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원문기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제되고 비교적 절제된 언어와 객관적인 어조로 작성되었고, 그 보도 전후의 맥락이나, 전체적인 기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단’ 관련 부분이 불필요한 표현이라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5)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문기사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당시 L 내부에서 원고에 대한 이단 규정을 추진하는 절차가 수개월째 진행 중이었던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피고 C은 이 사건 적시사실 부분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료의 말에 곧바로 이 사건 원문기사에서 해당 부분들을 정정하였던 점, 그 정정 전·후로도 기사의 주요한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이 사건 정정을 통해 수정된 부분은 전체 기사에서 비교적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원문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원문기사는 진실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원문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원문기사의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에게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1)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 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도 중 '이단 목사'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위법한 로비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정치적 활동과 행보를 이어가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고가 기독교 집단 내부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2장

# 보도게재청구

---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6가합5430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0나2037971 판결

고위 공직자 관련 의혹 보도에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할 경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은 기각하면서 정정보도는 인용한 케이스

### [사건 개요]

원고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보도 게재 당시 청와대 모 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 언론사는 원고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모 씨의 변론을 맡았으며 모 씨와 친분이 있는 법조 브로커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원고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피고를 상대로는 정정보도(지면,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 대상)를 청구하고 편집국장 1인 및 기자 2인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음)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면서 허위 보도로 보고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하고, 적시 사실의 근거 자료들이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편집국장 및 기자 1명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 1명은 손해배상 면책됨)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지면,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 각각 정정보도를 명하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이뤄진 보도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 보도가 고위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2심 판결 선고 후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아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민법 제764조 내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공직 생활을 통하여 얻은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문제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높았고, 원고가 수임계 없이 변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경찰 수사결과 원고가 2013년과 2014년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주요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수임하였음에도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1심 판결문

사	건	2016가합543094 정정보도 청구 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9. 23.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 F신문 1, 2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정정대상 기사인

[별지2-1] 기재 “G”, [별지2-2] 기재 “H” 각 기사의 활자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본문활자는 위 정정보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나. 가.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다. 가. 나. 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2 생략)’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 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가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한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C,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 가. F신문 1, 2면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정정보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인 “G”, “H” 활자와 각각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본문 활자는 정정보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각각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 나. 가.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다. 가. 나. 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2 생략)’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 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기간 안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한 날까지 매일 금 5,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 D, E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I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지 ‘F신문’을 발행하고, 그 기사를 인터넷 F신문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인터넷 F신문 모바일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는 피고 신문사의 편집국장이고, 피고 D, E은 피고 신문사의 기자이다.

####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 1) 피고 신문사는 2016. 7. 19. F신문 1, 2면에 “G” 및 “H”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1] 및 [별지2-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지면 기사’라 한다)를 보도 하였고, 피고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F신문 PC 버전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모바일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위 각 기사를 [별지3-1] 및 [별지3-2] 기재와 같이 게재 및 보관하고 있다(이하 인터넷 F신문 PC 버전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 실린 각 기사를 ‘이 사건 인터넷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지면 기사와 포괄하여 ‘이 사건 기사’라 한다).

2)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① 부분’과 같이 해당 항목의 번호로 칭한다).

- ①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수입계를 내지 않고 J와 함께 K의 변론을 맡았다.
- ② 원고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J와 동업을 하였고 수입료를 나누었다.
- ③ 검찰은 J를 수사하면서 원고와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2013년 사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④ 원고는 변호사로 활동하였을 당시 J, K와 친분이 있는 법조 브로커 L와 두세 차례 식사를 한 적이 있고, L는 원고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 1)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달리, ① 원고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K 관련 사건을 맡은 적이 없고, ② J와 동업하거나 수입료를 나누는 적이 없으며, ③ J는 검찰로부터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와 동업했다고 보도된) 2013년도 수입내역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고, ④ 원고는 법조 브로커 L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그에게 ‘형님’이라고 불리운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신문사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신문사에게, 이 사건 지면 기사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또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구한다.
- 2) 피고 C, D, E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았고 위 기사를 통하여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 나. 피고들

- 1) 이 사건 기사는 취재원의 진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관련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2) 설령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기사는 당시 I인 원고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의혹 제기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 C, D, E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소정의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민법에 근거한 청구만 가능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 3. 정정보도청구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실의 적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취재원의 진술을 인용하여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764조 내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상당 부분을 ‘법조계 관계자’ 또는 ‘L 측근’의 진술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법조계 관계자’의 유사한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원고)는 개업 1년 동안 J 변호사(J)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K 전 대표(K)도 이들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 “검찰은 J 변호사 비리를 수사하면서 A(원고)과 함께 일을 한 ‘2013년’은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A은 J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K 전 대표와 J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법조 브로커 L 와도 어울려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사는 그 전체 흐름에 비추어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④ 부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2) ①, ② 부분 적시사실

이 부분 적시사실은, '원고가 수사기관에 수입계를 제출하지 않고 K를 위하여 변론하였고, J와 동업을 하면서 수입료를 나누어 가졌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이러한 소명자료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위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8, 21, 22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사기관에 수입계를 제출하지 않고 K를 위하여 변론하였고, J와 동업을 하면서 수입료를 나누어 가졌다'는 이 부분 적시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변호사 활동을 하던 기간 동안 수입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은 원고의 의뢰인, M 단체, 원고와 관련자의 금융계좌 등을 수사하여 원고의 수입 내역 및 수입액을 밝혔고, 검사는 2017. 4.

17. 해당 기간 원고의 신고 누락금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부분 적시사실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자료 중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사에서는 물론, 피고 D, E에 대한 수사절차나 이 사건 소송에서도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 부분 적시사실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근거인 위 관계자의 발언을 탄핵할 방법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단편적으로 밝히고 있는 위 발언의 내용은 대부분 ‘해당 관계자가 그와 같이 알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러한 발언에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 외에도 이 부분 적시사실의 근거로, ㉠ J가 맡은 바 있던 이른바 ‘N 사건’을 원고도 수임하였던 점, ㉡ 원고는 2009.경 대 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J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 원고와 J의 사무실이 같은 빌딩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던 점, ㉣ 소위 ‘법조 브로커’인 L는 J, K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L의 운전기사였던 O은 원고와 L가 두세 차례가 같이 식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그 자체로 보아도 이 부분 적시사실과 관련성이 적을 뿐 아니라, ㉤ 원고와 J 외에도 유수의 법무법인이 ‘N 사건’의 변론을 맡았고, 원고와 J가 위 사건에 관여한 시기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J의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었던 P 빌딩은 법원 및 검찰청 인근에 위치하여 원고와 J의 사무실 외에도 여러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점, ㉦ 위 O도 원고와 J가 같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주변적인 정황들만을 취합하여 ‘원고와 J와 동업하면서 K를 변론하였고 수임료를 나누어 가졌다’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 3) ㉢ 부분 적시사실<sup>1)</sup>

원고는 검찰이 J에 대하여 수사를 할 당시 2013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서도 모두 수사를 하였고, 기소까지 하였으므로 이 부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J에 대한 형사판결<sup>[이 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합588, 2016고합718 (병합) 판결]</sup>에 의하면, J는 2013년 귀속 소득 및 매출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K는 2013. 10.경 및 2015. 6.경 상습도박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J는 2015. 6.경 수사가 시작된 K의 상습도박과 관련하여서만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점, 이 사건 기사에서

1) 원고는 이 부분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살펴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함께 살펴본다.

이 부분 적시사실에 관한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주로 J가 2013. 10.경 수사가 시작된 K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검사가 J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수사를 하면서 2013년에 있었던 K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④ 부분 적시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L는 수사기관에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 L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L가 원고와 두세 차례 식사를 같이 하였다는 O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O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바로 전날에는 피고 E에게 원고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종전 발언들을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O이 특별히 원고나 L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등

따라서 피고 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 중 허위사실인 ①, ② 부분과 관련하여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일부 수정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아울러 피고 신문사가 주문 제1항 기재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이 사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위 법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지면 기사의 보도 당일에 이 사건 지면 기사의 내용 중 ① 내지 ④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 사건 인터넷 기사는 그 내용이 이 사건 지면 기사와 동일한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보도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면 기사 및 인터넷 기사를 보도한 주체는 피고 신문사로 동일하다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함으로써 이 사건 인터넷 기사 중 ①, ②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제척기간 역시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신문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보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 신문사는 민법 제746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위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언론기관은 그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 보도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기사 보도의 근간이 된 ‘법조계 고위 관계자’를 취재하였고 이 사건 기사를 1 차적으로 작성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이 사건 기사의 취재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기사의 보도 여부, 배치, 제목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의 취재 및 편집을 총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 D은 앞서 살펴본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에 대하여 살펴건대,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원고의 변호사 개업 당시 사무실 및 L의 운전기사 O에 대한 취재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E은 편집국장인 피고 C이나 특별취재팀장인 Q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취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E이 이 사건 기사에 피고 D과 함께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은 이 사건 기사의 주요 취재원 중 하나인 O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기사 중 위 O의 진술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못한 점, ㉢ 이 사건 기사는 편집국장인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특별취재팀의 취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바, 기본적인 취재 및 보도 방향이 소위 ‘데스크’라고 불리는 신문사 책임자가 정하고 이에 따라 취재가 이루어지는 기획 기사로서 개별 기자가 방향 설정에서부터 취재 및 기사 작성까지 주도하는 일반적인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관련자의 책임 유무를 달리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2)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고위공직자인 I이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I으로 임용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였을 당시 위법 내지 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 피고 C, D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취재 및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3) 상당성 인정 여부

갑 제18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어 이 사건 기사 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위 피고들은 피고 D이 장기간 범조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수의 범조 관계자들을 장기간 취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부분 적시사실의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적시사실을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 ㉢ 피고 D은 2019. 7. 23.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일 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 ㉔ 피고 D은 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K를 몰래 변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법조계 고위 관계자가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 스스로도 ①, ② 부분 관련 적시사실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면서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㉑ 이 사건 기사의 소제목  
및 본문에서 “수임계 없이 2013년 J 변호사와 함께 변론”, “그는 개업 1년 동안 J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K 전 대표도 이들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고 기재하는 등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의 ‘몰래 변론’에 대하여 단정하고 있는 점, ㉒ 이 사건 기사, 그 이후  
이어진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 및 사회적 비판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㉑ 이 사건 기사에서 분량이 적기는  
하지만 원고의 반론도 함께 소개한 점, ㉒ 피고 C, D은 피고 E을 통하여 원고의 변호사 활동 당시  
사무실의 위치, L 운전기사인 O에 대하여 취재를 하는 등 원고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㉓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관련자들인 J, K는 당시 구속 상태여서 취재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 측의  
연락에 원고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㉕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고위공직자인 I으로 그 도덕성 및 청렴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㉖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공직 생활을 통하여 얻은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문제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높았던 점, ㉗ 피고 C, D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였을 뿐 사적인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표현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C, D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16. 7. 19.부터 피고 C, D이 그 이행의무의 준수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3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문사,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신문사,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0나2037971 정정보도 청구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3. D
피 고 , 피 항 소 인		4. E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6가합54309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1. 27.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내지 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 1) F신문 1, 2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정정대상 기사인 [별지2-1], [별지2-2] 기사의 활자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본문활자는 위 정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 2) 1)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3 생략)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 3) 1), 2) 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4 생략)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제1의 가.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한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 가. F신문 1, 2면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정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G”, “H” 활자와 각각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부제목활자 및 본문활자는 정정대상기사 중 “G”의 부제목활자 및 본문 활자와 각각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1면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정정보도문’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제목 전부가 게재되도록 하며, 1면에 게재된 정정보도문 말미에는 정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 2면으로 정정보도문이 연결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라.

나. 가.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다. 가. 나.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2 생략)’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 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기간 안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한 날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 D, E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정정보도의 방법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 [항소취지]

### [원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 가. F신문 1, 2면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정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G”, “H” 활자와 각각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본문 활자는 정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각각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 나. 가.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다. 가. 나. 항과 동시에 F신문 ‘(인터넷주소 2 생략)’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3-1]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별지 3-1], [별지3-2]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기간 안에 제2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한 날까지 매일 금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 C, D]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6, 13, 14행의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인터넷주소 3 생략)” 로, 같은 쪽 제7, 14행의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인터넷주소 4 생략)”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3행 및 제13쪽 제5행의 “[별지4]”를 “[별지5]”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5, 6행의 “없고, …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쪽의 각주 1)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4)항의 “④ 부분 적시사실“ 부분(제12쪽 제11행부터 제13쪽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④ 부분 적시사실

갑 제18, 30, 31, 33, 3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L는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알지 못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L가 원고와 친분이 있고, 두세 차례 식사를 같이 하였다’는 O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O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바로 전날 피고 E에게 원고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원고와 L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O이 특별히 원고나 L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O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피고 E에게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이 사건과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보도된 ④ 부분 적시사실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4쪽 제3행까지의 “[설령 ... 보아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4항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4쪽 제4행부터 제19쪽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참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참조).

####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1, 18 내지 20호증, 을 제1, 2, 5,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C, D, E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①, ② 부분 적시사실을 보도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고위공직자인 I이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I으로 임용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였을 당시 위법 내지 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된 사항인바, 사안 자체의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 피고 C, D, E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취재 및 보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기사는 ①, ② 부분 적시사실을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목과 본문에서 'K 몰래 변론 의혹', '2013년 사건의 경우 J 변호사와 A이 공동변론을 맡아 수입료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등의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혹 제기임을 밝히고 있고, 부제목에서 "A '사실 아니다'"는 원고의 반론을 소개하고 있다. 위 피고들은 피고 D이 장기간 범조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수의 범조 관계자들을 장기간 취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 소송에서 취재원 보호 원칙을 이유로 위 적시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범조계 고위 관계자'들을 장기간 취재하여 취재원들로부터 위 적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도 하였다. 위 적시사실과 관련된 K, J는 이 사건 기사 취재 및 보도 당시 구속된 상태로 이에 대한 취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원고는 피고 D, E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9. 7. 23. 피고 D, E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가능한 범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D, E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D,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 3)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공직 생활을 통하여 얻은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문제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높았고, 원고가 수입계 없이 변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경찰 수사결과 원고가 2013년과 2014년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주요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수입하였음에도 수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4) 원고는 피고 C, D, E이 원고를 I에서 사임시킬 의도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사 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목적 또는 그 외에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 C, D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424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2026654 판결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주장이라면 사실상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반론을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모 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언론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천만 원씩 헐거간 투기세력이 있다면서 원고 사례를 보도했다. 원고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가 법인들 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은 보도 내용에 없으므로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반론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 법인이 빌라 4건 거래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보도는 모두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상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정정보도 청구와 동일하다고 보고,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반론보도 내용은 이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판결 후 양 당사자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사실상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결국 이 사건 보도의 진실 여부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반론보도 내용은 반론보도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이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빌라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격을 높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방법 중 하나로 법인 간 내부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원고와 관련된 투기행위에 관한 표현에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이 그 중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1심 판결문

사	건	2021가합42477 반론보도청구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6.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방송되는 C언론 평일 D 뉴스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 및 자막과 같은 크기와 활자체로 계속해서 표시하고, 낭독 중 배경화면은 반론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고, 피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 반론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제목 하단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 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게재 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며, 원 방송 다시보기에도 위 반론보도문 영상이 영상 시작 첫머리에 실행되게 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기한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21. 12. 17. 저녁 D에 방영된 뉴스 프로그램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 나. 원고는 E동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보도에서 '법인의 대표 F씨'로 지칭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들끼리 서로 짜고 내부거래를 통하여 사고파는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끌어올린 후 이를 팔고 나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해 처분 당시 그 시세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뿐,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천만 원씩 챙겨간 투기세력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법인들 사이의 통모에 의한 인위적인 시세조작행위로 투기세력인 법인들이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렸고, 그러한 투기세력 법인의 대표가 원고'라는 취지의 원고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할 것을 구한다.

### 3. 판단

-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의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기사 또는 반론 기사를 요구한다든지 원문보도를 왜곡 해석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 요지는 “G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규제 완화를 노리고, 재개발이 될 만한 오래된 동네의 낡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법인들이 투기에 뛰어들어 가격을 끌어올리고,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보도가 모두 원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원고에 대하여는 단순히 보도 중간에 법인 명의로 수 채의 빌라를 사고팔아 단기간 사이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한 사례로서 언급하고 있을 뿐, 원고가 법인들 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들 사이의 내부거래를 이용한 시세조작행위를 한 투기세력 법인의 대표가 원고’라고 해석되지도 않다. 원고가 ‘법인끼리 짜고 사고팔면서 실거래가를 끌어올리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요구한다든지, 원문보도를 왜곡 해석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 외 이 사건 보도 중 ‘대전에 주소지를 둔 한 법인이 지난 2월 빌라 지하층을 1억 2천 7백만 원에 샀다가, 10월에 2억 4천5백만 원에 되팔아 불과 8개월 만에 1 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거나, ‘이 법인의 대표 F 씨는 또 다른 법인을 통해 최소 네 건의 빌라를 더 사고팔았는데, 그 중 한 채는 불과 10개월 만에 3배 가격에 팔았다.’는 내용의 원고에 관한 직접적인 보도의 경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모두 사실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거래들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는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2나2026654 반론보도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4247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방송되는 C언론 평일 D 뉴스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 및 자막과 같은 크기와 활자체로 계속해서 표시하고, 낭독 중 배경화면은 반론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고, 피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 반론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제목 하단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 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게재 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며, 원 방송 다시보기에 도 위 반론보도문 영상이 영상 시작 첫머리에 실행되게 하라.
3. 피고가 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21. 12. 17. D경 방영된 “K”라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L”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고, 같은 날 20:05경 피고의 C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H] I”이라는 제목으로 위 같은 내용의 방송 자료를 게시하였다(이하 피고가 보도 또는 게시한 방송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나. 원고는 서울 강북구 E동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있고, 이 사건 보도에서 ‘법인의 대표 F씨’로 지칭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들끼리 서로 짜고 내부거래를 통하여 사고파는 방법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지역 내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를 끌어올린 후 이를 팔고 나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인들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해 처분 당시 시세 또는 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뿐,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천만 원씩 쟁겨간 투기세력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투기세력인 법인들이 법인들 사이의 내부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실거래가 조작행위로써 재개발 신청지역 내 빌라 등의 실거래가를 끌어올려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러한 투기세력 법인들의 대표인 원고가 투기세력’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여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한다(간접강제 신청 포함).

#### 나. 피고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그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이거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참조). 그리고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을 포함 한다(대법원 1997. 12.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참조).

#### 나. 사실의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들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 지역 내 빌라를 대상으로 법인들 사이의 내부거래를 통해 단기에 실거래가를 끌어올린 후 시세차익을 얻고 나가는 투기행위를 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투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지역 빌라를 대상으로

단기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법인을 통한 투기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에서는 ‘투기세력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투기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할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들의 부동산 거래행위나 원고가 법인을 통해 한 부동산 거래행위 외에는 별다른 사례나 근거를 들고 있지 않다. 원고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거래주체(대전에 주소지를 둔 법인), 거래지역(서울 강북구 E동), 거래시기(지난 2월과 10월), 거래가격과 그로 인한 시세차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관한 언급은 위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의 시청자 입장에서는 서울 재개발 예정 지역 내 빌라를 대상으로 하여 법인을 이용한 투기행위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는 투기행위의 실례로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들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소개하면서 위 법인들만 투기세력으로 지칭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인의 대표 F씨는 또 다른 법인을 통해 최소 네 건의 빌라를 더 사고 팔았습니다. 그중 한 채는 불과 10개월 만에 3배 가격에 팔고 나갔습니다. F 씨는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까지 맡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현재 지위와 행위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보도의 제목에 ‘법인 앞세운 전문 투기세력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일반 시청자 입장에는 이 사건 보도에서 언급된 법인의 대표 F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행위를 주도하여 단기시세차익을 얻었고 위 대표도 투기행위에 가담한 투기세력의 일원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투기행위의 예로서 법인들끼리 서로 짜고 내부거래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비록 그 부분에서는 원고 운영 법인들의 거래행위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위와 같이 원고가 법인을 통해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언급한 직후 법인들끼리 서로 짜고 비싸게 사고팔아 값을 끌어올리는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어 일반의 시청자 입장에서는 원고나 그 운영의 법인들이 투기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간 내부거래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반론보도청구의 인정 여부

- 1)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사실상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결국 이 사건 보도의 진실 여부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에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반론보도 내용은 반론보도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들이 하였다는 투기 행위의 유형과 그 방식으로서의 내부거래에 관하여 대략적인 장소와 기간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부존재에 대한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위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위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71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인 원고와 관련된 투기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된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해당 지역 부동산등기부[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거래내역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등기부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동에 있는 빌라 여러 세대를 매수한 후 약 8개월 내지 10개월 만인 2021. 10.경 매수 거래가액 기준 약 1.1배 내지 3배에 이르는 양도가액에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그중에는 주식회사 M가 2021. 1.경 매수하여 2021. 10.경 N 주식회사에 당초 매수 거래가액 기준 약 1.2배의 양도가액에 매도한 빌라도 있다(갑 제4호증의 4). 원고는 위 주식회사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가 결코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일정 시기에 특정 지역의 빌라 여러 세대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가 그로부터 단기간 내인 2021. 10.경 다시 매도한 이유나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이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빌라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격을 높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방법 중 하나로 법인간 내부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원고와 관련된 투기행위에 관한 표현에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적 주장이 그 중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2-3.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2034945 판결

언론이 사건 관련 다수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보는 등으로 의혹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였다면 비록 해당 혐의가 무죄로 종결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방송사이다. 피고 언론사가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비로 남편 소유의 건물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근무한 적 없는 교사나 다니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올려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관련 형사 사건 결과 원고는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전부 무죄가 확정되었고, 어린이집 인수자가 제기한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허위등록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원고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언론중재위 신청 후 직권조정결정을 거쳐 법원에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미 폐지된 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프로그램에 추후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하였다.(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에 전문 수록함)

원고와 피고의 항소 후 2심 법원은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허위등록 관련 형사 혐의없음 처분 관련 추후보도 청구는 청구 기간을 초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서 이 부분을 각하하고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는 인용하였으며, 1심과 달리 해당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이 충분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초과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2심 판결 후 원고가 상고했으나 3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방송업자로서 그 보도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보도와 같은 심층 취재 보도는 뉴스와 같이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그 내용이 개인의 범죄혐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도 이후 범죄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때 보도대상이 된 개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면밀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자나 독자가 범죄사실의 존재를 속단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보도가 비록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특정된 원고 개인의 위 내용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범죄혐의와 유무죄 그 자체보다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례로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 개인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경위 등을 더 이상 면밀히 취재하거나 추가적으로 법률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은 자금 운용이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야 이 사건 보도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판결문

사	건	2022나203494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70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허위등록 관련 추후보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1)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인터넷주소 4 생략) 초기 화면에 공지글 게시 방법으로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그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피고의 인터넷 기사 각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표시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별지 3] 기재 추후보도 대상 보도가 검색되는 한 위 추후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며,
- 2)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2016. 4. 17.자 'E' 987회 프로그램 다시보기 동영상(인터넷 주소 5 생략)과 피고의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2016. 4. 18.자 [별지 3] 기재 추후보도 대상 보도(인터넷주소 3 생략) 중 동영상 첫 화면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하여 위 추후보도 대상 동영상이 검색되는 한 위 추후보도문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3) 위 2)항의 2016. 4. 18.자 [별지 3] 기재 추후보도 대상 보도 중 본문 하단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그 제목 및 본문은 위 대상 보도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위 대상 보도가 검색되는 한 그 본문 하단에 위 추후보도문도 함께 표시되도록 하라.

다. 피고가 위 나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도하라.

나.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1) C언론 <D>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진행자의 멘트로 위 가항의 추후보도문 제목 및 본문을 방송하되,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 가항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추후보도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구성하고, 방송 이후 <D> 홈페이지 및 인터넷(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포털사이트 F, G 및 H의 뉴스 및 TV 섹션에 한함) 또는 OTT 등에 공급되는 <D> 프로그램 동영상 및 스크립트에서 해당 추후보도 영상 및 추후보도문이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하며,

2) <E>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면(인터넷주소 1 생략)의 추후보도대상영상과 피고 뉴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추후보도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가항의 추후보도문(제목 및 본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각 추후보도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다. 피고가 위 나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8.부터 2021.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8.부터 2021.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언론'을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다.

####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16. 4. 17. 방송된 'C언론'의 <E> 프로그램에서 "K"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부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6. 4. 18.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6 생략)에 위 같은 제목과 내용의 동영상과 본문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하고, 이 사건 방송과 이 사건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7 생략)를 통해 이 사건 방송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 2. 15.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704호).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횡령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2. 5. 위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노769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1. 6. 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의 심급을 통틀어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무죄판결을 ‘이 사건 무죄판결’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16. 10. 18. ‘원고가 L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원(在院) 아동 수와 대기자 수를 부풀려 허위로 고지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L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대금과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16 형제9033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9 내지 42, 54, 55, 57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그 순번에 따라 ‘○ 부분’이라 한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로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추후보도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도 구한다.

[표]

순번	원고 주장 보도 내용	허위사실인 이유
①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고 남편 소유의 건물 공사비를 지출하고, 원고의 남편에게 어린이집 행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개인자금을 차입하여 어린이집 공사 및 운영을 하였고, 이 사건 보도에서 언급한 공사비 등 지출은 위 차입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출금한 운영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다

순번	원고 주장 보도 내용	허위사실인 이유
②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나 다니지 않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허위등록된 교사로 지칭된 O 교사들의 실제 근무기록이 확인되었고, 위 교사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둘째 아이 허위등록과 관련한 부분은 대기자명부시스템 제도에 따른 것이고, 재원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근무교사 허위등록과 관련한 업무상황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고, 재원아동 허위등록과 관련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의 동의 없이 교사들이 수령할 수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형사사건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와 관련한 업무상황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우유와 교재를 납품 받으면서 납품업체로 하여금 실제보다 많이 납품한 것처럼 꾸미거나 저렴하게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 사건 보도에서 언급된 우유대금, 교재대금은 모두 원고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와 관련한 업무상황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L에게 양도하면서 3억 3,000여만 원을 회계에 채워놓았다.	L의 협박으로 3억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⑥	R 회장은 "쌈짓돈처럼 운영한 것은 '내가 이만큼의 부분에서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돌려놓을게' 이걸 잘못된 거죠. 왜? 안 걸리면 자기 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라는 인터뷰를 하였다.	R 회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진술하였다.

### 3.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판단

#### 가. 사실의 적시 여부

##### 1)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 가) ① 부분 관련

갑 제1, 2, 54, 55, 57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원장이 바뀌어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학교수인 원고의 남편이 어린이집 눈썰매 타기 행사, 봄 소풍 등에 동행했다며 수십만 원씩 지급된 기록도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전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장부가 위와 같은 경위로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그 도입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어린이집 운영과 무관한 명목으로 원고 남편에게 송금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하지만 교사들은 눈썰매장과 봄 소풍에서 N씨(원고 남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N씨(원고 남편)는 어린이집 직원도 아니었고 교재를 납품한 적도 없습니다'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 또는 독자로서는 원고가 원고 남편 명의의 빌라 건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비위행위(적어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가 단순히 원고의 남편에게 송금된 사실을 넘어 간접적·우회적으로 ① 부분과 같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제1적시사실'이라 한다).

### 나) ② 부분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도입부에는 '일한 적이 없는 보육교사의 이름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다니지도 않는 아이의 이름도 올라가 보조금을 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보도 중간에 위 부분 관련 구체적 내용으로 '다른 교사들은 두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교사에게 국가 보조금이 나간겁니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허위로 교사나 재원아동을 등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보조금 액수도 언급한 점, 그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회계장부 내역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이 언급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 또는 독자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교사나 재원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는 ② 부분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적시사실'이라

한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③ 부분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들도 원고에게 서 찻찻한 요구를 받았습시다’,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자기에게 달라는 것. 통장 비밀번호는 원고의 생일로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통장에는 구청에서 매월 교사들에게 주는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이 입금됐는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받았어야 할 돈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와 같은 표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보도의 다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는 ③ 부분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제3적 시사실’이라 한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④ 부분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에는 ‘리베이트를 준 의혹’, ‘리베이트로 줬다고 털어놓았다’와 같이 ‘리베이트’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납품을 하였다는 우유 대리점 관계자 및 교재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과 그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을 언급하고, 이어서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현금 리베이트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인상, 기타 이 사건 보도의 다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는 ④ 부분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제4적 시사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적 시사실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적시사실’이라 한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⑤, ⑥ 부분 관련

- (1) ⑤ 부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 약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위 부분을 이 사건 각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통해 이 사건 각 적시사실과는 독자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2) ⑥ 부분의 경우 R 회장의 인터뷰 내용 자체로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자금처럼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환 내지 변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린이집의 회계장부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R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달리 이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⑤, ⑥ 부분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수상한', '부적절한', '의혹'과 같은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모두 원고의 어린이집 회계장부 관리 및 운영비 사용에 관한 피고의 비판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서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한 점 등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간접적·우회적이거나 암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적시사실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도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제1적시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36,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공사비, 운영비 등에 필요한 돈을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남편이 2010. 9. 28.부터 2015. 5. 20.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위 계좌에서 원고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초과한다.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돈이 입·출금된 경위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② 원고는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후 보육료 등이 입금되면 이를 위 차용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L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L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던 돈 상당액을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회계처리상 문제 발생 시 이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그 이체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5년 회계장부상 원고의 남편에게 지급된 돈이 교재비, 행사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었더라도 당시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았던 점, L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수한 이후에도 원고 운영기간 중의 위 회계처리가 문제되어 L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장부 기입 과정에서 돈의 지출 명목을 실제 명목과 다르게 기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적시사실 관련

(1) 근무교사 허위등록 관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① 이 사건 보도에서는 허위등록된 교사로 2명의 O 교사들을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무죄판결에 의하면 위 두 교사들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전부터 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② 이 사건 무죄판결 중 근무교사 허위등록 관련 공소사실은 해당 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서 해당 교사의 계좌로 월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에서 특정된 위 O 교사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중 1명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업무분장표에도 교사로 등재되어 있다.
- ③ 피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하였다고 속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 부분 보도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서는 ‘다른 교사들은 두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허위 교사로 의심되는 두 사람에게 매달 ... 지급된 걸로’, ‘근무하지도 않은 교사에게 국가 보조금이 나간 겁니다’와 같이 위 언급된 교사들이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실제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아예 근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나 비난가능성 등에 질적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을 들어 위 표현을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라거나 이 부분 보도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재원아동 허위등록 관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 역시 허위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① 이 사건 보도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시간이나 방법 이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으로 볼 수 있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 외에는 이 부분 적시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였던 S은 이 사건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6명의 원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으면서도 다닌 것처럼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 원아는 제가 봤던 원아인데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아동으로 허위등록된 아동이 특정되지 않는 등 재원아동 허위등록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 나타난 일부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만을 근거로 이 부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피고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일부 학부모의 허위원생 등록 의혹에 관한 제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아동이 허위로 등록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히 일부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는 제보사실 유무가 아닌 재원 아동의 허위등록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제3적시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 역시 허위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① 이 사건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적시사실 관련 공소사실 중 원고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그 주된 이유로, 피해자인 교사들이 대부분 통상적인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급여의 책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수당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교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근무하였으므로 얼마든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누군가에게는 수당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등 개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수궁하기 어려운 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수당을 수령할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의 존재를 알고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 타인에게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고도 어떤 용도인지 묻지 않고 교부 이후에도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등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 상 수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였다.

- ② 이 사건 형사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였던 T은 'L 원장이 앞으로 경찰조사 시작되면 원고로부터 수당을 안 받았다고 진술하라고 암시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서 '수당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안 받았다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교사 U 역시 'L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생님들은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원고가 교사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일부 교사들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 ③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교사들의 수당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부분 적시사실의 주요 부분은 원고가 해당 교사들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형식만 갖춘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4적시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적시사실 관련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판결의 취지는,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영유아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원고 소유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비록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이었던더라도 위 계좌의 다른 일반 자금과 혼화되어 이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결과, 결국 원고가 위 계좌에 있는 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일 뿐, 원고의 이른바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부존재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무죄 이유 중에는 원고와 V이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교재대금을 부풀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V가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교재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도 하다.

- ② 원고는, 우유의 경우 관련 우유업체에서 우유 10개를 주문하면 1개를 더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우유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 거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체결한 우유납품계약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교재대금을 정상적인 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라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교재를 납품받으면서 수령한 차액이 얼마인지, 이를 실제로 교재 판매업자에게 전부 지급하였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③ 원고는 우유 및 교재대금을 개인카드를 통하여 결제하였고 원생들로부터 별도로 우유급식비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자금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를 혼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우유급식비를 보육료 등 다른 명목의 금원에 포함시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소명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피고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보도에 나타난 어린이집 회계부정과 운영비리 문제는 당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 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가 사용된 시점 및 그 경위, 관련 제보자들의 제보등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설령 일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제보자, 관련자 및 전문가를 폭넓게 인터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보도 하였으므로, 위 각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다) 이 사건 보도 당시 어린이집 운영 비리 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이 사건 보도는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한 의혹제기 내지 비판을 다룬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 역시 진실이거나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은 조각 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관련 법리

- 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다) 한편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보도 가운데 이 사건 제1, 2, 3적시사실은 허위로 인정되고, 제4적 시사실은 이를 허위로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방송업자로서 그 보도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보도와 같은 심층 취재 보도는 뉴스와 같이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그 내용이 개인의 범죄혐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도 이후 범죄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때 보도대상이 된 개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면밀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자나 독자가 범죄사실의 존재를 속단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보도를 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① 이 사건 보도는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근무교사나 재원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교사들이 수령할 수당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급한 우유와 교재 대금 중 일부를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보도 말미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경찰관의 인터뷰에 이어, 아이들이 집을 떠나 처음 만나는 공동체 현장인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과 그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보도를 마무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는 어린이집 회계부정 실태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 투명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등 사회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서 그 점에서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이 사건 보도의 취재를 담당한 피고 소속 기자(이하 ‘담당 기자’라 한다)는 이 사건 보도에 앞서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수한 L 원장,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였던 교사, 재원아동의 학부모, 우유와 교재를 납품하였던 납품업자 등 이 사건 어린이집 내외부 다수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였고,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인터뷰하여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장부를 검토해 본 전문가들은 어린이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이 총 망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언급한 후 사회복지학과와 보육학과 교수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들과의 일련의 인터뷰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 기자는 나름 이 사건 어린이집

회계장부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검토시켜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도에서 최초 제보자로 보이는 L 원장이 어린이집 양수 관련 분쟁으로 이 사건 보도 이전부터 원고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었고, 원고는 2016. 4. 12. 담당 기자로부터 질문지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답변을 회신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임을 알렸으므로, 담당 기자로서는 L 제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담당 기자는 L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어린이집 회계장부의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여러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전문가들에게 보여주어 검토의견을 받아보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 사건 각 적시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보도에 언급된 취재원들이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다거나 중립성이 현저히 결여된 취재원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인터뷰에 응한 일부 학부모는 2016. 4. 16. 원고에게 '기자가 유명아동이 있다는 거 확인했다고 아는 점만 얘기하라 해서 얘기 기자에게 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담당 기자가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담당 기자가 이 사건 보도에 등장한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답변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한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③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 영유아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외에 원고 개인의 차용금을 입금하는 등 목적과 용도가 서로 다른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위 계좌에서 원고 남편 명의 계좌로 공사비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음은 회계장부상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의 편의상 근무교사와 재원아동 등록, 보조금과 수당 수령, 우유와 교재납품 과정에서 관련 장부 기재와는 일부 실제 권리관계를 달리하는 사항이 있었던 점 및 교사, 학부모, 우유 및 교재 납품업자의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는, '당시 영유아보호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영유아보호자들이 어린이집 경영자에게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그 보호자들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그 경영자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것이 아니라 그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그 경영자의 소유로 되고, 다만 이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으로 볼 수 있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는 위 보조금 외에도 영유아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 원고 개인의 차입금 등의 금원이

혼화되어 있어 위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게 된 결과 원고가 위 계좌의 돈을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업무상황명 및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보도가 비록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특정된 원고 개인의 비위 내용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범죄혐의와 유무죄 그 자체보다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례로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 개인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경위 등을 더 이상 면밀히 취재하거나 추가적으로 법률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은 자금 운용이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야 이 사건 보도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이 사건 보도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었다. 비록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도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인 보도를 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어린이집 회계 관련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라고 합니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와 같은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범죄혐의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하고 있고 참고인 조사가 모두 마쳐지는 대로 원고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라는 담당 경찰관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한 외에는 원고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그 죄명이나 범죄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⑤ 원고는 2016. 4. 10.부터 이 사건 보도 전까지 지속적으로 담당 기자에게 '경찰에 형사고소가 된 사항이므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와 같은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담당 기자는 이 사건 보도에 앞서 2016. 4. 12. 원고에게 질의서를 보내 그 답변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 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 개인자금을 일부 혼용하여 사용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 자금 입출 내용, 교사 수당과 관련한 상세한 반박을 제기하였다. 담당 기자는 원고의 답변을 받은 후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 보도 내용에 원고의 일부 반론도 설명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일부 허위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도행위를 두고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 인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부가적 판단

#####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도는 2016. 4. 17.경 이루어진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 2) 관련 법리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이 2016. 4. 17. 에, 이 사건 기사 게재가 2016. 4. 18.에 각 이루어진 사실, 담당 기자는 이 사건 보도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이 2016. 4. 17.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이 있었던 2016. 4. 17. 직후나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보도내용 및 보도주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위와 같이 보도의 내용 및 그 주체를 확인하는 때에 이 사건 보도에 허위사실이 적시됨으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확인하였던 2016. 4. 17. 또는 그와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16. 4. 18.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손해는 방송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보도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는 그 보도를 접한 피해자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② 원고는 담당 기자의 취재에 적극적·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다.  
여기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각 적시사실이 허위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적어도 원고 입장에서는 별도로 전문적인 자료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형사사건 등 관련 형사사건 외에는 이 사건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직접 쟁점이 되는 관련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상당한 인지도 및 영향력을 가진 방송사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도를 한 행위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확인할 무렵에는 피고의 보도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존재하여 그로인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손해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형사사건은 가해자인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닌 원고 자신의 횡령 등 혐의에 관한 것인 점,<sup>1)</sup> 이 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의 확정인 이 사건 각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증명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형사사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원고의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1)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경위와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권 시효의 기산일이 늦춰지는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④ 원고는,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보도를 여전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손해는 해당 보도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해당 보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명예 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사실상의 효과 내지 명예훼손 상태의 지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 내지 그로 인한 손해의 예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 뿐, 그 존속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이후 별도로 동일 내지 유사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과 직권 판단

-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보도일로부터 위 각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2) 언론중재법은 제17조는 “추후보도청구권”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추후보도청구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이 사건 보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2016. 10. 18.에 있었고, 이 사건 무죄판결이 2021. 6. 3.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0, 51,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6. 11.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를 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에 2021. 6. 3. 이 사건 무죄판결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1. 8. 5. 원고의 언론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정

결정을 하였고, 위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2021. 8. 17.에, 원고가 2021. 8. 19.에 각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6. 3.경 이 사건 무죄판결의 확정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2021. 8. 17.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죄판결을 이유로 한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무죄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추후보도청구에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5) 나아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한 추후보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16. 10. 18.에 있었고, 대상 혐의는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이 사건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사건 제2 적시사실 부분)과 관련이 있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피의자로서 2016. 11. 28. 무렵에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아 위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형사절차의 종결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3개월 내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허위등록 관련 추후보도청구 부분은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 내지 4적시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1, 2, 54, 55, 57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어린이집 내사에 착수하였고 회계장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며, 허위등록된 교사로 의심되는 사람과 리베이트를 준 납품업자 등을 소환조사하였다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 된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범죄혐의로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수사에 따른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사람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추후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3)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이는 추후보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별지 2] 기재 추후보도문의 내용, 이 사건 보도와 [별지 2] 기재 추후보도문의 관련성,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한 문구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하도록 하고, 추후보도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한 'E' 프로그램이 증명되었으므로 그와 유사한 성격의 시사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서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나, 위 양 프로그램은 그 방송 시간대를 달리하는 점(각 매주 일요일 밤 11시 10분과 같은 요일 밤 8시 30분)과 추후보도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추후보도 대상 프로그램 다시보기 동영상 등 관련 동영상 첫 화면과 기사 본문에 추후보도를 하고, 이와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분 초기 화면에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추후보도문을 게시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추후보도 요건 해당성 여부 등을 다투고 있고, 원·피고 사이에 그 추후 보도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추후보도 의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에 대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후보도를 구하는 부분(간접강제 포함)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되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 중 부적법하여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2-4.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8452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4433 판결

청구하는 반론보도문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사건 개요]

원고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피고는 인터넷 언론사이다. 피고 언론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고의 구성원들이 모 종교단체 신도들로 파악되었고, 원고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교와 포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1심 법원에서 기각 후 원고가 항소함. 1심 판결은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전문 수록함)

2심 법원은 원고가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위장 포교를 원고가 하고 있다는 보도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청소년들 상대로 포섭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니라 지엽 말단적 부분이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판결 후 원고가 상고했지만 3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기사는 해당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가장하여 포교하는 ‘위장 포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모 종교단체가 과거에도 비영리 단체의 문화활동을 통하여 신도들을 포섭한 사례가 있고, 해당 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 종교단체 신도라면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즉 원고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 어떤 종교 및 신앙과 관련된 포교 등 종교적 색채를 가진 활동을 한 일이 없다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2나2028452 반론보도심판청구
원 고, 항 소 인	비영리 민간단체 A
피 고, 피 항 소 인	주식회사 I(변경 전: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158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2. 10.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의 익일부터 5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C 홈페이지 <문화> 면 및 D <주요뉴스> 면에 별지 1-1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각 게재하고, 제목을 선택(클릭)하면 별지 1-1 기재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반론보도문은 최초 48시간 동안 C <문화> 면 및 D <주요뉴스> 면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며, 그 이후에는 C와 D의 각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 2 기재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하라.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의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sup>1)</sup>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별지 1-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1) 원고는 2022. 6. 21. 참고서면 및 첨부 별지를 제출하며 보도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다만, 청구취지 중 별지 1-1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으로 고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위장 포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설립 이후 포교 등 종교적 색채를 가진 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별지 1-1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를 구한다.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중 특정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반론보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부분' 및 '제○반론'이라 한다).

순번	원고 특정 사실	반론
1	원고가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위장 포교를 하고 있다.	원고는 2013. 2.경 설립된 이래로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해당 기사에서 거론된 식의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단체(F)의 교리전파 내지 포교, 포섭을 직·간접적으로 행한 일은 없고, 위 특정종교단체(F)의 교리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일도 없으며, 원고는 위 특정종교단체(F)는 물론, 그 어떤 종교 및 신앙과 관련된 포교 등 종교적 색채를 가진 활동을 한 일은 없다. J은 2018. 2. 18. 출소하였는데, 이미 원고는 2013. 2.경에 설립·등록된 단체로서 그 활동과 사업은 J의 출소와도 일질 무관하다. 원고는 위 특정종교단체(F)에서 투자와 지원을 받은 일도 없다.
2	원고는 주로 치어리딩 응원단과 디자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과 접촉하며, 지역 청소년행사 기획 등에 참여하고 있다.	원고는 공익활동의 대상 및 사업수행의 수혜자를 지역사회 청소년들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 2)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 3)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 나. 제1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는 K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비롯해 이사들과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F 신도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다음, 이에 대한 이단 전문가들의 의견, 즉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진 않더라도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간접적인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을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해당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가장하여 포교하는 ‘위장 포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F가 과거에도 비영리 단체의 문화활동을 통하여 신도들을 포섭한 사례가 있고, 해당 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F 신도라면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즉 원고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 어떤 종교 및 신앙과 관련된 포교등 종교적 색채를 가진 활동을 한 일이 없다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제1부분과 같은 내용의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제2부분에 관하여

-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는) 주로 치어리딩 응원단과 디자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과 접촉하며, 지역 청소년행사 기획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부분과 같은 내용의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2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2부분은 피고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을 강조하기 위한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가 활동의 대상을 청소년들에 국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자체가 이 사건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이라기보다는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활동의 대상을 청소년들에 국한하고 있는지 여부가 곧바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는 요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2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도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3심 판결문

사	건	2023다224433 반론보도심판청구
원고, 상고인		A단체(변경 전 B단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8452 판결
판결선고		2023. 6. 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23. 선고 2022나2549 판결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일어난 '사북 사건' 피해자이고, 피고는 라디오 방송사이다. 피고가 '사북 사건'을 주제로 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다큐드라마를 제작해 30회에 걸쳐서 방송하였다. 원고는 다큐드라마 내용 중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이 원고에게 한 가해행위를 축소·왜곡한 부분이 있고 원고에 대한 가해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 원고를 오히려 도와준 것으로 잘못 묘사되었다면서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쳐 법원에 반론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해당 다큐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 등을 결합해서 제작된 방송임을 전제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대사와 묘사된 행동은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는 창작된 허구이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드라마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 판결은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전문 수록함)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반론보도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일반 청취자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으로 봐야 하고, 해당 허위 사실의 공표는 피해자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언론사에게 반론보도 및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2심 판결 후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아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법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 원보도 앞부분에서는 원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감히 원고를 도와주지 못하였다는 설명을 두어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이하 A 씨)가 원고를 도와주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강조되고, 제19회에서는 A 씨의 육성과 대역에 의한 당시 상황의 재현을 통하여 A 씨가 합동수사단에 갑작스럽게

끌려간 다음 폭행, 협박, 욕설을 포함한 강도 높은 고문을 당했다고 기술하여 A 씨가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렸다는 점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한편 A 씨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원보도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청취자로서는, 앞서 본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상상력에 의한 예술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사복 사건의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게 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A 씨 관련 보도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 피고가, 'A 씨는 원고를 도와준 사람이다.'라는 허위사실을, 'A 씨가 본래는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몰렸다.'라는 허위사실을 각각 보도한 행위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표현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가미하였다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압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청취자에게 명백히 그릇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것으로서 피해자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내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명예훼손과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수긍하고 있고, 피고의 A 씨 관련 보도는 원고가 입은 피해사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 판결문

사            건        (춘천)2022나2549 정정보도 청구 등  
 원 고 , 항 소 인     A  
 피 고 , 피 항 소 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합3076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 1) 라디오방송 <C>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

2)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라디오’란 ‘특집 프로그램’ 게시판에 48시간 동안 [별지 1] 반론보도문 중 제목을 통상적인 게시글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반론보도문이 통상적인 게시글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 게재 및 표시 후에는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보관하여 라디오 다큐드라마 <K> 제12회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나. 피고가 가.항 기재 각 의무를 가.항 기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9.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되는 18:05 ‘C’ 시간대에 [별지 2]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여 방송하고, [별지 2] 반론보도문을 피고 홈페이지 특집 프로그램(라디오) 화면의 본문 하단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게재하며, [별지 2] 반론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나.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반론보도의 내용을 [별지 3] 반론보도문에서 [별지 2] 반론보도문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D사건과 당사자의 지위 등

- 1) 망 O는 원고의 배우자로 1980년경 강원 정선군 Q 소재 D광업소의 R노조 지부장(직무대리)으로 근무하였고, S은 D노조 지도위원이었다.
- 2) S을 비롯한 광부들은 1980. 4.경 D광업소 일대에서 'T'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해당 지역을 점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광부들이 상해를 입고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 3) 한편 망 O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은 망 O를 찾아다니다 1980. 4. 22. 오전경 원고를 붙잡아 D광업소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원고에게 폭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가하였고, 원고는 D광업소 계시판 기둥에 상당한 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
- 4) 원고는 1980. 4. 24. 오전경 Q 부읍장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포괄하여 'D사건'이라 한다).
- 5) 제1군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8. 6. S, L 등 28명에 대하여 D사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사건번호 80보군형제30, 34호, 이하 'D사건 판결'이라 한다), L는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1980. 8. 8. 제1군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관할관 대장은 L에 대하여 형 집행면제로 감면하였다(갑 제9호증 제74면).
- 6) S 등은 D사건에 관하여 2000. 10.경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2005. 8.경 S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2008. 4. 8. S, L 등에 대하여 D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 8)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방송사업자이다.
- 9) 피고는 2020. 11. 9.경부터 D사건을 주제로 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다큐드라마 <K>을 총 30회에 걸쳐 방송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다큐드라마'라 한다).

#### 나. F의 D사건 특집 다큐멘터리에 관한 조정합의 등

- 1) 흡수합병 전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06. 12.경 텔레비전 특집 다큐멘터리로 <H>를 방송하면서(이하 '조정다큐멘터리'라 한다) 원고의 동의 없이 피해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였고, 제작 과정에서 원고의 입장 등을 취재하지는 않았다.

- 2) 원고는 그 무렵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 신청을 하였다.
- 3) 원고(신청인)와 F(피신청인)는 2007. 1. 31.경 조정신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이하 ‘조정합의’라 한다).

1. 보도문

가. 제목 : 사과 및 반론보도

나. 내용 : F는 지난해 12월 28일 조정다큐멘터를 방송하면서 D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A씨의 동의 없이 피해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는 등으로 본의 아니게 A씨와 그 가족 여러분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자신을 폭행한 연루자들은 폭도가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2월 8일 18시 05분에 방송하는 F-TV ‘U’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아나운서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다큐멘터를 신청인의 입장을 담아 재제작하지 않는 한 자사 또는 타 방송사에서 방영되지 않도록 하고, 조정다큐멘터리의 VOD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

- 4) 피고는 2015. 1. 2. F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라디오방송 및 파일 업로드 등

- 1) 피고는 2020. 11. 6. “1980년 D항쟁을 재조명한 라디오 드라마가 제작돼 방송됩니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I단체 지원을 받아 제작됐고, 배우 J씨의 내레이션, 유명성우들의 열연과 함께 D항쟁 당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 2) 피고는 2020. 11. 9.부터 2020. 12. 18.까지 평일 19:38부터 약 17분간 총 30회에 걸쳐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라디오로 방송하였다(그중 특정 회를 표시하는 경우 ‘제○회’와 같이 표시한다).
- 3) 피고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라디오’란 ‘특집 프로그램’ 게시판(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파일을 업로드 하였고(날짜가 2021. 1. 6.자로 표시됨), 현재도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각 회별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 4)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제작·방송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취재 내지 의견청취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1) 피고

가) 원고가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대상인 제11회 및 제12회의 각 방송일자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반론보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소 제기 시점이 아닌 조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 언론보도는 피고가 라디오방송을 한 것을 의미하지 피고가 라디오방송의 파일을 아카이브에 업로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원고 스스로 라디오방송 자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업로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21. 1. 6.은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파일 전체가 업로드 된 날짜이고, 실제로 제11회 및 제12회의 파일이 업로드 된 시점은 각각 2020. 11. 24. 및 2020. 11. 25.이다.

#### 2) 원고

가) 원고는 2020. 5. 17.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신청 시점에는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조정불성립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나) 전체 언론보도로써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최종 종료일은 2020. 12. 18.이므로, 2020. 12. 18.을 기준으로 6개월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 경우 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1. 6.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전체 파일을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고 이 역시 언론보도에 해당하므로, 2021. 1. 6.을 기준으로 6개월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 나. 관련 규정

언론중재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을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조정신청)

-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不成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정)

-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22조(직권조정결정)

-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 제24조(중재)

-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다. 판단

- 1)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언론사에 대한 직접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중재신청, 법원에 대한 소 제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3가지 절차에 대하여 모두 제14조 제1항이 적용 내지 준용되도록 하여 공통적으로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소 제기를 종국적인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절차로 규정하면서도 3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그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규정 취지 및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3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에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이미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이미 행사되었으므로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도 당연히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 구「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언론중재법의 제정을 통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서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언론중재법에서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부터 14일 이내에, 직권조정결정은 신청 접수일부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을 거쳐 소를 제기할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을 경과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3) 피고가 제11회 및 제12회를 라디오방송한 시점이 각각 2020. 11. 23. 및 2020. 11. 2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사건을 주제로 하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2020. 11. 9.부터 2020. 12. 18.까지 총 30회에 걸쳐 라디오로 방송되었고, 각 회가 독립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선행 회와 후행 회가 순차로 연결되는 사실, 원고가 2021. 5. 17. 언론중재위원회에 연속된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전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1억 원(라디오방송 5,000만 원, 이 사건 사이트 게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21.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조정신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전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쟁점이 차츰 정리되면서 제1심 제2회 변론기일(2022. 3. 22.)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특정 회가 문제된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22. 6. 15.자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인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서 [별지 4] 쟁점 부분을 제시하였고 [별지 4] 쟁점 부분은 대체로 제11회 및 제12회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주장의 실제적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최초에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전체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차츰 쟁점을 좁혀가다가 그중 일부를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 특정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라디오방송이 종료된 2020. 12. 18.을 기준으로 6개월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라디오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6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1. 1. 6.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전체 파일을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함으로써(을 제8호증) 이를 게시하고 청취자가 재생·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역시 언론보도에 해당하므로, 2021. 1. 6.을 기준으로 6개월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 게시된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6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 각 회의 라디오방송 직후 각 회의 파일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원고가 사회적인 평가의 저하, 위법성 등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중재법 제16조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외에 민법 제764조에서 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반론보도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청구에는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와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실제 존재하는 사건으로서 D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는 언론보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원고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별지 4] 쟁점 부분은 원고에 대한 취재나 의견요청 없이 편파적으로 제작·방송되었고,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이 원고에게 한 가해행위를 축소·왜곡하였으며, 피해자인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청취자에게 원고가 피해가 중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를 과장하여 D사건이라는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상과 오해까지 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6조 또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별지 2] 반론보도문을 청구취지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반론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한다.

#### 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성격

#####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15호는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한다.

나)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성격

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이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방송뉴스, 신문기사 등과 같은 언론사의 통상적인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인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특정 부분이 사실적 주장, 즉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는 그 제목에서 이미 드러나는 바와 같이 ‘드라마(Drama)’라는 극(劇)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청취자의 흥미를

돋우고 감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는 감독, 연출자,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D사건에 새로운 내용을 일부 가미시켜 등장인물의 행동, 생각, 감정을 묘사한 부분, 관련 당사자의 대역이 구체적으로 당시 대화나 상황을 재현해 낸 부분,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함으로써 일련의 사실관계 중 감독 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강조한 부분,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거나 그중 일부 사실을 과장·축소한 부분, 효과음을 추가한 부분, 내레이터가 역사적 사실 또는 각색된 방송 내용에 대하여 부연 설명 내지 일종의 논평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는 분명 예술창작의 산물 또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나 의견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 또한 청취자가 방송되는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예술창작의 영역, 허구의 영역, 극적 과장의 영역과 역사적 사실 사이의 긴장관계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이를 감안 하여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드라마’적 요소와 더불어 ‘다큐(Documentary)’적 요소, 즉 실존하는 사물, 인물,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분석이 그 밑바탕에 있고, 그것은 바로 D사건과 관련 당사자이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D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른바 ‘메인 테마’로 하여 제작·방송되었고, 상상력이 발휘된 부분이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건의 전개와 흐름은 D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는 사실적 주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건의 과정이나 상태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보여준 행동, 이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반응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취자는 언론사로서 공신력이 있는 피고가 방송하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고, 특히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력이 발휘된 부분 등도 청취자로서는 예술창작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수도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 ‘드라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예술창작의 성격을 점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청취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접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청취자가 원보도를 피고의 상상력이 발휘된 예술창작의 영역 등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원보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전체적인 인상을 모두 참작하여 사실적 주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적 주장이 존재한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 원보도 특정 및 반론보도 쟁점 부분의 구분

- 1) 원고는 2022. 6. 15.자 준비서면으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서 원보도를 [별지 4] 쟁점 부분과 같이 특정하였고, 원보도는 대체로 제11회 또는 제12회에 관한 것이다(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① 부분은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전체를 원보도로 삼고 있다).
- 2)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원보도에 대하여 당심에서 [별지 2] 반론보도문과 같은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반론보도의 내용을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취재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자신을 폭행한 사건 연루자들은 폭도가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③ 원고는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로부터 극심한 폭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여러 상해를 입고 심각한 정신적 불안상태에 빠졌다. ④ 원고는 L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L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가해행위를 시인하였다.’와 같이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였다(이하 ‘①·②·③·④ 부분’과 같이 특정한다).
- 3) 이하에서는 원고가 특정한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청구한 반론보도를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 라. ①·②·③·④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 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언론사등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 나)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부리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획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자 2008그202 결정 등 참조).

다) 반론보도청구 요건인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 2) 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자는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고,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되는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의 직접적인 기술은 물론 간접적인 표현 내지 암시가 포함 된다.

나) 먼저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전체를 원보도로 하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자체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적 주장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전체에서 지명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내용 전부가 원고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에 대한 취재나 의견청취에 관한 직접적인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고 이에 관한 간접적인 표현 내지 암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11회 및 제12회 중 특정한 원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 (1) 해당 원보도 중에는 원고(대역)와 광부 부인(대역)의 대화를 재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보도에 원고에 대한 취재나 의견청취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적 주장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반대의 사실적 진술로서 ①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에는 피고가 원고의 대화를 재현하고 원고의 발언을 기술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취재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반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대화·발언이라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반박하지 않은 채 피고의 제작절차나 제작 방법에 관하여만 반박하는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다만,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②·③·④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를 청구하면서 원고의 반론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내지 원고의 반론을 보충하고 뒷받침하는 설명으로서도 ①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②·③·④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① 부분이 반론보도의 내용으로서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 따라서 ① 부분과 같은 직접적인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②·③·④ 부분과 결부되어 이른바 ‘보충적인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 3) 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서 원보도는 사실적 주장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반론보도 역시 사실적 주장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원보도에 대하여 청구하는 반론보도 자체가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는 자신을 폭행한 사건 연루자들은 폭도가 틀림없다고 주장한다.’는 ② 부분은 원고의 의견, 논평에 가깝다. 따라서 원보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②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② 부분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제11회 및 제12회 중 특정한 원보도를 살펴보더라도, 광부(대역이 아닌 실제 육성)가 “우리를 폭도라고 몰고 하는 데는 가장 큰 저 이제 그 역할을 했고”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원고를 폭행한 광부들이 폭도임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기술이나 간접적인 표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광부들이 원고에 대한 폭행을 부인한다는 사실적 주장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②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③ 부분을 사실상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으로서 ③ 부분과 중첩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따라서 ②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③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는 이른바 ‘무기대응’과 ‘진실 발견 및 건전한 여론 형성’으로 볼 수 있고,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으므로, 두 헌법적 이익이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한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11회 및 제12회 중 특정한 원보도와 이에 대한 반론보도로서 ③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위와 같은 반론보도청구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의 피해사실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에게 체포·억류된 1980. 4. 22. 오전부터 해방된 같은 달 24. 오전까지의 사실관계를 비롯한 원고의 피해 사실 전반을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원보도를 보충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반론보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제11회 및 제12회는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D사건에 관하여 당시 광부들의 불신과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들이 구조적 모순과 억압에 맞서 싸웠으며 중요한 노동운동으로서 현대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원고에 대한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의 폭력 행사는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원고는 당시의 경험을 ‘악몽’으로 여기고 있고 이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들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나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③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다거나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1회 및 제12회에는, 피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길 수 있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④ 부분은 제외하고, 원고가 D사건에서 받은 피해사실로서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이 망 O를 찾으러 다닌 내용, 원고가 이들에게 체포되고 결박당한 내용, 그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었고 원고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 원고가 억류된 상태에서 끌려 다니다 기둥에 묶인 내용, 원고가 기둥에 묶인 채 고통을 받은 내용,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감히 원고를 구조하지 못하였던 내용이 기술되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폭력 행사를 비롯하여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하여 ‘오점’과 ‘반성의 대상’이라고 설명되었다.

- (2)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전체 주제는 D사건이고, 원고가 중요 등장인물이기는 하나 주인공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와 관련된 내용을 원고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데에는, 전체 방송 분량 및 방송 시간, 조직적인 방송 내용의 구성, 자연스러우면서도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건의 전개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현실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피고에게 원고의 모든 피해사실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 (3) 또한 앞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성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여러 사실관계 중에서,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가감할 수 있고, 이는 언론의 자유는 물론 예술창작의 영역과도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술해야 한다면, 이는 역사적 사료를 그대로 읽는 수준이 되고 말 것이고,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하여 D사건을 재조명한다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취지와 목적이 몰각될 수도 있다.
- (4) 제11회 및 제12회가 원고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왜곡된 인상을 전달하지도 않는다. 제11회 및 제12회의 주제 내지 청취자에게 전달하려는 궁극적인 방송 내용은 ‘D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린치는 오점이다. 역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함으로써 진보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제11회 및 제12회는 전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지 않았고, ‘오점’과 ‘반성의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 청취자 역시 원고가 무고한 피해를 당하고 커다란 고통을 받은 사실,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제12회에는 내레이터가 다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어가기는 하였으나 ‘폭력과 광기’라는 언급도 함께 하였다.
-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③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가 원보도에 대한 반박 내지 방어로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하고 청취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구체성과 포괄성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③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의 취지, 즉 원고가 D사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이미 제11회 및 제12회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는 충돌하는 원고와 피고의 법익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③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④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1)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제12회 중 특정한 원보도<sup>1)</sup>에 관하여 일반 청취자가 보통의 주의로 접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문맥 등을 살펴보면, 원보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적 주장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이하 포괄하여 ‘L 원보도’라 하고, 그중 특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 부분’으로 표시한다).

㉠ 원고가 기등에 묶인 상태에서 L에게 바지가 흘러내리니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L는 원고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원고를 도와주려다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 L는 무서웠지만 원고가 너무 불쌍하여 흘러내리는 원고의 바지를 올려주고 끈을 찾아 매주었다.

㉢ L는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몰려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2) 원보도에는 L가 육성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 내레이터가 이에 대하여 ‘L 어르신’의 증언’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존 인물로서 원고(대역)와 L(대역)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재현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리고 원보도 앞부분에서는 원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감히 원고를 도와주지 못하였다는 설명을 두어 L가 원고를 도와주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강조되고, 제19회에서는 L의 육성과 대역에 의한 당시 상황의 재현을 통하여 L가 합동수사단에 갑작스럽게 끌려간 다음 폭행, 협박, 욕설을 포함한 강도 높은 고문을 당했다고 기술하여 L가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렸다는 점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한편 L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원보도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청취자로서는, 앞서 본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상상력에 의한 예술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D사건의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게 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L 원보도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방송 내용은 L가 원고를 도와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내레이션 중 ‘사람들이 원고를 감히 도와주지 못하였다.’는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고, 제12회에서 L가 원고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술된

1) 원고는 원보도를 제12회에서만 특정하였다.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L 원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

- (1)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9. 1. 15.자 2008그202 결정 등 참조).
- (2) 원고는 L 원보도에서 직접 지명되었고 L 원보도에 나타난 L의 행위, 동기, 경험등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리고 L가 D사건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12호증 제26면), 갑 제9,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2008. 4. 8.자 진실규명 결정에는 L가 D사건 판결 내용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기재된 사실(갑 제9호증 제31면), 진실·화해위원회의 D사건 최종조사결과보고서에는 L가 망 O를 찾을 목적으로 원고의 집으로 가서 가재도구 등을 부수고 원고를 끌고 가 D광업소 게시판 기둥에 묶고 욕설을 한 것을 시인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갑 제13호증의 1 제11면)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L 원보도에는 원고에 대한 가해자인 L가 의인(義人) 내지 조력자처럼 설명되고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잘못 지목되어 고문까지 당하였다고 기술되었고, 위와 같은 L 원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거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반론을 제기할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고의·과실, 위법성이나 L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L 원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판단한다.

마. L 원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

- 가) 법원은 반론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계재 또는 공표할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하고, 반론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반론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제3항). 언론사가 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통상적인 속도로

입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6항).

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반론보도 방송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가) 반론보도의 내용

- (1) L 원보도 중 ㉠ 부분은 핵심적인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배경사실에 가깝고, ㉡, ㉢ 부분 중 일부는 L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반론보도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해당 부분은 반론보도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 (2)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 부분을 참작하여, ㉡ 부분 중 나머지 및 ㉢ 부분과 연관성을 가지는 반대의 사실적 진술로서, 원고는 L로부터 바지를 올려주고 끈으로 매주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점, L가 다수의 부녀자들과 함께 원고의 물건을 부수고 원고를 D광업소 게시판 기둥에 매어놓고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L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가해행위를 시인하였다는 점을 반론보도의 내용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피고가 L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방송하였으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취재 내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던 점이 L 원보도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론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설명 내지 원고가 반박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L 원보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취재 내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반론보도의 내용에 포함시킨다.
- (3) 다만, ㉣ 부분 중 다소 장황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적절히 제외·수정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최종적인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1] 반론보도문과 같다.

### 나) 반론보도의 방법 등

- (1) 이 사건 다큐드라마 각 회가 평일 19:38경부터 방송된 사실,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종영되어 더 이상 방송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제12회를 포함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파일 전체를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한 사실, 청취자가 언제든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2회의 파일을 재생·청취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평일 18:05부터 <C> 프로그램을 라디오로 방송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2)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 원보도와 되도록 동일한 ‘저널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반론보도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평일 저녁에 라디오방송 중인 <C>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서 [별지 1] 반론보도문이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되도록 반론보도의 방법을 정한다.
- (3) 그리고 이 사건 사이트에 여전히 L 원보도가 포함된 제12회의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이트에도 [별지 1] 반론보도문이 48시간 동안 이 사건 사이트의 통상적인 게시물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게재 및 표시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및 표시 후에는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정한다.

#### 바.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판단

- 1)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반론보도의 내용은 물론 반론보도의 방법 등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반론보도는 피고가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점과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의 자본금 및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판결에 따른 신속하면서도 실효적인 반론보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법원이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 사.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반론보도문을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간접강제신청에 따라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간접강제를 명한다(민법 제764조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4.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제작·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3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언론중재법 제30조 또는 민법 제750조를 선택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1) 반론권 내지 진술권 침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어떠한 취재나 의견청취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제작·방송은 원고의 반론권 내지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는 조정 다큐멘터리로 인하여 원고와 조정합의까지 하였음에도 과거의 잘못을 재차 반복하였다.

2) 형사피해자로서의 잊혀질 권리 침해

D사건 당시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는 인권을 짓밟은 천인공노할 행위로서 피해의 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가해행위가 회자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원고의 진술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제작·방송은 원고의 형사피해자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음성권 침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터뷰 등을 전혀 요청하지 않고 원고의 음성인 것처럼 인식되는 장면을 다수 보도하였고, 청취자는 원고의 진술을 원고가 직접 한 것이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제작·방송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4) D사건 관련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피고는 광부들의 쟁의 등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한 가해행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도하였고, 피해자인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 그리고 피고는 청취자에게 원고가 피해가 중하지 않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D사건이라는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상과 오해까지 심어주었고, L는 원고를 체포·억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음에도 L가 원고를 도와주었다는 허위사실까지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제작·방송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반론권 내지 진술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제작·방송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취재 내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L를 비롯한 광부 또는 광부 부인의 욕성이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외에 다른 광부 또는 광부 부인에 대하여는 취재 내지 의견청취를 하고 이들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는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조사·발간한 보고서(예컨대, 진실·화해위원회 5차보고서), 학계에서 조사·발간한 자료(예컨대, V연구소 W 박사 기록) 등이 직접 인용되어 있고, 피고는 D사건에 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D사건에 관하여는 D 사건 판결은 물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진실규명 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학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존재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원고가 입은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다크 드라마의 제작·방송 과정에서 피고가 반드시 원고에 대한 취재 내지 의견청취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반론권 내지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반론권 내지 진술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형사피해자로서의 잊혀질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D사건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L 등에 의하여 폭행을 당한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 규칙에서 ‘Right to be forgotten’이라는 표제를 사용 하면서 정보주체가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이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결국은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다양한 권리를 아우르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격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잊혀질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로서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는 법리가 원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D사건 당시의 경험을 ‘악몽’으로 여기고 있고 이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사건을 주제로 하는 이 사건 다크드라마에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에게 잊고 싶은 과거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다크드라마는 언론의 자유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예술창작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다. D사건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으로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다크드라마에서, L 관련 보도를 제외하고는, 원고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왜곡된 인상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다크드라마가 원고에게 D사건에 관한 부정적인 기억과 경험을 환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다크드라마 제작·방송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나 원고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법성의 주요 근거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D사건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반론권 내지 진술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3) 따라서 원고의 형사피해자로서의 잊혀질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음성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1)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에는 인격의 형성·유지·표현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 인격권으로 거론되는 것으로는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이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 등 결정 참조). 대법원은 초상권에 관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음성권에도 원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음성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 재생, 복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와 자신의 음성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취재 내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의 음성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음성이 함부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다. 원고는 청구자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일부 내용이 원고의 음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음성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역에 의하여 당시 대화나 상황이 재현된다는 점이 방송 내용의 연결 방법이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일반 청구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1947. 4.생인 원고의 1980. 4.경 D사건 당시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원고의 대역을 한 성우의 목소리도 이에 부합하게 선택되었다고 보이고, 2020년 말경 방송된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접하는 일반 청구자로서는 약 40년 전에 있었던 D사건의 당시 대화나 상황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현되고 기술된다는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도 인정된다.
- 3) 따라서 원고의 음성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D사건 관련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1) 관련 규정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제2항).

## 2) L 관련 보도를 제외한 보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를 상당히 축소한 반면 원고와 대립되는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과 오해를 주는 보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가 D사건에서 받은 피해사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된 점, 예술창작의 성격을 겸유하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원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점,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원고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지 않았고 ‘오점’과 ‘반성의 대상’으로 평가하였던 점,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원고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왜곡된 인상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L 관련 보도를 제외한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3) L 관련 보도에 관하여

###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L는 D사건 당시 극심한 곤경에 빠진 원고를 도와주었다. L는 원고에 대한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몰렸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인정되고, D사건 판결, 진실·화해위원회의 2008. 4. 8.자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원회의 D사건 최종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

(2) 피고가, ‘L는 원고를 도와준 사람이다.’라는 허위사실을, ‘L가 본래는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몰렸다.’라는 허위사실을 각각 보도한 행위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표현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가미하였다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압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청취자에게 명백히 그릇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것으로서 피해자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내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명예훼손과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수궁하고 있고, 피고의 L 관련 보도는 원고가 입은 피해사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발간한 보고서가 직접 인용되어 있는 등 피고는 D사건에 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의 2008. 4. 8.자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D사건 최종조사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L가 원고에 대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제작·방송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였다는 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가 L 관련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L 관련 보도가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L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고 이에 관한 자료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L 관련 보도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4) 따라서 피고가 허위사실인 L 관련 보도로 위법하게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L 관련 보도의 내용, 표현 방식,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원고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특성, 목적 및 취지와 함께 L 관련 보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원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왜곡된 인상을 전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가지는 파급 효과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바.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7. 14. 선고 2023가합31655 판결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 보충 또는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사건 개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이 제정되어 심리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현재에 제출했다.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데, 피고 언론사는 원고가 에이즈 감염인이 고의로 에이즈를 전염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과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해당 설문 내용 중에 감염인이 고의로 에이즈를 전염시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로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해당 질문에 내포된 의도에 대해서 원고에게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인용하였다.

1심 판결 후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①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교 행위’와 ‘감염인이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HIV를 전파시켜 상해를 입힌 행위’를 완전히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위 질문지에서는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교 행위 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언급하였을 뿐인 점, ③ 비록 원고가 별도로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 설명을 생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위 설문조사 결과를 이 사건 논문에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조항이 합헌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하긴 하였으나, 그 인용 분량이 약 30페이지 넘는 논문 중 반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핵심 근거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원고에게 위 설문조사 질문지에 내포된 의도가 무엇인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판결문

사 건 2023가합31655 반론보도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14.

##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 가.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지 C언론 제12면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 하되,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 6] 목록 기재 반론보도 대상 지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각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하고,
  -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사회면 초기 화면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통상의 인터넷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 다.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영업일 후의 C언론(토요일자 C언론은 제외함)의 제12면 기사 게재 부분에 “D”이라는 제목을 C언론 2023. 2. 15. 제12면의 「E」이라는 제목과 같은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3]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위 낱짜 위 면의 위 제목 아래의 기사 본문과 같은 활자로 1회 게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2영업일 후까지 인터넷 C언론의 「F」이라는 제목으로 2023. 2. 14. 18:05에 입력한 기사에 바로 이어 “G”이라는 제목을 인터넷 C언론에 2023. 2. 14. 18:05에 입력된 「F」이라는 제목과 같은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4]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C언론에 위 일시에 위 제목 아래에 입력된 기사 본문과 같은 활자로 게재하여 피고가 인터넷 C언론의 위 기사를 삭제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1개월 동안은 위 반론보도문을 유지한다.
3. 피고가 위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H위원회(이하 ‘H’라고 한다)의 상임위원이다. 피고는 일간지 C언론을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감염인<sup>1)</sup>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위 각 조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19헌가30)이 제청되어 현재 심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 다. H는 2022. 11. 7. ‘이 사건 각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의결한 후 위 취지를 담은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라. 원고는 2023. 1. 25. I대학교 J연구원 「K」에 “L”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각 조항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고, 2023. 2. 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논문 투고 전인 2022. 12.경 M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은 질문지로 설문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논문 말미에 위 조사 결과를 기재 하였다.
- 바. 피고는 2023. 2. 15. C언론 일간지에 「E」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이, 2023. 2.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에이즈예방법 제2조 제1호). 이하 ‘감염인’이라 한다.

14. 인터넷 홈페이지에 「F」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7]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 [표] ‘이 사건 각 보도 내용’란과 같이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3], [별지 4] 각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순번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원고 주장 및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가 고의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이하 ‘HIV’라 한다)를 전염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 자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li> <li>○ 원고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는 성교를 전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60%는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로 HIV를 전염시키면(이론상 상해죄로) 처벌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므로 공포 조장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li> <li>○ 고의로 HIV를 감염시킨 자를 상해죄로 처벌한 실제 사례가 (공개된 판결문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어느 쪽으로도 위 행위를 전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질문에 ‘전혀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고 기재한 것을 비난할 수 없고, 이를 공포 조장 설문조사라고 비난할 수 없다.</li> <li>○ 설문조사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M기관에 의뢰를 하여 진행한 것이다.</li> </ul>
2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해 에이즈예방법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설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합헌으로 논문을 작성한 후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를 부수적으로 논문 말미에 반 페이지정도 언급했을 뿐이다.
3	원고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의견서에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원고는 “감염인이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이들이) 콘돔을 쓰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감염인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감염인이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에이즈 예방법의 처벌조항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콘돔을 쓰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감염된 것이 창피해서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원고가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의견서에 드러낸 것이 아니다. 원고는 감염인 1인당 1년에 약값이 천만 원 넘게 들지만 그 약값을 100%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 50747 판결 참조).

- 2)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 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반론보도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구체적 판단

### 1) 순번 1 부분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위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범위내에서 반론보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의 핵심 취지를 ‘에이즈예방법이 아니라도 감염인의 고의적인 HIV 전파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죄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도, 원고는 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감염인의 모든 전파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설문조사로서 HIV 감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 원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질문지에 따르면, 원고는 설문대상자를 상대로 ‘국회가 에이즈예방법 개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조항을 삭제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각 조항을 위헌무효로 선언할 경우,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교를 전혀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감염인의 고의적인 HIV 전파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설문대상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때, 위 설문조사 질문지를 본 일반인으로서의 ‘이 사건 각 조항이 삭제 또는 위헌무효로 선언이 될 경우

감염인의 모든 전파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교 행위'와 '감염인의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HIV를 전파시켜 상해를 입힌 행위'를 완전히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위 질문지에서는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교 행위 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언급하였을 뿐인 점, ③ 비록 원고가 별도로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 설명을 생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위 설문조사 결과를 이 사건 논문에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조항이 합헌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하긴 하였으나, 그 인용 분량이 약 30페이지 넘는 논문 중 반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핵심 근거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원고에게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설문조사 질문지에 내포된 의도가 무엇인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라) 한편 원고는 '공포 조장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론보도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피고의 '평가' 내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원고는 '설문조사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론보도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 및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질문지를 전달하면서 M기관에 이 사건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던 점, ②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설문조사 방식 자체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순번 2 부분

원고는 '설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논거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후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를 부수적으로 논문 말미에 언급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론보도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설문조사 결과를 이 사건 각 조항이 합헌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위 설문조사 시기와 이 사건 논문 작성 시기의 선후 관계를 따지거나, 이 사건 논문 중 위 설문조사 결과가 인용된 위치 및 그 비중을 언급하는 것은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순번 3 부분

원고는 ‘감염인이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에이즈예방법 처벌조항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여 HIV에 감염된 것이 창피해서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원고가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공적 자금으로 감염인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론보도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인용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이 사건 각 보도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한 것에 불과한 점, 기록상 ‘감염인이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보도 중 ‘원고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의견서에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라는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취지·표현 방식, 반론보도 내용과 원보도 내용과의 관련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합1018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44447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86294 판결

의혹 보도에서 나온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당 뉴스 자체 또는 후속 뉴스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충분히 실렸다면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이자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방송사이다. 피고는 원고가 모 도시 구시가지 일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총 5일에 걸쳐서 연속보도하였고, 원고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다.

1심 법원은 문화재청이 모 도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사실을 원고가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였거나 본인이 차명으로 모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인용하였다.

2심 법원은 해당 뉴스를 방송 날짜별로 분류하지 않고 사실적 주장에 따라 유형별로 특정하고 그에 대한 반론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핵심 쟁점이 되는 보도내용들 중 상당 부분을 언론사 의견의 표명으로 봐야 하고,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뤄져서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부분들도 보도 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부분이라면서 1심과 달리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3심 대법원 역시 반론보도청구권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2심의 논리가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 [판결 요지]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는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앞서 본 조항이 준용되는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뉴스의 성격, 그 기획의도와 구성 및 내용에다가, 이 사건 뉴스의 보도 시기 및 기간과 제1 뉴스부터 제4 뉴스까지 같은 날짜에 보도된 뉴스가 [AB①] 등 일련번호가 붙어 있고 각 기사가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후에 보도된 뉴스도 이전에 보도된 뉴스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인용, 요약하면서 그에 이어서 새로 취재한 사항을 보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고, 5번 째 뉴스에는 [AB]라는 제목과 일련번호가 붙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는 A 의원 소식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제4-3 뉴스에 관한 후속 취재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뉴스 전체가 일련의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단기간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는 사정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에서 어떠한 사실적 주장이 인정되는지 유형별로 특정하고 그에 대한 반론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 1심 판결문

사 건 2019가합101855 반론보도 청구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OOOOO  
 변 론 종 결 2019. 7. 18.  
 판 결 선 고 2019. 9. 19.

## 주 문

1. 피고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방송되는 ‘OOO O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별지 6 반론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방송 자막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부분에 별지 6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와 진행속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6 반론보도문 제목 및 본문을 통상 진행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나. 가.항 기재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이 판결 확정 후 1일 이내에 5회에 걸쳐 별지 7 내지 11 기재 반론보도를 구하고, 간접강제금으로 일 10,00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는 2019. 1. 15.부터 2019. 1. 22.까지 ‘OOO O 뉴스’ 프로그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원고가 □□ 구시가지 일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 내용의 별지 1 내지 5 기재 뉴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뉴스’라 하고, 각 뉴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뉴스’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순번(별지)	보도일자	제목
1-1	2019. 1. 15.	문화재청이 홍보까지…A 조카의 수상한 건물
1-2	2019. 1. 15.	조카.남편.보좌관도…문화재 거리 곳곳 ‘의원님 그림자’
1-3	2019. 1. 15.	매입 후 ‘4배 된 건물값’…리모델링은 나랏돈으로
2-1	2019. 1. 16.	A 동생 “건물 매입, 우리 뜻 아냐”…차명재산 의혹
2-2	2019. 1. 16.	‘박물관 부지’ 먼 곳에 또 있다…건물 1채 추가 확인
2-3	2019. 1. 16.	“문화재 지정되면 건물값 안 올라”…A 주장 살펴보니
3-1	2019. 1. 17.	구역 바꿨는데, 미리 산 ‘A 관련’ 건물 모두 포함
3-2	2019. 1. 17.	A, 의원으로서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지켰나?
4-1	2019. 1. 18.	나를 만에 9곳에서 22곳…□□의 ‘A 거리’인가
4-2	2019. 1. 18.	안 판다는데 “팔아야 개발된다”…쫓아다니며 ‘집요한 설득’
4-3	2019. 1. 18.	A, 지인 딸 채용 청탁 의혹…어느 간부의 증언
4-4	2019. 1. 18.	OOO 엇갈린 매입 이유, 공통점은 ‘A 지인’
5	2019. 1. 22.	“A가 찾아와 인사 추천”…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뉴스를 통하여 원고가 □□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변 인물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 전매차익 및 문화재 보조금 등을 얻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7 내지 1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를 통해 공직자인 원고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원고가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등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의견 표명 내지 의혹 제기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에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포함하여 보도하였으며, 이 사건 각 뉴스에 적시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원고가 반론을 구하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 3.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참조).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 28803 판결 등 참조).

#### 4. 구체적 판단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뉴스별로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해당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및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어 피고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가. 원고가 □□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 업무에 영향을 미쳤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케 했다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1-1 뉴스를 통해 “국내 문화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원고의 가족과 지인들이 □□ 구시가지 일대의 건물 여러 채를 집중 매입했다”, “원고가 문화재 보호 운동만 한 게 아니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 홍보 설명회에 방문 예정에 없던 ○○○이 추가됐다”,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은 평소 □□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던 원고가 수시로 홍보를 하던 곳”, “두 건물 모두 문화재 거리 지정 1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문화재 거리에 포함됐다”고 보도하고, 후속 뉴스를 통해 원고 관련자들이 문화재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건물 11채가 두 차례나 좁히는 과정을 거쳐 설정된 사업구역 안에 모두 들어갔다고 보도하고, 문화재청 관계자의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도 이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수는 없다”는 발언을 보도하였다(이 사건 3-1 뉴스).

이 부분 보도에 사용된 어휘, 문구, 일련 보도의 흐름 및 문맥, 전체적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곳이 문화재로 지정되게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 나. 원고가 조카의 명의를 빌려 ○○○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2-1 뉴스에서 ○○○ 및 그 앞 건물의 소유자 중 한 명은 원고의 조카인데, 그는 피고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건물을 사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하였고, 해당 인물은 건물 매입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그 부친인 원고의 동생은 “○○○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은 누구에게 가는지 모르고, 아내가 원고 측에 아들의 인감도장을 넘겨줬다”고 말했다는 내용 및 건물 취득자금 및 증여세를 원고가 입금해 주었다는 내용을, 이 사건 4-4 뉴스에서 ○○○ 공동소유자들의 부모들이 ○○○을 매입한 이유에 대하여 각기 다른 진술을 하였고, 그들은 함께 건물을 사들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 부분 보도에 사용된 어휘, 문구,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해당 부분 보도에 나열한 사실들을 통해 ‘원고가 조카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비용으로 □□○○○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명예를 저하 시킬 만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 다. 원고가 □□ 문화재 거리 예산 투입에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1 뉴스에서 원고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문화재 거리 관련 500억 원 예산 투입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뉴스는 문화재 거리 내 건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 홍보 설명회 관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1 뉴스에서 문화재청이 □□ 문화재 거리 홍보 설명회를 한 사실 및 ○○○을 홍보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원고가 알았고, ○○○ 홍보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뉴스는 2018년 11월 말 문화재청의 언론사 대상 홍보 설명회 내용 및 그 대상에 ○○○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이 문화재 건물이라는 부분

원고는 ○○○이 문화재 건물이 아니고 60~80년대에 증·개축된 일반 콘크리트 건물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1-1 뉴스를 통해 ○○○이 문화재 건물로서 국가로부터 막대한 수리비를 받는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뉴스는 ○○○이 일제 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곳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 등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2 뉴스에서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 및 그가 운영하는 △△△△△ 문화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원고 보좌관 및 그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 문화재 거리의 건물들을 매수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뉴스는 이 사건 재단, 회사 및 원고 보좌관의 배우자 등 원고 관련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했을 뿐, 뉴스의 전체적 맥락 등에 비추어 보아도 해당 뉴스가 원고가 주장하는 차명 부동산 취득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사. 원고 및 지인들의 부동산 매입 목적 관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2 뉴스를 통해 원고나 원고의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고, 전매차익 취득 등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뉴스는 원고의 조카, 이 사건 재단 및 회사, 원고의 보좌관 가족 등이 □□ 문화재 거리 안에 있는 건물들을 집중해서 매입했으며, 매입 가격이 3.3㎡당 100만원에서 400만 원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아. 원고가 부동산 투기를 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1-3 뉴스가 원고 관계자들이 취득한 건물 가격이 □□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 후 4배 정도 상승하여 원고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뉴스는 □□ 구도심 주민들이 문화재거리 지정 이후 원고 관계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 건물값이 4배 정도 상승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해당 부동산이 원고가 차명으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시 세 상승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자. 원고 관련 건물 등록문화재 지정 관련 부분

원고는 원고나 원고 조카들, 이 사건 재단 및 회사가 □□ 문화재거리 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1-3 뉴스가 이와 달리 원고 관계자가 등록문화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특히 ○○○ 건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없이 개인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뉴스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 문화재 거리 건물 가운데 일부가 별도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 노후 수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고, 세금도 50% 감면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 또는 원고 관계자들 소유의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혜택을 얻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차. 이 사건 재단의 건물 매입 경위 관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이 서울에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로 이전할 목적으로 전매 의사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1-3 뉴스에 이 사건 재단이 단기간에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익을 실현할 의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뉴스는 이 사건 재단이 □□ 시내 건물 세 채를 매입하였고, 문화재 거리 지정 이후 해당 지역 건물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카. 이 사건 재단의 부동산 평균 매입가 관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이 2018년 3월 매입한 부동산의 평균 거래가액이 3.3㎡당 287만 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1-3 뉴스에 평균 거래가액이 3.3㎡당 475만 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재단의 부동산 평균 매입가는 원고의 명예와 직접 관련 없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타. 원고 동생과의 인터뷰 보도 부분

원고는 조카의 ○○○ 매입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남동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이 사건 2-1 뉴스를 통해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아닌 취재 방법에 대한 주장일 뿐 아니라 위 나.항 관련 반론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반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파. 피고의 부실 취재 관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2 뉴스를 통해 이 사건 재단 소유 건물 한 채를 추가로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해당 건물은 피고가 기존에 보도한 재단 소유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로서, 해당 보도는 피고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열람하지 않고 부실 취재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 또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아닌 피고의 취재 방법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하. 등록문화재 지원금 관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3 뉴스에 □□ 문화재거리의 등록문화재 지정 건물들 보수에 관하여 책정된 지원금을 원고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뉴스는 원고 보좌관 남편 명의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확인되었고, 위 건물을 포함한 등록문화재 지정 건물 보수에 24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도 하였을 뿐, 원고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관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3 뉴스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상 원고 관련자들이 매입한 건물들 주변 건물이 최근 3.3㎡당 750만 원에 거래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위치나 현황이 크게 다른 건물의 거래내역을 가져와 마치 원고가 막대한 가치 상승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왜곡 보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적시 사실이 원고의 명예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너. 원고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부분

원고는 자신 및 관계자들이 박물관 운영 등 영리·비영리사업을 위해 □□ 구도심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변에 매입을 권유하였을 뿐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빼돌린 사실 및 그에 대한 계획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3-2 뉴스에서 원고의 행위가 □□ 주민들이 아닌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이익을 주려 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억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보도는 그 자체로 원고 등의 부동산 취득 행위가 공직자인 원고에게 요구되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내지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더. 원고 관계자들의 부동산 내역 관련 부분

원고는 원고 관계자들이 □□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보유하는 대지가 3~400평에 불과하여 전체 면적의 1% 미만이고, 그 대부분이 ○○○ 및 박물관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사실상 일단지로 모여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4-1 뉴스에서 대지 면적 등을 숨긴 채 개수만을 강조하여 원고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뉴스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원고 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22곳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러. 원고의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이 사건 4-2 뉴스는 부동산 관계자들이 □□ 주민들에게 수시로 찾아와 부동산을 원고 측에 매각하라고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정부에 요청하여 문화재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 형식을 취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원고의 □□ 부동산 보존에 대한 기존 발언 및 태도와 모순되는 행동으로, 공직자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 며. 이 사건 재단 명의 부동산 내역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이 □□에서 매입한 부동산이 14곳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4-2 뉴스에서 이를 16곳으로 부풀려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재단의 매입 부동산 수가 14곳인지 16곳인지 여부는 원고의 명예와 직접 관련 없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관련 부분

이 사건 4-3 뉴스는 원고가 2018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 인물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는 원고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 사건 5 뉴스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내지 가치판단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서. 소결론

이 사건 각 뉴스 중 위 가, 나, 러, 버.항 기재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당 부분에 관하여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에 원고의 입장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원인 원고의 지위상 반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및 분량, 총 보도 중 원고의 반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정정을 구하는 대상 언론보도의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별지 6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도록 하고, 나머지 게재 방법 및 간접강제 등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19나2044447 반론보도 청구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합10185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일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 1)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방송되는 'C'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는 "A 국회의원 'T' 방송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6-1]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의 이행기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 2)항부터 5)항까지 청구의 이행기도 변경되었다),
- 2) 1)항을 이행한 후 최초로 방송하는 같은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는 "A 국회의원 'T' 방송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6-2]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3) 2)항을 이행한 후 최초로 방송하는 같은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는 “A 국회의원 ‘T’ 방송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6-3]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4) 3)항을 이행한 후 최초로 방송하는 같은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는 “A 국회의원 ‘T’ 방송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6-4]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5) 4)항을 이행한 후 최초로 방송하는 같은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는 “A 국회의원 ‘T’ 방송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6-5]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 나. 만약 피고가 가항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다만 제1의 가. 1)항의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 구함)와 같이 변경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가 2019. 1. 15.부터 2019. 1. 22.까지 C 프로그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회 D위(이하 ‘D위’라고 한다) E인 원고가 조카 등 지인의 명의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F 구시가지 내 V 등

다수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여 투기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 기재 뉴스(이하 아래 표의 순번으로 개별 뉴스를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뉴스’라고 한다)를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별지 번호)	보도일자	제목
1	2019. 1. 15.	오늘의 주요뉴스
1-①		[AB①] G
1-②		[AB②] H
1-③		[AB③] I
1-④		[AB④] AG
2	2019. 1. 16.	오늘의 주요뉴스
2-①		[AB①] J
2-②		[AB②] K
2-③		[AB③] L
3-①	2019. 1. 17.	[AB③] M
3-②		[AB⑥] N
4	2019. 1. 18.	오늘의 주요뉴스
4-①		[AB①] O
4-②		[AB②] P
4-③		[AB④] Q
4-④		[AB⑤] R
5	2019. 1. 22.	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뉴스에서 [별지 7]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그 보도 내용에 관하여 [별지 6-1]부터 [별지 6-5]까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아울러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 나. 피고

- 1) 원고가 2020. 3.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중 반론보도의무의 이행기를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1일 이내”에서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1일 이내”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 선고된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변경할 수 없고,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변경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이나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2)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뉴스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중 일부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이며, 설령 그러한 사실적 주장이 보도되었더라도, 본질적인 핵심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거나 이미 그에 대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또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반론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26조 제6항 본문),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8조 제1항). 그리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불복, 항소하였고,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절차 중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2조).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앞서 본 언론중재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판단의 전제 : 이 사건 뉴스의 법적 이해

- 1) 이 사건 뉴스 중 제1 내지 제4 뉴스는 피고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각종 사회문제를 샅샅이 파헤쳐 내보내는 비정기적 탐사보도인 “AB”라는 명칭의 뉴스 코너에 해당하고 제5 뉴스는 그 후속 보도에 해당한다. 그 기획 의도는 전체적으로 공직자인 원고의 F 구시가지 부동산 매입 및 U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울러 원고의 그러한 행위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의 규정 또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알리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제1 내지 제4 뉴스는 도입 부분인 “오늘의 주요뉴스”에서 주요 사항을 보도한 다음 본 뉴스에서 주요 사항에 관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일괄 보도하는 구성을 취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9. 1. 15. 제1 뉴스 보도 당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인 D위 E인 원고가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이 T로 지정, 홍보하는 F 구시가지 내 V 등 건물 여러 채를 집중 매입한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2019. 1. 18. 제4 뉴스 보도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4일 동안 원고 동생 등의 제보, 원고가 매입한 부동산의 추가 확인 및 원고의 U박물관(이하 ‘U박물관’이라 한다) 직원 채용 청탁 등에 관한 보도 등 후속 취재와 이에 대한 원고의 반박 등의 사항을 집중 보도하였으며, 2019. 1. 22. 제5 뉴스로서 제4-③ 뉴스로 보도된 사항에 관한 후속 취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 2) 이와 같은 이 사건 뉴스의 성격, 그 기획의도와 구성 및 내용에다가, 이 사건 뉴스의 보도 시기 및 기간과 제1 뉴스부터 제4 뉴스까지 같은 날짜에 보도된 뉴스가 [AB①] 등 일련 번호가 붙어 있고 각 기사가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후에 보도된 뉴스도 이전에 보도된 뉴스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인용, 요약하면서 그에 이어서 새로 취재한 사항을 보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고, 제5 뉴스에는 [AB]라는 제목과 일련번호가 붙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는 A 의원 소식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제4-3 뉴스에 관한 후속 취재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뉴스 전체가 일련의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단기간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는 사정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에서 어떠한 사실적 주장이 인정되는지 유형별로 특정하고 그에 대한 반론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 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

- 1) 원고가 이 사건 뉴스에서 보도된 사실적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범위는 원고의 관련 주장과 반론보도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특정할 수 있다.

가) 제1 주장사실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D위 E의 지위를 이용하여 F 구시가지 내 V 등이 포함된 T에 관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인 T 지정과 예산 투입 등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 제2 주장사실

원고가 투기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재지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소유자인 현지 주민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조카, 보좌관 또는 그 가족과 남편이 대표인 X재단 등 주변인 명의로, T 내 V 등 필지 기준 부동산 22곳(이하 ‘V 등’이라 한다)을 평당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대금으로 집중적으로 다수 매입하였다.

이후 원고가, V 등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토지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리모델링 등 수리비용 전액 보조 등의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가가 상승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익충돌 행위에 해당한다.

다) 제3 주장사실

원고가 2018. 6. D위 E가 된 직후 지인의 딸을 U박물관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행위를 하였다.

2) 그 밖의 주장사실

원고가 이 사건 뉴스에서 보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 중 1)항에서 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뒤에서 보는 사실적 주장의 보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뉴스에서 보도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가령 문화재청의 홍보 설명회에 V이 포함된 사실을 원고가 사전에 알았다거나 그 홍보를 요청하였다거나, 원고가 V 건물을 원형이 아닌 짝퉁으로 복원하였다거나, 원고가 매입 부동산을 감추었다거나 또는 V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를 없애려고 샀다는 부분 등), 수사적 과장 또는 피고의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가령 제4-① 뉴스 중 ‘A 거리’가 되었다는 부분 등) 또는 뒤에서 이 사건 뉴스에서 보도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다. 인정되는 사실적 주장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뉴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적 주장이 보도되었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이로써 원고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1) 제1 주장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가 제1 뉴스에서, “국내 문화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D위 E인 A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F 구시가지 일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여러 채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시작한 뒤, 제1-① 뉴스에서, “G”이라는 제목하에, “(A 의원이) 문화재 보호 운동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T로 지정된 구역안에 위치한 V는 … 평소 W를 자처하던 A 의원이 수시로 홍보를 하던 곳입니다, … 두 건물 모두 T 지정 1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T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D위 소속이었던 A 의원,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제3-① 뉴스에서, “M”이라는 제목하에, “그리 넓지 않은 1.5km의 T 안에 어떻게 A 의원 관련 건물이 이렇게 10채 넘게 있을 수 있느냐 의문이 문화재청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가족, 보좌관 등 A 의원 관련 건물이 모두 14채, 이중에 11채는 T 지정 이전에 사들인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1.5km 길이 T 지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 문화재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매입한 3채는 물론, 심지어 지정 이전에 매입했던 11채까지도 두 차례나 면적을 좁히는 과정을 거친 사업 구역 안에 모두 들어간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도 이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또 제4-② 뉴스에서, “국회의원이 힘을 써서 T가 생길 거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F지역 주민(원고 남편 재단에 건물 판매) :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좋은 T를 만든다고 하니까 …’]”라고 보도하였다.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이와 같은 보도 내용에다가 이 사건 뉴스 보도 직후 원고가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V 등이 포함된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갑 제51호증)까지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뉴스에서 적어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D위 E의 지위를 이용하여 F 구시가지 내 V 등이 포함된 T에 관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인 T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이하 ‘제1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제1-① 뉴스에서, “건물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앞으로 예산 500억원이 투입됩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예산 투입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른 결과로 언급했을 뿐인 점 등 비추어 그것만으로 원고가 T에 관한 예산 투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까지 보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

## 2) 제2 주장사실에 관하여

가) 앞서 본 기준에 따라 1)의 가)항에서 본 보도 내용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뉴스의 보도 내용과 이 사건 뉴스 보도 직후 원고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 제3자인 조카 등 주변인으로 하여금 V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조카 등 주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실(갑 제51호증, 을 제31호증)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뉴스를 통하여, 원고가 투기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재지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소유자인 현지 주민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조카, 보좌관 또는 그 가족과 남편이 대표인 X재단 등 주변인 명의로 T 내 V 등 필지 기준 부동산 22곳(이하 'V 등'이라 한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이후 그중 원고 보좌관 남편 명의로 매입한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토지세 등 각종 세금감면과 리모델링 등 수리비용 전액 보조 등의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변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적 주장(이하 두 사실적 주장을 통틀어 '제2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적어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보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제1-② 뉴스 : “H”라는 제목하에, “거래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주민은 A 의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산 게 있다고 귀뜸합니다, … 건물을 산 법인, A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X재단입니다, … A 의원 보좌관도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샀습니다, … A 의원 본인 이름으로는 하나도 산 게 없다지만, 조카와 보좌관 가족, 남편의 X재단 등이 T 안에 있는 건물을 집중 사들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였으며, 대부분 F 구도심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순차적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1-③ 뉴스 : “I”라는 제목과 “AH”이라는 부제로,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 시기별로 보면 지난 대선 직전 … 아홉 채를 모두 사들인 건데, “A 의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사들인 … 아홉 채 가운데 한 채 빼고는 주변이 T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래됐습니다, 그 한 채도 문화재 지정된 직후에 매입됐습니다”, “거리에 있는 건물 가운데 일부는 별도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데 이런 건물은 나랏돈으로 내부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등록문화재는) 건물이 노후하거나 낡았을 때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용 전액을 국가 혹은 지자체가 보조해줍니다, 상속세, 토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감면됩니다,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 이후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말합니다, [AI/AJ]단체 공동대표 :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라고 보도한 부분
- 제2 뉴스 : “건물 명의자의 부친, 즉 A 의원의 남동생은 C와의 인터뷰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해당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수익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명 재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과 아울러 배경화면에 “‘명의 빌려준 것일 뿐’..차명재산 의혹”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부분

- 제2-① 뉴스 : “차명 거래, 차명 구매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 조카 AK 씨는 명의를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 자신이 사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 (A 의원의 남동생은) 아내가 A 의원 측에 아들의 인감도장을 넘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내가 A 의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A 의원의 남동생은 F에 가 본 적도 없어 자신들이 건물가격을 알 수 없었던 만큼 A 의원이 건물 계약에 직접 관여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2-② 뉴스 : “V과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2층짜리 흰색 건물 … 새 주인은 A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X재단입니다, A 의원은 … 남편 명의의 X재단은 사실상 자신이 만든 재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A 의원은 … 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사들였고 …, 하지만 이 건물은 박물관 용도로 샀다는 X재단 소유의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박물관 부지로 쓰기에 턱없이 좁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2-③ 뉴스 : “L”라는 제목과 “AL”이라는 부제로, “기존의 지정 문화재와는 달리 사고팔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나옵니다”, “T 말고도 건물 열 다섯 채는 별도로 문화재로 또 지정됐는데 A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산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A 의원 남편 명의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을 포함해 … 보수하는 데 1차 지원금만 24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A 의원 관련 건물의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주변 건물이 최근 3.3㎡당 75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옵니다, … F 구도심 개발이 확정되면서 시세가 올랐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3-② 뉴스 : “굳이 증여까지 하면서 재단 이사 딸, 보좌관 딸, 남동생 아들 이름으로까지 재생사업 구역 전반에 걸쳐 산 행동”이라고 보도한 부분
- 제4 뉴스 : “F 구도심 T 안의 A 의원 관련 부동산이 … 22곳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4-① 뉴스 :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익 충돌 금지’ 원칙 기준으로 보도”라는 부제로, “1.5km 길이의 거리에 A 의원의 가족과 측근이 사들인 게 22곳이라는 겁니다, … [F 구도심 주민 : (그분들이 산 건물들도 다 메인 거리에 있어요?) 예, 이 거리에 있어요, 구도심 재개발 구역 안에 든거야]”, “보도 첫날 발견된 9곳에서 중복된 곳을 제외하면 필지를 기준으로 모두 2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 날이 갈수록 부동산 숫자가 늘어나면서 F 구도심 작은 마을은 점점 ‘A 거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4-② 뉴스 : “P”이라는 제목과 제4-① 뉴스와 같은 부제로, “… 팔 생각이 없는 주민에게도 팔아야 개발이 된다면서 중개업자가 집요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단이 건물을 사들일 때 부동산 관계자들이 집요하게 매달렸다고”라고 보도한 부분  
 ○ 제4-④ 뉴스: “R”이라는 제목과 제4-① 뉴스와 같은 부제로, “V은 A 의원 조카를 비롯한 20대 청년 세 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저희 취재팀이 A 의원과 뜻을 모았던 청년들의 부모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V을 산 이유에 대해서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 함께 건물을 사들인 청년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 젊은이들의 일을 위해 샀다, 부수려 샀다, 건물 매입 동기는 이렇게 엇갈렸다가”, “A 의원이 2017년 F시장을 만나 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 지원을 주문하는 등 F 숙박 사업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나) 그러나 피고가 제3-② 뉴스에서, “N”라는 제목하에 원고의 행위가 이익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이를 제4-① 뉴스의 부제로도 쓰고 있으나, 이는 앞서 사실적 주장으로 인정한 원고의 행위에 관한 피고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이다.

### 3) 제3 주장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가 제4-③ 뉴스와 제5 뉴스를 통하여 원고가 2018. 6. D위 E가 된 직후 지인의 딸을 U박물관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이하 ‘제3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을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Q”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제4-③ 뉴스와 “S”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제5 뉴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나타난 원고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피고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이다.

## 라. 반론의 불허 : 피고의 항변 인용

- 1)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는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앞서 본 조항이 준용되는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이 사건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었다고 인정되는 제1, 제2, 제3 사실적 주장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뉴스 자체에서, 그리고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지만) 제1-③ 뉴스 직후 보도된 제1-④ 뉴스에서뿐만 아니라, 2019. 1. 20. “AM”이라는 제목의 뉴스(을 제26호증의 8, 이하 ‘제6-1 뉴스’라고 한다) 및 2019. 1. 23. “AN”이라는 제목의 뉴스(을 제26호증의 9, 이하 ‘제6-2 뉴스’라고 한다)에서 보도한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비교·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에 관하여 이미 충분히 반론보도가 이루어져서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제1, 제2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 제1-① 뉴스 : “홍보를 할 때 자신이 주변 인물들에게 V 건물을 인수하도록 설득했다고도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1-④ 뉴스 : “AG”이라는 제목하에, “A 의원은 주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F에 건물을 산 것은 아니라고 저희 취재팀에 밝혔습니다, … A 의원은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국회 D위 E : 그건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물어서도 안 되고. E 지위를 이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도우러 F시에 갔다가 F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껴 주변인들에게 집을 사게 했다는 게 A 의원의 설명입니다, 돈이 없는 조카에게는 1억원의 개인 돈을 쥐가며 F에 집을 사게 했고, 남편에게도 X재단 명의로 건물을 사도록 설득했다는 겁니다, X재단 명의 건물은 나중에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물 말고도 자신의 홍보로 지인들이 산 건물이 더 있다면서,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국회 D위 E : 한두 명 정도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늙으면 F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해서 (건물을) 산 사람은 있습니다 …], [A/국회 D위 E : … 재단 명의로 샀어요, 이거는 최근이에요, 집값 다 오른 다음에], … A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면서도 … [A/국회 D위 E : 문화재청장 만나서도 ‘근대 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F의 홍보대사같이 일을 했죠]라고 보도한 부분
- 제2 뉴스 : “A 의원은 가족과 지인들이 F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해 왔으며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2-① 뉴스 : “A 의원은 돈을 주면서 건물을 사라고 했다는데, … A 의원은 현금 증여 형식으로 돈을 건네며 증여세도 함께 보냈다고 남동생이 전했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2-② 뉴스 : “A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와 해명 자료를 통해 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사들였고 추가로 사들일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A의원/… 인터뷰 : 제가 박물관을 하려고 재단에서 여기 부지를 계속 조그마한 것들을, 옆에 있는 것들을

제가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라고 보도한 부분

○ 제2-③ 뉴스: “A 의원은 문화재로 선정되면 그 지역의 건물값도 오르지 않고 개발도 되지 않아서 지역에서 오히려 꺼려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 A 의원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A 의원: 제가 관련된 데는 그 집으로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 A 의원은 실제로 되팔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주장”이라고 보도한 부분

○ 제3-② 뉴스: “A 의원은 지금 안 팔았으니 차익이 없다, 순수한 의도였다 하는데”라고 보도한 부분

○ 제4-① 뉴스: “[A 의원: (이 거리에 모텔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가서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관광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스톱’이 되지않을까 생각했고 …]”라고 보도한 부분

○ 제4-② 뉴스: “A 의원은 T 일대 주민에게 건물을 팔지 말라고 했다고 언론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A 의원: 국회 D위 E: 저는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팔지 말고 절대 팔지 말고 …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리가 살아나면 집값이 자연히 오를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 도시 재생의 이익을 현지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A 의원 설명”이라고 보도한 부분

○ 제4-④ 뉴스: “A 의원은 … 남자 조카가 …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자기 꿈펼칠 여건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에 3명이 공동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6-1 뉴스: “A 의원은 도시 재생, 문화 재생을 위해 주민과 지인을 설득했을 뿐이라며, … [A/의원: C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그 기사 …], 또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A/의원: 제가 그 기사들에 언급한 것 같은 일들이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6-2 뉴스: “A 의원은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적이 없다며 선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 A 의원은 F 부동산 매입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기부를 위해서라며 선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A 의원: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A 의원: (… 국회에서 제3자의 이익이라든가, 특히 V 관련 발언을 하시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지역 특유의 역사를 갖고있는 숙소가 됐으면 좋겠다든 생각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제게 이익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나) 제3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 제4-③ 뉴스: “이에 대해 A 의원은 AA부 부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문화재 복원상태를 점검하러 U박물관을 방문해 AO 씨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자는 인사교류 차원에서 AO 씨를 제안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제6-2 뉴스 : “U박물관 인사청탁 의혹에도 없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의원 : (박물관에) 이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제안했고 곤란하다고 해서 없어진 일입니다]”라고 보도한 부분

- 3)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 가령 제1, 제2 사실적 주장 관련 원고가 주변인의 명의로 또는 주변인으로 하여금 매입한 부동산의 수와 그 면적이라든지, 구체적 매입 과정(즉 중개사가 소유자 겸 매도인인 주민을 집요하게 설득하였다는 부분 등)이나 매입대금의 액수와 시세차익의 규모 등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3 사실적 주장 관련 원고가 당시 D위 E인지 여부(사실은 당시 AP위원회 소속 의원이었고 그 위원회가 2018. 7. AQ위원회와 D위로 분리됨) 등은 이 사건 뉴스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뉴스에서 보도된 제1, 제2, 제3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마. 소결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일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 3심 판결문

사 건	2020다286294 반론보도청구
원 고, 상 고 인	A
피 고, 피 상 고 인	주식회사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4444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뉴스의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뉴스의 성격, 그 기획의도와 구성 및 내용, 이 사건 뉴스가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단기간 집중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에서 어떠한 사실적 주장이 인정되는지 유형별로 특정하고 그에 대한 반론의 허용 여부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매체 또는 뉴스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뉴스의 성격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원심은, 이 사건 뉴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가 반론 보도를 구하는 13개의 뉴스에 대해 각각 판단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이 유형별로 제1, 제2, 제3의 주장사실로 특정한 다음 반론보도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사실적 주장' 또는 이와 명예훼손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반론보도청구권의 거부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원심은, 제1, 제2, 제3 사실적 주장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 이미 충분히 반론보도가 이루어져서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 되었고,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이 사건 뉴스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아니하여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뉴스에서 보도된 제1, 제2, 제3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8.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7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2011925 판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시사월간지이다. 피고는 원고가 속한 경호팀에서 과잉경호를 해서 전 대통령의 경호 코드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고 소속 경호팀이 교체를 당하였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자 청와대 근처 식당 등에서 해당 경호팀이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으며, 한 방송국에 장기간 국정 농단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좌천된 해당 경호팀의 일원일 수 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원고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쳐 법원에 정정보도,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성명 등이 보도되지 않았더라도 보도 중 옆얼굴이 나온 사진 및 원고가 해당 경호팀을 이끈 점 등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서 원고가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교체된 경호팀이 박장대소했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사실적 주장은 모두 허위로 보인다면서 정정보도 및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명하였다.

2심 법원 역시 대통령을 경호하다 좌천당하였던 경호팀의 경호관들이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표현은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 내기 비판적인 의견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나머지 주요 보도 내용들은 1심과 동일하게 허위보도로 보고 원심과 동일한 내용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2심 판결 선고 후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아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은 원고 내지 원고가 L으로 있었던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에 관한 사실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

## 1심 판결문

사	건	2021가합746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15.

## 주 문

### 1. 피고는,

-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C' 제100면 이내에 별지1 기재 정정 보도문을 제목 및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하고,
- 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별지1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별지2 제2항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게재 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본문 중 'D 대통령 당선인이 2012년 12월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며 청와대의 대통령급 경호를 받고 있다'는 부연설명이 붙은 사진을 삭제하며,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E(인터넷주소 2 생략)와 F(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전송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C 잡지 100면 이내에 별지3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은 별지2 제1항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과 동일하게 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G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별지3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은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과 동일하게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위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하며,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박스처리, 음영처리, 볼드처리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사와 구분되도록 하여 별지3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은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과 동일하게 하고, 위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한 위 보도문이 함께 게재되도록 하며,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본문 중 원고의 초상이 노출된 사진을 삭제하고, 피고가 계약에 의해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를 공급한 E, F 등 각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게 위 보도문 게재 사실 및 별지2 기재 보도문을 전송하라. 피고는 위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각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A경부터 AB까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경호실)에서 경호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잡지 발행 및 판매업, 인터넷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월간지인 'C'을 발행하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1) 피고는 2020. 12. 29. C 2021년 1월호 및 'G'을 통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별지4 및 별지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고, 'G'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보관하여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① 부분'과 같이 해당 항목의 번호로 특정한다).

- ① 그런데 D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팀은 오래가지 못했다. D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팀을 교체한 것이다. (중략)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과장된 경호, 즉 과잉경호였다. '오버'하는 것을 질색하는 D 전 대통령과 경호 코드가 잘 안 맞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안' 문제였는데,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가 실질적 교체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중략) 정보지에 대통령의 헬기 탑승법이 나왔다는 사실은 곧장 D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보안을 중요시한 D 전 대통령은 경호팀 교체를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이 팀의 일원 일부는 좌천되고, 이 팀과 경쟁 관계에 있던 팀이 D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게 됐다.
- ② 국회는 12월 9일 D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D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청와대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큰 충격에 우울증을 앓거나, 원인 모를 다리 마비가 온 직원도 있었다. 그런데 D 전 대통령을 경호하다 좌천당한 경호팀에 있었던 몇몇 경호관은 달랐다. 당시 그들은 청와대 근처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고 한다.
- ③ 자신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D 정부 때 경호처에서 경호실로 격상) 경호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2014년 말부터 'I 사태'가 터질 때까지 1년 6개월 가량 한 방송사 보도국에 'I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이 제보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의 정체다. (중략) 이 때문에 방송사에 J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이는 실제 자신이 밝힌 대로 경호관이거나 경호실에서 흘린 정보를 방송사에 전달한, 그러니까 경호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사실상 경호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다. (중략) 경호실 내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면서까지 D 전 대통령을 공격할 만한 그룹은 자신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좌천당했다고 느끼는 전(前) D

경호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 ④ 게다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경호관 중 한 명은 K 정부가 들어선 후 경호처 내 구성된 일종의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며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관들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좌천시키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 정부에서도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사구팽(兔死狗烹)당한 셈이다.

- 2)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는 원고의 초상이 노출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진 아래에는 ‘D 대통령 당선인이 2012년 12월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며 청와대의 대통령급 경호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고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① 부분 관련

이 부분 기사는 D 당선인 경호팀이 과잉경호 및 보안부실 문제로 교체되었다는 것이나, D 당선인 수행 경호팀은 L인 원고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O일자 보직변경으로 대통령 경호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지, 과잉경호나 보안부실 문제로 교체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 나. ② 부분 관련

원고를 비롯한 D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들은 D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청와대 근처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박장대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 다. ③ 부분 관련

이 부분 기사는 D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2014년 말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 방송국에 ‘I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는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 라. ④ 부분 관련

원고는 K 정부에서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거나 다른 경호관들의 좌천 작업을 주도한 사실이 없고, K 정부에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정년 도래로 퇴임한 것이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 3.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해자 특정 내지 기사 내용과의 개별적인 연관성 인정 여부

#####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는 청와대 경호처라는 기관에 대한 내용일 뿐이고, 기사 내용에도 위 기사가 원고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 (1) 이 사건 기사는 도입부에서 N 정부가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당선인 신분이던 D 전 대통령에게 경호팀을 파견했는데 해당 경호팀이 과잉경호 및 보안부실 문제로 교체되었고, 교체된 경호팀이 D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청와대 인근 카페에서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적시하였으며, 이어서 사실상 경호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 한 방송사 보도국에 I 관련 내용을 거의 매일 제보하였고, 이런 의심을 받는 경호관 중 한 명이 K 정부가 들어선 후 경호처 내에 구성된 일종의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며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관들에 대한 좌천 작업을 주도하다가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보도한 다음, 이를 ‘10.26사태’나 K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 관련 정책과 연관지어 보도하고 있다.
- (2) 이 사건 기사 본문에는 D 당선인 수행 경호팀(이하 ‘당선인 경호팀’이라 한다)에 관련한 사진으로 이 사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사진에는 D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는 원고의 옆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3) D 전 대통령 당선 직후 N 정부가 파견한 당선인 경호팀은 총 9명의 경호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경호팀을 대표하는 L 임무를 맡고 있었다. 원고는 M일자 경호본부 P으로 근무하다 O일자 경호본부 Q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원고의 보직이 변경된 후 대통령 수행 경호팀은 교체되었다.
- (4)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20. 12. 29.을 기준으로 당선인 경호팀이나 경호 본부 R에서 근무하였던 경호관들 중 K 정부 당시 퇴직한 경호관은 원고 한 명 뿐이다.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은 원고 내지 원고가 L으로 있었던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에 관한 사실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

###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

#### 1) 관련 법리

가)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참조).

- 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 가) ① 부분

이 부분 적시사실은, 'D 전 대통령이 과잉경호, 보안부실 문제를 이유로 당선인 경호팀을 교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이러한 소명자료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위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M일자부터 대통령 경호실 경호본부 P으로 근무하다 O일자 경호본부 Q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이후 대통령 수행 경호팀이 교체되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보직이 변경되고 대통령 수행 경호팀이 교체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건강 문제로 보직이 변경된 것일 뿐이고, 전용기 탑승방법과 관련한 보안부실 문제로 인사 조치된 것은 원고 내지 당선인 경호팀과 무관한 기획실 직원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부분 적시사실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자료로는 S, T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호본부 R에서 대통령 헬기 탑승법 외부 유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보직 변경 및 경호팀 교체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전 대통령이 과잉경호, 보안부실 문제를 이유로 당선인 경호팀을 교체하였다'는 이 부분 적시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②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기사의 내용은 '당선인 경호팀 소속이었던 경호관이 D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청와대 인근 카페에서 박장대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당선인 경호팀 소속 경호관들이 '박장대소'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당선인 경호팀 소속 경호관들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당선인 경호팀 소속 경호관들이 D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크게 기뻐하였다는 논평 내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② 부분 기사에서 원고 내지 당선인 경호팀 소속 경호관의 행위에 대하여 '박장대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③ 부분

##### (1) 사실 적시 여부

피고는 익명의 제보자가 경호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기사로 다루었을 뿐, 그 제보자가 원고라고 단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③ 부분 기사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사실상 경호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서술한 후 대통령 측근 U과 V, W 외에 I씨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곳은 경호실이라는 등 제보자가 경호관이라는 이유를 나열한 다음 "앞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사실상 경호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다."라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토사구팽"이라는 소재목으로 기사를 이어나가면서 "경호실 내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면서까지 D 전대통령을 공격할 만한 그룹은 자신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좌천당했다고 느끼는 전(前) D 경호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이 이 메일로 제보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런 의심(D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좌천당한 경호관 일부가 방송국에 J씨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는)은 앞서 언급했듯 D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위기가 초상집처럼 가라앉았음에도 이들만은 즐거운 분위기였다는 사실과 맞물려 확신으로 변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단정적인 진술을 인용한 다음, “이런 의심을 받는 경호관 중 한 명은 (중략) K 정부에 서도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④ 부분 기사를 이어서 보도하였는바, ③ 부분 기사는 그 전체 흐름에 비추어 원고 내지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이 2014년 말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 방송국에 I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허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방송사 보도국에 ‘I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방송사 보도국에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내지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이 2014년 말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 방송국에 I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는 이 부분 적시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④ 부분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제출하여 퇴임한 것이 아니라 AB일자 정년에 따라 퇴임한 점, 원고는 Y일자부터 Z일자까지 경호지원단 X으로 근무하였는바, 경호처 내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S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다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내었다’는 이 부분 적시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④ 부분 기사 중 ‘사표를 제출하여 퇴임하였다’는 부분은 정정보도를 청구할 상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부분 기사의 내용 및 보도 방식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다 승진에 실패하고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토사구팽당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그 허위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을 보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①, ③, ④ 부분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표현 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고,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도록 하며, 아울러 피고가 위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사실인 ①, ③, ④ 부분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한 위법성도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원고 내지 원고가 L이었던 당선인 경호팀이 과잉경호 및 보안부실 문제로 교체되자 D 전 대통령에 관한 악의적인 제보를 하고, 이후 원고가 적폐청산 기구 등에서 활동하다 승진에 탈락하자 사표를 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 피고는 원고 등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였더라면 이 부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된 경위, 목적, 형식, 내용, 표현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 사건 기사 보도일인 2020.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3나2011925 손해배상(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74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C 잡지 100면 이내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은 별지2 제1항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과 동일하게 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G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그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은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과 동일하게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위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하며,

- 나.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박스처리, 음영처리, 볼드처리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사와 구분되도록 하여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은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크기, 활자 등과 동일하게 하고, 위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한 위 보도문이 함께 게재되도록 하며,
- 다.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의 본문 중 원고의 초상이 노출된 사진을 삭제하고,
- 라. 피고가 계약에 의해 별지2 제2항 기재 기사를 공급한 E, F 등 각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게 위 가, 나항의 정정보도문 게재 사실 및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전송하라.
3. 피고는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 1.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과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9.부터 2023. 2. 15.까지 연 5%,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취지의 판결.<sup>1)</sup>

###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sup>1)</sup> 요컨대,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취지이다.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4, 5 부분을 포함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별지4 및 별지5”를 “별지5 및 별지6”으로 고쳐 쓰고, 제21쪽 제1행의 “별지4”를 “별지5”로, 제37쪽 제1행의 “별지5”를 “별지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마지막 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부분 기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적시사실은 ‘당선인 경호팀 소속이었던 경호관들이 D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청와대 인근 식당·커피숍 등에서 박장대소하였다’는 요지이다. 살피건대, ‘박장대소’란 사전적으로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다’는 뜻이지만, 그와 같이 즐겁고 기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4자성어로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이기도 하다.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sup>2)3)</sup> 그런데 실제로 청와대 경호관들이 D 대통령 탄핵소추 무렵 청와대 근처 식당, 커피숍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든 손뼉을 치거나 웃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이나 태도를 외견상이라도 보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하와 같은 문제는 규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영향받을 소지가 매우 큰 영역이므로, 원고 등이 위와 같이 박장대소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나 진위를 판단하기 매우 곤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그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② 부분에서 ‘D 대통령을 경호하다 좌천당하였던 경호팀의 경호관들이 위와 같이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표현은 위 경호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엄중한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일상생활 속 즐거운 표정이나 태도를 보이는 등 가볍게(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처신하였다는 취지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표현을 통하여 간접적, 암시적으로라도 구체적 행위 등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② 부분 기사에서 원고 내지 당선인 경호팀이었던 경호관의 행위에 대하여 ‘박장대소’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이 부분을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3)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가하거나 압축·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기사의 전체적·객관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시사실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고 선뜻 단정할 수도 없다. 4)5)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②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6~8행의 “피고가 제출한 … 아니라고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가 경호처 내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R이 원고가 적폐청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쉽사리 믿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 제1심판결 제15쪽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④ 부분 기사 중 ‘사표를 제출하여 퇴임하였다’는 부분은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부분 기사의 내용 및 보도 방식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다 승진에 실패하고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토사구팽 당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 보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그 허위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의 저하된 사회적 평가를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

- 제1심판결 제17쪽 제2~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5) 나아가, 위 기사 부분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1가합586590 판결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으로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0년에 발생한 OOOO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이하 '사모펀드 사건')에 나오는 자산운용사를 최초로 설립했다고 알려진 전 대표이사(본인은 사건 발생 전 물러나서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힘) 및 그의 배우자이다. 언론사 세 곳과 유튜브 채널 한 곳이 원고 전 대표이사가 사모펀드 사건의 주요 인물이고 여권 인사와의 유착 관계를 통하여 권력형 비리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해당 보도들이 펀드 사태의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유튜브 채널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를 부정하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2심 법원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① 첨부된 사진들은 원고인 전 대표이사가 직접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각 사진과 함께 기재된 내용은 그 사진에 찍힌 장면을 설명한 것인 점, ② 원고 전 대표의 활동내역들은 실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잡지사 기사에는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한 원고 전 대표의 기여에 대하여는 원고 전 대표가 사모펀드의 전 대표이사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 전 대표가 2018년 3월경 출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원고 전 대표에 관한 범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도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원고 제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보도가 사모펀드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판결문

사	건	2021가합586590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3. 주식회사 E 4. 주식회사 F
변	론	2023. 9. 20.
판	결	2023. 10. 18.

## 주 문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원고 A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각 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F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54,111,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은 각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F는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727,667,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77,055,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C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제목을 [ ]에 표시하여 48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발행하는 G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제목을 [ ]에 표시하여 48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 다. 고 주식회사 E는 피고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제목을 [ ]에 표시하여 48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 라. 피고 주식회사 F는 인터넷 H 사이트 I 방송에서 별지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화면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발언 중 배경화면은 대상 보도에서 원고 A이 나온 자료화면으로 한 방송 영상을 제작하여 게재하되, 위 영상 제목을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같게, 위 영상 소개글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최초 24시간 동안 위 I 초기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이를 위 I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4. 피고들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원고 A은 2009. 6. 15.부터 2017. 7. 14.까지 J 주식회사(당초 K 주식회사에서 2009. 11. 27. L 주식회사, 2015. 7. 6. M 주식회사, 2017. 7. 5. J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J'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임한 사람이다. 원고 B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2017. 12. 8. 원고 A과 혼인하였다.
-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간지 'N'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이다.
- 3)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잡지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G'이라는 월간 잡지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이다.
- 4)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통신의 발행, 뉴스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보도한 뉴스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언론사이다.
- 5)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인터넷방송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I'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나. 각 기사, 영상의 게재

- 1) 피고 C는 2020. 7. 7. 피고 C 사이트의 "사회"란에 "O"라는 주제목, "P"라는 부제목의 별지5 기재 기사(이하 '피고 C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2) 피고 D는 2020. 7. 8. 피고 D 사이트의 "정치"란에 "Q"라는 주제목, "R"이라는 부제목의 별지6 기재 기사(이하 '피고 D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3) 피고 E은 2020. 7. 8. 피고 E 사이트의 "사회 > 법원·검찰"란에 "S"이라는 주제 목, "T"라는 부제목의 별지7-1 기재 기사(이하 '피고 E 제1 기사'라 한다)를, 2020. 7. 9. 위 사이트의 "정치 > 국회·정당"란에 "U"라는 주제목, "V"이라는 부제목의 별지7-2 기재 기사(이하 '피고 E 제2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 4) 피고 C는 2020. 8. 17. 피고 C 사이트의 “사회”란에 “W”이라는 제목, “X”이라는 부제목의 별지8-1 기재 기사(이하 ‘피고 C 제2-1 기사’라 한다)를, 2020. 10. 8. 위 사이트의 “정책 > 정치”란에 “Y”이라는 제목, “Z”라는 부제목의 별지8-2 기재 기사(이하 ‘피고 C 제2-2 기사’라 한다)를, 2021. 6. 10. 위 사이트의 “사회 > 법조”란에 “AA”이라는 제목, “AB”이라는 부제목의 별지8-3 기재 기사(이하 ‘피고 C 제2-3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이하 위 기사들을 통틀어 ‘피고 C 제2 기사’라 한다).
- 5) 가) 피고 F는 2020. 7. 8. 피고 F I에 피고 E 제1 기사 등을 직접 인용하면서, 주로 원고 A과 AC과의 관계, 특히 AD와의 관계, 원고 A과 배우 AE의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그 화면에 “J 논란”이라는 파란 배경의 자막 아래에 “AC 측근 A”, “AC 친분과시”, “A 국회의원 노려”, “AFI 유학비”, “AE 상무”라는 자막이 방송 진행에 따라 교차하여 나오는 영상(이하 ‘피고 F 제1 영상’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 나) 피고 F는 2020. 10. 20. 원고들의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던 사람이 촬영하여 제보한 영상이 포함된 영상(이하 ‘피고 F 제2 영상’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 (1) 원고들의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던 사람이 촬영하여 제보한 영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AC AG특보 A”, “A이 세운 사모펀드 J”, “피해액만 5천억 원”, “해외 도주 중인 A을 찾아서...”라는 자막이 순차적으로 나온다.<sup>2)</sup>
  - ② 촬영자는 원고 A이 운영하는 김치 판매 가게 입구를 촬영하면서, “A이 운영하는 김치 판매 가게”라는 자막과 함께 가게 앞에서 “문을 안 열었다.”라고 말하였다.
  - ③ 촬영자는 원고 B이 운영하던 학원 입구를 촬영하면서, “A 아내가 운영하던 AH학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 ④ 촬영자는 원고 A의 집 외부를 촬영하고, 원고 A의 집 내부 사진을 보여 준 후 월세 금액 등을 자막으로 표시하였다.
- (2) 위 영상이 재생된 직후, 위 영상 출연자들은 원고 A의 집 주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동산의 시세 가격 사이트, 원고 A의 집 주소와 위치가 나타난 지도 화면을 보여주고, 원고 A과 AC, AD와의 관계, 배우 AE와의 관계에 관한 의혹을 재차 제기하였다.
- 다) 피고 F 제1, 2 영상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발언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발언 내용	
제1 영상	<p>(생략)</p> <p>AI : 아, 그렇구나. 이게 보니까 무려 이 피해자가 1,100명이나 되나보죠? 1,100 명을 올린 J 설립자 A이 AC 캠프 출신이다.</p> <p>AJ : AC랑 아주 가깝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 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는 정도 예요.</p> <p>AI : 한 번 A랑 그동안에 정치인들 사진 한 번 쪽 저희가 아까 모아놓은 거 한 번 볼까요?</p>

1) AD의 자녀이다.

2) 위와 같은 자막을 삽입한 주체가 영상을 제보한 사람인지, 피고 F 측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발언 내용
	<p>(생략) AJ : 저 AC하고 께속말하는 사이가.</p> <p>(생략) AI : 그러니까요. 저 멀리 AK도 보이네.</p> <p>AL : 2012년이라네요.</p> <p>(생략) AI : AM이 가운데 있고요.</p> <p>(생략) AL : AN가 얼굴 보이네요.</p> <p>(생략) AJ : 그러니까 A이 저 정도 급이면 만약에 A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AM보다도 더 실세였을 수도 있어요.</p> <p>(생략) AJ : 아, 그렇구나. 다른 여자구나. 하여튼 AO랑도 엄청 가깝습니다.</p> <p>(생략) AJ : AP, AQ.</p> <p>(생략) AI : AR도 보이네요.</p> <p>(생략) AJ : 저기 AS. 빠질 수 없고.</p> <p>AI : 아이고야. AT이고.</p> <p>AJ : AT 있고.</p> <p>AI : 아, AU네요. AU.</p> <p>(생략) AL : 아, 그러니까 이 정도도 사진이 있으니까 A과의 정권 실세들과의 관련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p> <p>AJ : 관련성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p> <p>AL : 부인할 수가 없어요.</p> <p>AI : 핵심 중에 핵심이네.</p> <p>(생략) AJ : 그러니까 나쁜 펀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가 A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제보도 많았고 자료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기사가 터진 김에 J를 사고친 A의 과거를 보면 일단은 국회의원을 출마를 했었어요. AV정당에서.</p> <p>(생략) AI : AW언론에서 A 관련 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고요.</p> <p>AL : 네, AW언론에 그 7월 2일자 기사예요.</p> <p>AI : 볼까요?</p> <p>AL : 7월 2일자 기사니까 한참 됐죠.</p> <p>AI : 네.</p> <p>AL : 이때 이미 A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AX, AY단체 출신의 AX라는 변호사가 저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리고 그 AX의 아내인 AZ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BA 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사임을 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 AZ는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저 J의 자회사 격인 BB 뭐 무슨 회사 그러니까 자회사 격인 거기에 또 등기이사로 있었어요. (생략) 그런데 청와대 현직 청와대 BA수석실 행정관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 저게 사실은 J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전혀 그런 어떤 감독장치가 작동을 안 하고 저게 지금 5,500억은 피해액이고요. 실제로 판매한 액수는 2조 5,000억입니다.</p> <p>(생략)</p>

발언 내용

AJ : 그러니까 이제 규모는 BC이 더 클 수도 있고 BD이 더 클 수 있지만 정권 실세들의 가담 정도는 이 J가 가장 긴밀하다.

(생략)

AI : 자, 그런데 사실 오늘 BE에서도 제목을 뽑으셨다시피 AF. AF 얘기 좀 해주시죠.

AL : 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은 다 이제 병풍이고 실제로, 실제로 A은 2018년 3월부터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서 도망 중인데 그 A이 AD과.

AI : BF대학은 BG대겠네요?

AJ : BG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런데.

(생략)

AJ : AD. 그리고 딸이 시카고에 있어요. 유학자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생략)

AJ : 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제 유학비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잖아요.

(생략)

AI : 어떻게 유학 6억 재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생략)

AI :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자금 출처가 뭐냐라고 저희가 의문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 AW언론에서.

AJ : A이다.

AI : A이다.

AJ : A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문이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AI : A이 지금 시카고에, 시카고에 체류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챙기고 있는 거죠? AF를.

(생략)

AI : 자, 지금 저 사진은 뭔가요? A가 어디 뭐 중동에 가서 찍은 사진인가요?

AJ : 아, 저게 제가 이제 처음에 A이 도피를 했을 때서부터 이제 A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는데 두바이에 있었어요.

AI : 아, 두바이에.

AJ : 그러니까 본인이 참 저 친구는 되게 관종인 게 당당한 게 본인이 도피한 거잖아요. 도피하면서도 끊임없이 현지 행사에 나오고.

AL : 사진 찍어서 올리고.

AJ : 사진 찍어서 올리고. 두바이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또 중동하면 또 두바이하면 AD잖아요.

(생략)

AL : 아니, 그 A은 지금 이 J 여기서 한 펀드에도 펀드에서 9억 7,000만 원인가? 9억 원 이상을 대여를 해서 그 돈을 들고 2018년 3월에 나갔다는 거예요.

AI : 네.

AL : 그러니까 도피자금을 펀드에서 빼가지고 갔다는 건데 이미 그건 이제 펀드 장부에 올라 있는 겁니다. A에게 9억 이상을 전해주었다는 걸.

AJ : 그런데 그 A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얘기했지만 긴급하게 도피하게 된 건 이 J가 아니라 성폭행 혐의가 있었거든요.

(생략)

AL : 그 자기 와이프를 폭행한 혐의.

AJ : 아, 자기 와이프 폭행 혐의가 있고요. 자기 와이프 폭행 혐의가 있고.

AI : 이건 성폭행이죠? 성폭행.

AJ : 직원 폭행 혐의가 있는데 저건 성폭행인데 자기 행사 도우미, 행사 모델을 성폭행했다.

(생략)

AJ : 그 행사 모델을 성폭행했다는 건데 저건 심지어 형이 나왔어요.

AI : 아, 그래요?

	발언 내용
	<p>AJ : 네, 형이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갑자기 도망간 거예요. (생략) AJ : 합의금 1억을 주고서 보석으로 나왔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생략) AL : 아니면 저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수사가 또 조여 오니까 저 지금 집행유예가 4년이잖아요. (생략) AL : 네, 징역 2년 6월 받은 거에다가 그거까지 합치면 너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예라이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죠. (생략) AL : 아, 그런데 지금 이 혐의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아까 자금 9억 정도가 아니고요. AJ : 네, 70억이네요. AL : 네, 2013년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AI : 저도 한 번 보여주실까요? AL : 총 423회에 걸쳐서 회사 계좌 J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총 70억여 원이다. 진짜 어마어마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생략) AL : 그런데 저 A은 지금 뭐 지금 그 어제 지금 현재 대표인 BH와 그리고 저 J가 2,500억인가를 투자한 회사가 있거든요. 2대 주주. J의 현재 2대 주주인 조폭두목. 그 사람이 구속되고 그리고 현재 이사로 등재돼 있는 AX 변호사가 지금 그렇게 세 명이 구속이 됐는데 그 AX 변호사도 BG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 A은 BI고등학교를 졸업하고 BG대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또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BG대 BJ캠퍼스. (생략)</p>
제2 영상	<p>AI : 자, 이제 J 얘기해야죠. AJ : 자, 이제 AI이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생략) AI :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쫓겨났어요? 자기가 J 만든 사람이잖아요. AJ : 만든 사람인데 쫓겨났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BH하고의 경영권 다툼 때문에. AL : BH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생략) AJ : 그런데 맨 마지막에 쫓겨나면서도 90억인가 챙겨갔고 튀었어요. AL : 그리고 A은요. 이거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는데 애도 성범죄로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쫓겨난 거예요. AJ : 그럼요. 애가 그거 때문이 아니에요. 도망간 이유는. AL : 도망간 이유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 AJ : 그거 때문이 아니야. 이 J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AL : 그러니까. AJ : 도망간 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나타난 특례법 위반하고 조세범처벌법, 상해 뭐 이런 거예요. (생략) AL : 그런데 누군가가 이 타이밍에서 A가 구속되면 안 된다. 이래갖고서 도피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AJ : 그러니까 출국 금지되기 하루 전 날 튀었거든요. AL : 자, 저 기사에는 AC AG특보 출신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AI이 이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생략) AL : 구속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간 거지, 자기가 무슨 뭐 이번에 인터뷰가 뭐냐하면 가족을 만나러</p>

발언 내용

미국에 갔대요.

(생략)

AI : 아이, 진짜. 그런데 자, 이제 그 저희가 그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F가 정말 해외 교민 분들이 정말 저희 F의 다 지부장들이십니다. 진짜. 너무나 고마운 게 저희가 이름을 또 밝혀도 되나 그래서 밝혀도 된다 그래서 아주 젊고 훌륭한 친구인데 BK. BK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생략)

AI : 한 번 동영상 함께 보시죠.

(동영상 시청 : 이제 여기가 김치 \*\*\* 있던 곳이고 여기가 AH학원. 문을 닫았습니다. A 집입니다.)

(생략)

AI : 이야. 근데 진짜로 AC의 AG특보였던 A.

AL : 그리고 AD의 절친.

AJ : 바로 3월 22일 날, 23일 날 지금 출국금지예정이었는데 2018년 3월 22일날 지금 툰 거거든요. 그런데 25일인가 26일인가 BM 교민현장에서.

AL : 그렇죠. AC 행사였죠. 그것도.

(생략)

AJ : 이게 3월 25일인가 6일 날 찍힌 사진이에요. 저 교민행사 AC과 같이 저 BL 감독이 저 똑같은 옷에 넥타이 매고 AC 옆에 앉아있는 사진 있거든요.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3월 22일이에요? 이게 3월 25일인가 그렇지 않나?

(생략)

AJ : 그리고 AD이 이것도 제 그냥 상상입니다. 혹시나 A은 급히 돈을 바꿀 새가 없었잖아요.

AL : 그렇죠. 그렇죠.

AJ : 돈은 지금 3월 20일인가 21일 날 J 펀드에서 빼갔다는 거거든요. 80억인가 90억을. 그걸 빼서 들고 가질 못하니까 외교행낭에 싣고 나올 수 있는 AD이 실어다준 건 아닐까?

AL : 아니, 근데.

AI : 그러니까. 아, 저 AO랑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세요.

AL : A은 AO, AS.

AI : 네, 다 뭐 AS 다 찍었으니까. 뭐.

AL : 그런데 사실 저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랬을까 싶었는데 저 산호세에서의 화려한 주택을 보니까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데 살아요?

AI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여러분 피해액만 5,000억 원입니다. 피해액만. 여러분들 이거 분노해야 될 AQ량도 있네요. AP도 있고.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려면 이거는 피해자 분들이 A을 찾아가야 됩니다.

AJ : 그럼요.

AI :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도로 주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J : 구글로.

AI : 네.

AJ : BN네요.

AI : BN면 뭔지 모르겠네.

AJ : BN 캘리포니아.

AI : 캘리포니아.

AJ : 아, BN. BN.

AL : 그런데 붙잡아 와야죠.

AI : 그러니까요. 저거 여러분들 이거는 그 J 펀드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A 잡아 와야 됩니다.

AL : 네, 붙잡아 와야 돼요.

AI : 캘리포니아에는 J 피해자 분들은 없으시려나? 캘리포니아, 네? 그러면서 저 A한테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A 김치 먹고 싶습니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12, 16, 19, 2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 청구 요지

### 가. 정정보도 청구 및 간접강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보도로 “원고 A은 J 사태<sup>3)</sup> 주요 인물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J 사태는 원고 A과 당시 여권 인사(피고 F의 경우에는 특히 AD) 간의 유착 관계를 통하여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 사실’이라 한다)을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J 사태의 주요 인물이 아니므로, 위 적시 사실은 허위이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각 적시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764조에 따라, 피고 C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피고 D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피고 E은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피고 F는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각 정정보도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1) 피고 C 제1 기사

제목 또는 내용	
제목	O
내용	J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7일 “J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배경에 여권 실세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J 사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회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다. (생략) A 전 대표는 70억대 횡령과 조세 포탈, 상해, 성범죄 혐의 등 사건 5개에 연루된 피의자로 수사받던 2018년 3월 돌연 해위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BO정당 BP 의원은 “(A 전 대표가) 해외 도피 당시 AD과 밀접한 관계였다”며 “국민은 이 사건의 뒷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2) 피고 D 기사

제목 또는 내용	
제목	Q (부제목) R
내용	‘제2의 BC사태’로 불리는 J의 5,000억 원대 펀드사기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J의 대표이사였던 A 전 대표의 정치권 인맥이 논란이 되고 있다. ‘J 사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회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 여권 실세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3,300여 명의 피해자, 5,00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3) 피고 E 기사

#### 가) 제1 기사

제목 또는 내용	
제목	S (부제목) T
내용	J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BH J 현 대표이사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J의 설립자인 A 전 대표(53)의 과거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A 전 대표가 AC 대선 후보 캠프에 AG특보를 맡는 등 여권 인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J 환매중단 사태가 정치권과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생략)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J 환매중단 사태 배후에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BQ BO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00억 원대 환매중단에 빠진 J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는데, A 전 대표는 2018년 검찰 수사 중 아무 제재 없이 해외 도피에 성공했다"며 "수사당국은 청와대발(發) 권력형 비리가 또 나오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조속히 철저한 수사로 관련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A 전 대표가 해외 도피를 할 당시 BR이었던 AD과 BG대 동기인 데다, AD이 BS단체 이사장으로 있을 때 BS단체 상임이사를 맡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나) 제2 기사

제목 또는 내용	
제목	U (부제목) V
내용	J 사건은 정치권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 A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AV정당 소속으로 서울 BT선거구에 전략 공천받아 출마하기도 했다. (생략) BU 의원은 "J 사건의 주범이 된 A 전 대표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A 전 대표는 횡령, 폭행 등 사건이 꽤 많음에도 2018년 출국했다. 이후 귀국하지 않는 상태고, 모든 사건은 기소중지됐다"며 "문제는 이 사람이 나가서 어디서 모습을 보이느냐, AC순방 장소였던 BM 모 호텔 행사장에서 이 분이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 4) 피고 F 제1 영상

방송의 내용	
AI	: 아, 그러니까 이 정도도 사진이 있으니까 A과의 정권 실세들과의 관련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AJ	: 관련성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AL	: 부인할 수가 없어요.
AI	: 핵심 중에 핵심이네.
AJ	: 네
(생략)	
AI	: AW언론에서 A 관련 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고요.
AL	: 네, AW언론에 그 7월 2일자 기사예요.

AI : 불까요?

AL : 7월 2일자 기사니까 한참 됐죠.

AI : 네.

AL : 이때 이미 A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AX, AY단체 출신의 AX라는 변호사가 저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리고 그 AX의 아내인 AZ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BA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사임을 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 AZ는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저 J의 자회사 격인 BB 뭐 무슨 회사 그러니까 자회사 격인 거기에 또 등기이사로 있었어요. 저 AZ는. 그러니까 AZ와 AX는 완전히 그 사실상 저 지금 구속된 어제 구속된 BH의 오른팔, 왼팔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청와대 현직 청와대 BA수석실 행정관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 저게 사실은 J가 문제가 (생략)

(생략)

AI :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자금출처가 뭐냐라고 저희가 의문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 AW언론 에서.

AJ : A이다.

AI : A이다.

AJ : A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문이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 나. 손해배상청구

- 1)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허위 보도는 원고 A뿐만 아니라 원고 B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2)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허위 보도가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C 제2 기사의 게재로, 피고 F는 피고 F 제2 영상의 게재로 J 사태의 관련자로 원고 B 및 원고들이 운영하던 김치 사업, 학원 사업, 미국 내 집 주소 등에 관하여 보도 및 방송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위 각 보도는 원고 B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원고 B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3)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운영하던 학원의 매출이 급감하여 원고 B은 2020. 9. 30.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였다. 원고 B은 이로 인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잔존 렌트비 상당 33,752.32 달러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5년 이상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 1,418,313.42달러[= 287,201달러 × 4.9384(호프만 계수)]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위 손해들은 학원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BV의 손해이기는 하나, 해당 법인의 수익이 전적으로 원고 B에게 귀속되므로 원고 B의 손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원고 B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피고 C, F는 예비적으로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재산상 손해로 1,727,667,817원[= (33,752.32달러 + 1,418,313.42달러) × 소 제기일(2021. 11. 25.) 당시 환율 1,189.8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같이 설립한 LLC(유한책임회사)의 김치 사업의 매출이 급감하여 원고들은 1년 동안의 수익금 172,900달러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 A은 위 회사의 보통주 300,000주 중 200,000주를, 원고 B은 10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따른 수익금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 실제 김치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위 손해는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손해배상액 중 원고 A 지분 상당 115,266.667달러(= 172,900달러 × 2/3)에 해당하는 154,111,533원, 원고 B에게 위 손해배상액 중 원고 B 지분 상당 57,633.333달러(= 172,900달러 × 1/3)에 해당하는 77,055,7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피고 C, F는 예비적으로 공동하여 원고 B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up>4)</sup>

4) 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 C, D, E은 각 60,000,000원, 피고 F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 C, D, E은 각 20,000,000원, 피고 F는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 B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 C는 20,000,000원, 피고 F는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4) 원고들이 학원 사업 관련 손해와 관련하여 주장한 환율인 환율 1,189.80원을 적용하였을 때, 원고 A의 이 부분 손해액은 137,144,280원(= 115,266.667달러 × 1,189.80원), 원고 B의 이 부분 손해액은 68,572,139원(= 57,633.333달러 × 1,189.80원) 으로 각 계산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구하는 이 부분 손해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4. 정정보도 청구 및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 제1 기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확인된다.

- ① 주제목에 “AC과 귓속말, AO과 팔짱...”이라는 표현, 원고 A이 AC에게 귓속말 하는 사진과 함께 그 바로 밑에 “지난 2012년 5월 19일 BW에서 열린 고 BX 3주기 추모 공연 현장에서 A(오른쪽) 전 J 대표가 AC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 A 전 대표 블로그”라는 표현, 원고 A이 “AV정당 A”이라 적힌 옷을 입고 AO 옆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 바로 밑에 “2012년 제19대 총선 때 AV정당 서울 BT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던 A(오른쪽) 전 J 대표가 AO 전 BY장관과 찍은 사진. / BZ 서울 CA구 의원 블로그” 라는 표현, 원고 A이 AS 옆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 바로 밑에 “A 전 J 대표와 AS / A 전 대표 블로그.”라는 표현이 각 있다.
- ② 주제목에 “드러나는 J A의 실체”라는 표현, 부제목에 “P”라는 표현이 각 있다.
- ③ “J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7일 J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배경에 여권 실세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표현, “야당은 정권 실세들이 참여했던 BS단체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이라는 표현이 각 있다.

- 2) 피고 C 제1 기사에 사용된 표현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통상의 방법으로 위 기사를 접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 A이 당시 AV정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었고,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소위 'J 사태'가 발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첨부된 사진들은 원고 A이 직접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거나 원고 A이 제19대 총선 때 서울 BT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던 것과 관련하여 서울 CA구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각 사진과 함께 기재된 내용은 그 사진에 찍힌 장면을 설명한 것인 점, ② 원고 A의 활동 내역들은 실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 제1 기사에는 J 사태와 관련한 원고 A의 기여에 대하여는 원고 A이 J의 전 대표이사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 A이 2018년 3월경 출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원고 A에 관한 범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도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원고 제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보도가 J 사태의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피고 D 기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확인된다.
- ① 원고 A이 AC에게 귓속말하는 사진과 함께 그 바로 밑에 “지난 2012년 5월 19일 BW에서 열린 고 BX 3주기 추모 공연 현장에서 A(오른쪽) 전 J 대표가 AC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A 전 대표 블로그”라는 표현이 있고, “BT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으로 AV정당에서는 유력 후보가 나오기 힘든 상태였다. 그러나 BO정당에서 지역을 다져온 CB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정치신인인 CC 후보가 나서면서 AV정당의 젊은(45세) 후보 A이 관심을 끌기도 했다. AP 당 대표가 직접 지원유세에 나선 바 있다.(사진)”라는 내용 바로 밑에 AP 옆에 “AV정당 BT선거구 A”이라 기재된 띠를 걸친 원고 A이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원고 A이 위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띠를 두른 채 연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과 함께 그 바로 밑에 “2012년 3월 30일 오전 서울 CD 앞에서 열린 'CE단체 기자회견'에서 A AV정당 서울 BT선거구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CF언론”라는 표현이 있다.
- ② 주제목에 “제2의 BC사태' J A과 AD의 관계”라는 표현, 부제목에 “R”이라는 표현이 각 있다.
- ③ 원고가 2. 가. 2)항에서 특정한 표현들이 각 있다.

- 2) 피고 D 기사에 사용된 표현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통상의 방법으로 위 각 보도를 접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 A이 당시 AV정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었고,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소위 'J 사태'가 발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첨부된 사진들은 원고 A이 직접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각 사진과 함께 기재된 내용은 그 사진에 찍힌 장면을 설명한 것인 점, ② 원고 A의 활동 내역들은 실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 기사에는 J 사태와 관련한 원고 A의 기여에 대하여는 원고 A이 J의 전 대표이사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 A이 2018년 3월경 출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원고 A에 관한 범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도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원고 제출 증거를 더 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보도가 J 사태의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피고 E 제1 기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확인된다.
  - ① 원고 A이 "AC 당신의 대통령"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그 바로 아래에 "A(왼쪽) 전 J 대표(출처 = A 전 대표 블로그) © E"이라는 표현, 원고 A이 AC에게 귓속말하는 사진과 함께 그 바로 밑에 "A 전 J 대표가 지난 2012년 BW에서 열린 故(고) BX 3주기 추모공연 현장에서 AC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출처 = A 전 대표 블로그) © E"이라는 표현이 각 있다.
  - ② 주제목에 "S"이라는 표현, 부제목에 "AV정당 청년위원장 출신 여권인사들 친분... 정치권 연루 의혹도"라는 표현이 각 있다.
  - ③ 원고가 2. 가. 3). 가)항에서 특정한 표현들이 각 기재되어 있다.
- 2) 피고 E 제2 기사를 살펴보면 원고가 2. 가. 3). 나)항에서 특정한 표현들이 확인된다.
- 3) 위 각 보도에서 사용된 표현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통상의 방법으로 위 각 보도를 접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 A이 당시 AV정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었고,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소위 'J 사태'가 발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첨부된

사진들은 원고 A이 직접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거나 J 본사 이름이 나타난 사진을 올린 것이고, 각 사진과 함께 기재된 내용은 그 사진에 찍힌 장면을 설명한 것인 점, ② 원고 A의 활동 내역들은 실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E 제1, 2 기사에는 J 사태와 관련한 원고 A의 기여에 대하여는 원고 A이 J의 전 대표이사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 A이 2018년 3월경 출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원고 A에 관한 범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도 기소증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⑤ 특히 피고 E 제2 기사 중 BU 의원 발언 내용 부분은 BU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바, “J 사건의 주범이 된 A 전 대표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어떻게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람이 대통령 행사장에 나타날 수 있고, 출국 금지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검찰과 법무부는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단순히 주장 내용을 소개한 것에 그치는 것이어서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전문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원고 제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보도가 J 사태의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피고 F 제1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은 표현과 내용이 확인된다.
  - ① “충격단독 (AC 사진) 측근 AJ 본격 칼날”이라는 사진으로 영상이 시작된다.
  - ② 출연진이 피고 E 제1 기사를 소개한 다음 원고 A이 AC, AM, AN, AO, AP, AQ, AR, AK, AS, AT, AU와 함께 촬영된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정도로 사진이 있으니까 A과 정권 실세들과의 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는 발언을 한다.
  - ③ 출연진이 원고 A과 관련된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원고 A의 과거 정치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 ④ 출연진은 원고 A이 2018년 3월 이후로 해외로 출국하여 도망 중이라 언급하면서, AD과의 관계, AD이 신고한 재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AD의 자녀가 유학 생활을 할 당시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한다.
- 2) 위 보도에서 사용된 표현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통상의 방법으로 위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원고 A이 당시 AV정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었고,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소위 ‘J 사태’가 발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F 제1 영상 내용은 앞서 본 피고 C, E 등의 기사 내용과 거의 동일 하고, 출연진들이 원고 A을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 A과 당시 AV정당 인사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한 표현일 뿐이고, J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출연진들은 원고 A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이 긴급히 도피하게 된 것은 J가 아니라 성폭행 혐의 때문이다.”, “심지어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도망갔다.”, “그런 상태에서 도피할 수 있는 건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거를 AD이 손을 써줬다는 소문이 도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외국에 나가지가 쉽지 않다.”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원고 A이 출국하게 된 것은 J 사태를 직접적인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원고 제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 F 제1 영상이 J 사태의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도에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1) 한편 원고 B은, 피고 C는 피고 C 제2 기사의 게재로, 피고 F는 피고 F 제2 영상의 게재로 원고 B이 운영하던 김치 사업, 학원 사업, 미국 내 집 주소 등에 관한 보도 및 방송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여 원고 B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 2) 먼저 피고 C 제2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 제2-1 기사에서는 “A씨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하면서 식음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을 뿐이고, 원고 A이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지나 그 장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 C 제2-3 기사에서도 원고 A이 김치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장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위 각 기사에는 원고 A의 배우자나 원고 B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② 피고 C 제 2-2 기사에서는 원고 B을 “A(53)씨의 아내 B씨”라고 언급하면서, 원고 A의 배우자가 CG단체 샌프란시스코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일 뿐, 그 기사에는 원고 B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소, 원고 B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B의 개인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원고 B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다음으로 피고 F 제2 영상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6, 31,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F 제2 영상을 보면, 김치 사업과 관련하여서 '원고 A의 김치 사업'이라고 할 뿐, 위 김치 사업이 원고들이 공동 운영하는 곳이라는 언급은 없는 점, ② 피고 F 제2 영상이 방송된 시점이 2020. 10. 20.인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A의 아내가 운영하던 AH학원이 문을 닫았다는 내용만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원이 운영되던 장소가 보도된 것은 폐업 이후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 B의 실명도 거론하지 않고 "A 아내가 운영하던 AH학원"으로 언급된 점, ③ 위 영상에서는 원고 A의 집 주소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A의 가족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 A의 집에 거주하거나 거주했었던 자들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 F가 원고 B의 개인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원고 B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3장

# 기사삭제청구

---

###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가합532163 판결

언론사가 단순히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믿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해야 한다

#### [사건 개요]

원고는 모 언론사 편집국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이다. 원고는 A 정당의 총선 공약 발굴을 위한 '희망OO공약단'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위촉 직후 SNS에서 원고가 2019년 5월에 작성했다는 게시글('A당 or B당에 입당해서 분당을 치고 싶게')이 떠돌아 다녔고, 피고 언론사를 포함한 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화하였다.

그런데 B당은 원래 C당에서 당명을 바꾼 것인데 당명을 바꾼 시점이 2019년 6월이어서 2019년 5월에는 작성할 수 없는 글이므로 제3자가 2019년 6월 이후에 원고의 아이디를 참칭해 허위로 만들어낸 글임이 명백했다.

A 정당은 위 SNS 게시글이 이슈화되자 원고를 공약단에서 해촉했고, 원고는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한 후 원고가 문제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을 상대로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해당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해당 SNS 게시글을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보도이며, 이미 다른 언론사들이 해당 SNS 게시글 이미지가 조작된 것이라는 보도를 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해당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3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해당 SNS게시글을 언급한 부분의 삭제를 피고 언론사 발행인에 명하였다. (참고로 원고가 다른 언론사들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함)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법원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 포함된 위 글이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40분 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Y에도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이미지가 조작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으며, 그 다음 날인 2020. 1. 12.경에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이전에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이미지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거나, 그 밖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확인 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기사 검색 및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트위터 게시글만 보고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판결문

사	건	2022가합53216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3.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2023. 3.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별지 1] 기사 중 [별지 3] 삭제 부분을 삭제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기간 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 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2021. 4. 21.경 ‘C’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D”의 편집국장 및 “E”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 2) 피고는 “F(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피고 사이트’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발행인, 편집인 겸 기자이다.

#### 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원고 명의 트위터 게시글 게재

성명불상자는 2020. 1. 11. 21:26경 인터넷 커뮤니티 G의 H에 “I”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런데 위 글에는 [별지 2] 트위터 게시글 기재와 같이 ‘J정당이나 K정당에 입당해서 분탕을 치고 싶다’는 내용의 2019. 5. 14.자 원고 명의 트위터 게시글(이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라 한다)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 다. J정당 및 K정당 명칭 변경, 원고의 J정당 L 단원 위촉 및 해촉 경위 등

- 1) 1997. 11. 21.경 창당된 M정당은 2012. 2. 13.경 N정당으로, 2017. 2. 13.경 J정당으로 각 그 당명을 변경하였다. 2017. 8. 30.경 창당된 O정당은 2019. 6. 24.경 K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2020. 3. 3.경 P정당으로 합당되었다.

- 2) 한편 원고는 2009. 12. 2.경 M정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여, 2010. 2. 22. M정당에 입당하였고, 2019. 5.경에는 위와 같이 M정당에서 당명이 변경된 J정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 3) 원고는 2020. 1. 9.경 J정당 L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자 “Q”이라는 계정을 가진 사람이 2020. 1. 11. 위 게시글에 대하여,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게시하며 “해냈네요. 참 R한테 수업 듣고 싶은 사람이 J정당 잠입까지 하네.”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2020. 1. 11. 원고의 트위터에 “저 이런 글 쓴 적 없습니다. 이제 없는 글을 만들어서 위조해서 올리시는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 4) 한편 원고는 2020. 1. 12.경 J정당 L의 단원에서 해촉되었다.

####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J정당 L 단원 해촉 보도

- 1) 피고는 2020. 1. 12. 22:33경 피고 사이트의 “법치, 의회”란에 S이라는 필명으로 J정당 L 단원으로 위촉된 원고가 해촉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보도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2)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기사는 서두에 원고가 J정당 L 단원에 위촉되었다가 해촉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원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다음 원고가 해촉된 사유에 관하여, “그러나 A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T에서 열린 U 집회 사진과 함께 ‘국민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영들과 하나 되어 싸우고 있다. 부패한 검찰로 내 나라가 찍어가는 것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함이다. 검찰개혁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A 씨는 트위터에 ‘V정당 힘내요’, ‘W 대표님의 모두 발언 너무 좋습니다!’ 등 V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과 ‘J정당이나 K정당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글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이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 2020. 1. 16.경 X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았고, 2020. 2. 10. 같은 병원에서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2020년 1월에 본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기사 및 악성 댓글을 받은 후부터 우울, 불안, 불면, 자살 사고, 피해 사고, 대인관계회피 등의 증상이 지속됨. 상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2020. 2. 10.부터 치료 중이며,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상담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라는 소견을 냈으며, 피고는 2020. 2. 7.부터 2021. 2. 15.까지 위와 같은 증상의 치료 목적으로 “E”를 휴직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9, 10, 19, 22, 32호증, 을 제1호 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과 기사 삭제 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표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J정당과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달리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점을 소개하고 있고, 그 일련의 게시글 중 하나로서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부분 내용은 원고가 J정당의 L의 단원에서 해촉된 사유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도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한편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은 그 작성 일자가 2019. 5. 14.로 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이미 J정당에 입당한 상태였고, 나아가 위 시점에는 K정당이라는 명칭의 정당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인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마치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작성한 것처럼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됨에 따라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위 허위 사실 부분은 이 사건 기사에서 반드시 그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 중 위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공인인 원고가 J정당 L의 단원으로 위촉된 이후 많은 언론사들이 원고의 정치 이력과 정체성에 대해 보도를 했고, 원고는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에 확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두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확인할 필요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나)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는 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 (1) 관련 법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위 허위 사실 부분의 보도는, J정당과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달리하는 원고가 J정당의 공약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L 단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위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0. 1. 11.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보도에 앞서 여러 언론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언론사가 단순히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믿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과 갑 제4, 5, 11 내지 15,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은 2020. 1. 11. 21:26경 G에 게재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 그 이전부터 인터넷에 확산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 포함된 위 글이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40분 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Y에도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이미지가 조작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으며, 그다음 날인 2020. 1. 12.경에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이전에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이미지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거나, 그 밖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확인 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고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기사 검색 및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트위터 게시글만 보고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사 삭제 의무의 내용에 대한 판단

##### 1)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이후 응급실에 입원하거나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위 증상을 이유로 휴직하기도 하였으며, 개명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점 외에 다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용은 원고가 J정당 L의 단원에서 해촉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원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작성한 일련의 글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함께 보도된 것에 불과한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시일인 2020.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기사 삭제 의무의 내용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사 중 위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3] 삭제 부분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기사 중 위 허위 사실 부분인 [별지 3] 삭제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현재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상황을 보면,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합535691 판결

‘간첩’이란 표현은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 [사건 개요]

원고들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한국 지사 및 대표를 맡고 있는 중국인이고, 피고들은 언론사 한 곳 및 유튜브 채널 세 곳이다. 피고들이 원고인 중국인 대표가 의도적으로 모 도지사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중 행보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내에서 중국을 위한 간첩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대표가 여성성을 이용하였다 등의 보도를 하거나 영상을 내보냈다. 원고들은 이에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원은 간첩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관한 단정적 표현은 없고 단지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타인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우회적으로 드러내거나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으로, 피고들의 표현 내용이 의견의 표명으로서 원고들의 국내 간첩활동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이 중국인 원고가 여성성을 이용하였다는 부분 역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2심 법원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 북한과 정전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이라는 용어가 일상에도 파고들어 반드시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원고들이 간첩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표현을 접한 일반인이 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의 차이는 그 폭이 매우 넓어 위 표현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국과 대한민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활동을 펼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원고들의 활동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반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고들의 활동이 간첩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 판결문

사	건	2021가합53569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중화인민공화국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E 4. F 5. 주식회사 G 6. 주식회사 H 7. I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4. 14.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E, F, 주식회사 G는 각 1억 원,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1억원, 피고 주식회사 H, I은 공동하여 1억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 'J'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 'K'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G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 'L'에 게재한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각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H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각 기사를 각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각 별지1 목록 기재 기사 및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들을 비하하였는바, 원고들의 그러한 피해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 2. 관련 법리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실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 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 3. 쟁점의 정리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 및 영상을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는 ① 원고1의 대표이사인 원고2는 의도적으로 M N도지사 등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중 행보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들에게는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한 간첩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있고, ② 원고2는 위 ①항의 활동을 함에 있어 여성성을 이용하였으며, ③ 원고1은 그 실체가 불투명한 유명회사라는 것이다.

위 각 기사 및 영상 중 위 ① 내지 ③항(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자질구래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별달리 문제 삼는 것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표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 4. 이 사건 표현 ①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표현 ①항에는 원고들이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관한 단정적 표현은 없고, 단지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타인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우회적으로 드러내거나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현 ①항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고들의 국내 간첩활동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데,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현 ①항이 원고들의 국내 간첩활동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간첩활동은 그 밀행성으로 인하여 증거에 의한 입증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첩보기관 등 소수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그에 관한 증거수집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나. 대한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 첩보원의 국외 활동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므로, 설령 자국 첩보기관 등이 외국 간첩의 활동을 인지하더라도 그 정도와 해당 외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활동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다. '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형법도 제98조 제1항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간첩 역시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또한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첩행위를 그 내용별로 구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간첩의 본래적 의미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라. 북한과 정전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이라는 용어가 일상에도 파고들어 반드시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표현 ①항을 접한 일반인이 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의 차이는 그 폭이 매우 넓어 위 표현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 마.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국과 대한민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활동을 펼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원고들의 활동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바, 위 라.항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반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고들의 활동이 간첩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 바. 이 사건 표현 ①항에는 위 마.항 기재 국민의 입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내 공직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표현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 사. 이 사건 표현 ①항은 그 표현방식이 다소 불량하나, 원고1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이하 ‘공산당’이라고 한다) 기관지에 해당하는 O의 자회사이고, 원고2는 원고1의 대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 아. 결국 이 사건 표현 ①항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간첩활동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5. 이 사건 표현 ②항에 관한 판단

원고2가 이 사건 표현 ①항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성성을 이용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이 사건 표현 ②항의 표현방식이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등 다소 불량한 측면이 있으나, 위 원고가 공산당 당원이자 원고1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에서 수행한 이 사건 표현 ①항의 활동은 원고2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활동의 영역에 속하므로, 위 방식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6. 이 사건 표현 ③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표현 ③항은 세무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인바, 위 발언 자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원고1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에 그칠 뿐 그러한 사실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표현 ③항의 표현방식이 위 원고를 비하하는 등 다소 불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공산당 기관지에 해당하는 ○의 자회사인 점에 비추어 볼때, 위 방식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제4장 기타 참고사례

---

4-1.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211038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선불리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이며, 피고는 모 시의회 의회 의원이다. 피고가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내용을 배포하자 원고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총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발언들은 원고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노동자상 제작과정을 몰랐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면서 총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명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3심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일본 내 강제노역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예술작품의 평가는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본 사안은 공적 공간에 설치된 노동자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피고가 지목한 일본인들의 사진이 실제로 상당기간 국내 교과서 등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 소개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표현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 요지]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선불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상당 기간 국내 초·중·고교 교과서나 부산 소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설치물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서 소개된 바 있었던 점, 그러다가 이 사건 노동자상의 설치 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위 사진 속 인물들이 사실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점, 그 후로 해당 교과서나 역사관 내 사진이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설혹 이 사건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1나21103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8. 선고 2019가단9597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각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본인을 모델로 이 사건 노동자상(별지 1. 사진 참조)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일본인을 모델로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모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게시글과 보도자료는 이 사건 노동자상이 별지 2. 사진 속의 일본인 노동자를 모델로 하여 제작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또는 의혹제기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sup>1)</sup>
-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였음을 몰랐다.
- 3) 이 사건 노동자상은 일본인으로 밝혀진 노동자들의 모습과 유사하거나 같아 논쟁의 여지가 있고, 공적 공간에 설치됨에 있어 거처야 할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게시글과 보도자료는 이를 지적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도 없다.

## 3.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1)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 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의

1) 갑 제4호증의 1의 1쪽 하단 및 갑 제11호증 73쪽 상단의 사진이다.

내용 및 표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는 이 사건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로서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2)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노동자상의 제작자가 원고들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한 점, 언론기사 등을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들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바, 인터넷 등 간단한 정보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자상의 제작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에서 지목하는 이 사건 노동자상이 원고들이 제작한 노동자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에서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3)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가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

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별지 2. 사진 속 인물과 이 사건 노동자상은 외모에 있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및 하의는 허벅지를 드러낼 정도의 짧은 옷차림이라는

유사점을 갖고 있으나, 단순히 그와 같은 복장의 유사점만으로 이 사건 조각상이 별지 2. 사진 속 인물을 모델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아원 체형, 허름한 옷차림은 강제징용 착취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적시다).

-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기 위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분석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한 것이지 특정 사람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각상과 별지 2. 사진 속 인물이 갖는 유사점인 복장의 경우 다른 자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되는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장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각상이 별지 2. 사진 속 인물을 모델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③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노동자상의 제작자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별지 2. 사진만으로 이 사건 노동자상이 그 사진 속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인 별지 2. 사진 속 인물을 참조하거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의 내용은 이 사건 조각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피고가 추측뿐인 사실(원고들이 일본인인 별지 2. 사진 속 인물을 모델로 하여 이 사건 조각상을 제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 4)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 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자상이 별지 2. 사진 속의 인물을 모델로 하였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피고는 이 사건 조각상의 제작 과정을 몰랐다. 그럼에도 의견·의혹 제기가 아닌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 ② 별지 2. 사진 내지 이 사건 조각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임을 이유로 그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 및 자료들이 확인되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 확실한 자료들이라 보기 어렵다.
- ③ 피고로서는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이 사건 조각상들의 제작자인원 고들이나 조각상의 설치 주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작 그들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④ 이 사건 게시글과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조각상이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설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도 일부 보이나, 이 사건 게시글과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분량에 비추어 이 사건 조각상이 별지 2. 사진 속 일본인을 모델로 하였다는 사실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설치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면 되는데, 피고는 설치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각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 5)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에 적시된 사실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와 별도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이는 앞서 인정한 명예훼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도록 한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및 보도자료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한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중에는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노동자상은 사적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인 D시청 앞 공원 광장에 설치될 것을 예정하고 제작된 것으로서, 피고는 시의원의 지위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9. 8. 1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심 판결문

사 건	2022다28028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피고, 상고인	C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21103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 1.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조각가 부부인 원고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2016. 8. 24.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국내 각지에 설치해 왔고, 2019. 8. 13. D시청 앞 공원 광장에도 이 사건 노동자상을 설치하였다.
- 나. D시의회 의원인 피고는 이 사건 노동자상과 관련하여 2019. 8. 12.부터 2019. 8. 14. 사이에 피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1920년대 일본 경찰의 수사로 구출된 일본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모델로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자상 설치의 역사왜곡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이 사건 발언들을 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들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를 원고들로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 또한 허위로 보이며,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 3. 대법원의 판단

-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 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 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1) 먼저 이 사건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원고들의 증명 또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피고의 이 사건 발언들은 그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피고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 (2) 특히 이 사건 노동자상이 실제로 누구를 모델로 하였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작자인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에 기반한 창작 결과물만을 보는 제3자로서는 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진위를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3)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선불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 2)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자상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 (1) 이 사건 발언들은 공적 공간에 설치되어 그 철허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공론을 이끌어낸 이 사건 노동자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상당 기간 국내 초·중·고교 교과서나 부산 소재 국립일제 강제동원역사관 내 설치물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서 소개된 바 있었던 점, 그러다가 이 사건

노동자상의 설치 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위 사진 속 인물들이 사실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점, 그 후로 해당 교과서나 역사관 내 사진이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설혹 이 사건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발언들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단정하고,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에는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 허위성의 증명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형사)

학문적 표현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 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현재 명예교수)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책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2심에서 피고인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학문적 표현 행위를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책에 나온 '공적 강제 연행'과 같은 표현들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으며, 위안부 전체 규모를 추정했을 경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서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 요지]

-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선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처럼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표현이 그러한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안부의 자발성’, ‘강제 연행의 부인’, ‘동지적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는 적게는 30,000명에서 많게는 400,000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다양한 연행 경위나 피해 양상에 비추어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서술에 해당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로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판결문

사	건	2017도18697 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은, 일본 제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의 감시 아래 전시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없었다. 또한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본인 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아니었으며, 일본 제국과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일본군은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를 국의 송출하는 과정에 강제 동원과 강제 연행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B’라는 책(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출판하고 그 무렵 전국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1)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 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등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7, 11, 16, 27, 30, 34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 2)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라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7, 10, 23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 3)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라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5, 16, 20, 26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 있다고 한다면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어서 공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일람표 순번 5, 7, 10, 11, 16, 20, 23, 26, 27, 30, 34 기재 표현(이하 '이 사건 각 표현'이라 한다)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표현은 단순히 피고인의 분석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넘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2)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각 표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며, 이 사건 각 표현을 접하는 독자나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즉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또는 많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고, 애국적으로 일본군에 협력하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일본 제국과 일본군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거나 강제 연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도록 서술되어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또한 인정된다.
- 3)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집단의 성격 및 크기, 집단 내에서 피해자들의 지위, 이 사건 도서 및 표현의 내용 및 서술 방식,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상황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자신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히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책임을 요구하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 4) 이 사건 각 표현의 서술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 다. 대법원의 판단

### 1) 관련 법리

가)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 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선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2) 판단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대학의 일어일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문학과 한일 근현대사를 연구하였다. 피고인은 한일 갈등의 핵심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저서로 출판하였다. 이 사건 도서는 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학문적 표현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집필 과정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과 사료를 조사하여 이 사건 도서에 직·간접적으로 인용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사료 등 연구 자료를 위조, 변조하였다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의 기획, 집필,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인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처럼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표현이 그러한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안부의 자발성’, ‘강제 연행의 부인’, ‘동지적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이 사건 각 표현 전후의 맥락이나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이 사건 도서의 집필 의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전체를 통해 피고인의 주제의식, 즉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 제국이나 일본군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다른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하여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어렵다는 점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다) 학문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이 입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넓어지거나 표현의 내용이 일반화, 추상화될수록 희석될 수 있고, 이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나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나 비교적 균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의 표현은 비교적 진위 여부의 증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침해의 효과가 희석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 반면 이를 넘어서는 범위의 집단에 관한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표현은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시대상(時代相)을 정의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연구자 개인의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로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는 적게는 30,000명에서 많게는 400,000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다양한 연행 경위나 피해 양상에 비추어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서술에 해당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로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라) 범죄일람표 순번 5, 16, 20, 26 표현에 사용된 ‘공적 강제 연행’의 개념에 관하여, 이를 일본 제국의 공식적인 정책에 의한 강제 연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연행 과정에서 일부 군인의 일탈행위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공식 계통을 통한 ‘공적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학문적 표현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다양한 학문적 견해 중 어느 하나의 견해만이 옳다고 선언하는 것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용어의 개념이나 포섭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해당 표현에서 취한 개념이 실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것이거나, 통용되지 않더라도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대중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며, 해당 표현이 용어에 대한 특정한 학문적 개념정의를 전제로 한 것임이 표현의 전후 맥락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 표명 내지 의견 진술로 보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다.

‘공적 강제 연행’ 역시 국가나 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존재하여야 이를 ‘공적 강제 연행’으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나 주장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한 주장이 학계에서 주류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대중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해당 표현이 ‘공적 강제 연행’에 대한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로 한 것임은 표현 전후의 맥락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현 중 ‘공적 강제 연행’에 관한 서술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마) 학문적 표현, 특히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에만 주목하여 손쉽게 암시에 의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학문적 표현에 포함된 특정한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27, 30, 34 기재 표현의 경우, 그 표현 내의 문구만으로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적시 사실’이라 주장한 ‘자발성’이나 ‘동지적 관계’에 관한 명제를 곧바로 이끌어 내거나 유추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표현의 경우,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해당 표현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한 존재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관한 피고인의 학문적 의견 내지 주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당 표현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금적으로 협력하였다’는 명제를 단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소결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표현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검사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8, 9, 12, 13, 14, 15, 17, 18, 19, 21, 22, 24, 25, 28, 29, 31, 32, 33, 35 기재 표현에 관한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행정)

방송심의제도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한다

##### [사건 개요]

원고 방송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틀 후 뉴스프로그램 방송 중 해난구조전문가 모 씨와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를 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구조장비 중 하나인 다이빙벨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 및 해경 주도 구조작업에서 다이빙벨이 배제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면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재조치명령을 원고에게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재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년 1월 2심 법원은 원고 방송사가 문제된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재난 등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들을 혼동하게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방송심의규정이 정한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원고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선고 후 원고 방송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7년이 지난 2023년 7월 대법원은 해당 인터뷰는 객관성이 강조되는 뉴스보도 및 재난방송과는 다른 성격의 코너라고 판시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충실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세월호 침몰 직후의 위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구조방안에 대한 유효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했다고 보고 제재조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 요지]

- 구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사건 인터뷰의 주된 목적은, 세월호 수색 및 구조 작업에 대한 해난구조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하여 진행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듣고 이를 통해 그 사안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터뷰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뉴스보도 프로그램과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된 인터뷰 내용은 피해 및 복구 현황 등 재난 상황 자체에 대한 보도라기보다는 해난구조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한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객관성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재난방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국내외에서 해난사고시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수중 수색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특히 해양경찰청의 2014. 4. 23.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양경찰청 역시 다이빙벨의 유용성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있으며, 공소외인이 실제로 2014. 5. 1. 세월호 침몰 해역에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약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이빙벨에 관한 공소외인의 발언 내용은 잠수사들이 연속하여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수색 및 구조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음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유효절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판결문

사	건	2016두34257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원 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피 고,	피 상 고 인	방송통신위원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736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3.

## 주 문

원심판결 중 제재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2014. 4. 16. 오전 세월호 여객선이 진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나. 방송사업자인 원고는 2014. 4. 18. ‘(프로그램명 생략)’이라는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서 세월호 사고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그 방송내용 중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해난구조전문가인 공소외인과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고 한다)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다. 진행자가 이 사건 인터뷰 서두에 “다이빙벨을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공소외인은 다이빙벨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색작업. 일단 선체 안에 들어가면 조류의 영향은 없으니까요.”라고 답하였고,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활용된 바가 있습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있죠.”라고 답하였다. 공소외인은 나아가 “만약 그런 실질적인 작업이 하루에 말대로 20시간이 계속된다면 불과 한 2, 3일이면 3,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군(軍)에서는 이러한 다이빙벨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현재 해경이 주도하고 있는 구조작업 체계에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 라. 공소외인은 2014. 5. 1. 03:20경 실제로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약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다이빙벨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 8. 7. 위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함으로써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2.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및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정한다는 의결을 하고 피고에게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는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과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고지방송’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하였다.

##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 두43974 판결 참조).

### 3.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가.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1)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평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구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구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방송법 제33조 제2항 각호는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재조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송법령의 위입에 따라 마련된 구 심의규정은 제14조에서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 제2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 등’이라고 한다)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방송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구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인터뷰의 객관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문제된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재난 등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들을 혼동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심의규정 제14조, 제24조의2 제2항이 정한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객관적 사실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고, 특히 이 사건 인터뷰는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 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영된 ‘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터뷰는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방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다른 뉴스 프로그램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나) 이 사건 인터뷰 내용 중 ‘유속에 상관없이’라는 부분은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공소외인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인터뷰는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공소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질문을 하거나 그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위 주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고, 결국 시청자로 하여금 다이빙벨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점, 오히려 원고가 문제된 인터뷰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인터뷰에 앞서 다이빙벨에 관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철저히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등 객관적인 검증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인터뷰 내용은 단지 전문가가 일방적인 견해를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으로 보인다.

-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평소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다이빙벨에 대한 발언에 관하여 적절한 반박이나 논평 없이 불명확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원활한 피해복구 내지 구조 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터뷰의 특성, 그 내용과 구성 및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구 심의규정 제14조의 입법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위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같은 방송매체나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방송프로그램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방송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 또는 개별 프로그램 내 개별 코너의 특성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 인터뷰의 주된 목적은, 세월호 수색 및 구조 작업에 대한 해난구조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하여 진행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듣고 이를 통해 그 사안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터뷰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뉴스보도 프로그램과 다를 수밖에 없다.
  - 다) 문제된 인터뷰 내용은 피해 및 복구 현황 등 재난 상황 자체에 대한 보도라기보다는 해난구조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한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객관성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재난방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인터뷰는 세월호 수색 및 구조 작업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알권리 역시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마) 국내외에서 해난사고시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수중 수색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특히 해양경찰청의 2014. 4. 23.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양경찰청 역시 다이빙벨의 유용성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있으며, 공소외인이 실제로 2014. 5. 1. 세월호 침몰 해역에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약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이빙벨에 관한 공소외인의 발언내용은 잠수사들이 연속하여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수색 및 구조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음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바)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유효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3)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다.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1)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인 징계를 명한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가) 이 사건 인터뷰는 세월호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정부의 기존 구조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한 해난구조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
- 나) 공소외인이 30년 경력의 해난구조전문가로서 직접 다이빙벨을 이용하여 수중 선체조사를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상, 원고가 공소외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는 적절해 보인다.
- 다) 짧은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의 경우 진행자가 즉각적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러한 인터뷰 보도 생방송의 특수성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반 사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1551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7075 판결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연구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활발히 하는 유명 유튜버이고, 피고는 대학교 강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본인의 논문에서 원고 유튜버의 실명을 이용한 인사말('OOO')을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해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법원에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이름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고 있던 신조어를 합성한 표현을 원고만의 인사말로 만들어서 2013년부터 사용해 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문제된 표현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논문에서 원고가 여성의 성기 표현과 인사말을 합친 용어를 만들어서 전파하였다고 한 것은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허위 사실 또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진행된 2심 법원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판결 선고 후 피고가 상고했다가 취하여 원심이 확정됨)

#### [판결 요지]

-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바, 잘못된 연구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로서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논문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초경에도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고가 인사말로 사용하는 'OOO'라는 유행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OOO'의 의미를 왜곡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왜곡에 따라 일부 초등학생들이 'OOO'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2018. 5~6.경 방송, 언론 등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본인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히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을 통하여 바로 잡도록 조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 12.경의 시점에는 원고가 'OOO'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도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실, 학문적인 연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수 있는 사실을 연구의 기초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실명을 사용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OOO'에 관한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 내용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1심 판결문

사	건	2021가단515518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2022.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2012년부터 C, D 등 개인미디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원고가 방송하는 C 채널인 'E'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원고가 C 방송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최대 구독자 수가 4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구독자를 지니고 있는 인기 F였다. 원고는 게임, 유머, 뉴스, 시사, 일상공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2013년경부터 자신의 이름 'G'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고 있던 신조어인 'H(I)'를 합성한 'J(G + H)'를 원고만의 인사말로 사용하여 왔다.
- (2) 피고는 프랑스 K대학에서 현대철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페미니즘 철학 세미나, 페미니즘 철학 스쿨 등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L대학교, M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 또는 초빙교수로 근무하면서 주로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와 저술 및 강의 등을 하는 페미니즘 운동가이다.
- (3) N단체는 철학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학회지로 'O'를 발간하고 있는데, 위 O는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 대상 학술지로 선정되어 있고, 피고도 N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나. 'J' 의미에 대한 왜곡의 시도와 원고의 대응

- (1) 2018년 초경 극단적 여성주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원고가 사용하는 'J'라는 유행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J'의 의미를 왜곡하며 원고를 비방하자, 원고는 2018. 5. 19. 방송된 C 영상에서 'J'는 'G+H'라는 의미의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며 그런 의미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 (2) 그럼에도 P언론이 2018. 6. 1. Q뉴스에서 초등학생 사이에 퍼지는 '혐오단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J라는 단어가 여성혐오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생 인터뷰가 방송이 되자, 원고는 "① 위마드라는 급진적 페미가 J= 여혐이라 선동함. ② 그런데 Q뉴스에서 J가 여혐 단어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내보냄. ③ 해당 기자와 Q뉴스 측에 사과, 정정보도 요청 및 책임을 물을 것 요구."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올리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후 언론중재사건에서 P언론은 2018. 7. 1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고, 정정보도 대상원 보도가 검색되는 한 정정보도문도 동시에 보이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R와 S 등 P언론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한 후, 그와 같은 정정보도 및 조치를 하였다.

1. 제목 : 「T」관련 반론보도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1일 U 「T」 제하의 보도에서 “인터넷 방송 BJ가 만든 신조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혐오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방송 BJ는 “해당 신조어는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청자들과 나누고 있다는 친근한 인사말로 만들어 사용해 온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3) 또한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 언론사(V 등)에 대하여도 2018. 6~7.경 적극적으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J”의 의미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
- (4) 피고가 L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1차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제출한 자료(갑 제31호증의 2 34~35면, 2018. 4. 30.자 기사)에 의하면, ‘J’가 ‘G+ H’를 의미하는 인사말로 만들어 사용해 온 것임에도 원래의 의미와 달리 일부 초등학생들이 원래의 의미를 알고서도 또는 몰라서 여성비하 언어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의미의 변질은 원고와 여자 친구와의 다툼이 알려진 후의 일이라는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 다. 피고의 ‘W’ 논문 발표

- (1) 피고는 2019. 12.에 발간된 N단체의 학술지인 O 제127집에 논문명이 [W : X(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인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후부터 위 논문은 KCI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2)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관음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며,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위 논문에서는 ‘Y’이라는 줄임말로 표현한다)은 어린 시절부터 성차별적 환경에 놓여 성인이 될 때까지 몸 크기만 커질 뿐 큰 변화 없이 Z으로 집단적으로 성장, 진화하여 본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비하를 하게 되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현상은 벌레(蟲)의 불완전 변태와 같아 이를 Y유충-Y(성)충-Z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3) 피고는 이 사건 논문의 세 개의 주제(별지 이 사건 논문 요약문 참조) 중 첫번째 주제인 [한국에서 태어난 남아가 어떻게 ‘Z’으로 집단적으로 성장, 진화하는가를 분석하고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자기복제 기제들(replicators)을 들여다보겠다]는 부분(2. Z군집체로의 성장과 증식, 자기복제의 메커니즘)에서, 미디어 크리에이터(C와 D의 BJ)의 무분별하고 여성혐오적인 콘텐츠의 반복노출로 인하여 한국 남자들이 일상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혐오 놀이와 조롱의 용어 중 하나로 ‘J’를 언급하면서, 각주를 통하여 ‘J’의 발생 및 전파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연설명을 하였다 (해당 부분의 본문과 각주 내용은 별지 참조).

18) G이라는 C에 의해 전파된 'J'란 용어는 AA+AB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 라. 원고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와 논문 수정, 관련 기관의 판정

- (1) 원고는 이 사건 논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21. 2. 초경 C 팬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에 'J'라는 자신의 인사말이 본래의 의미가 아닌 'AA+H'라는 여성혐오 유행어로 소개되며 원고가 그렇게 유행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2021. 2. 8. C 방송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자신이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정신나간 여성혐오자”로 학술 논문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송을 수차례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트위터, 이 사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간 주체인 N단체, 이 사건 논문 발표 당시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기관인 L대학교, 이 사건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수록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에 이 사건 논문에 기재된 'J'에 관한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심각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며,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와 윤리위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문제된 부분의 삭제와 명예회복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 원고의 지속적인 항의와 요구가 이어지자, N단체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2021. 3. 19. 이 사건 논문의 해당 각주는 의도적인 조작과 같은 변조가 없기에 내용에 는 문제가 없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현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으로 수정하되 논문 게재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위 수정 이후에도 원고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18)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F, BJ G이 'G+H'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AA+H'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 (3) L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조사요청에 따라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토를 거쳐 2021. 10. 5. 이 사건 논문의 수정 전 각주 18번은 원고가 만든 인사말인 'J'가 'AA+H'라는 의미를 합성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그 의미를 'AA+ AB'로 만들고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표현하고 있어, 적극적인변조는 아니라 할지라도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는 L대학교의 변조판정 결과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2021. 10. 20.까지 6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다투었으나, L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1. 11. 29. 피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4) 한국연구재단은 2022. 3. 7.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N단체에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을 학술지 게재에서 철회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한국연구재단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다투고 있다.

마. 이 사건 논문이 문제된 이후의 대응 태도

- (1) 원고가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구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피고는 트위터 이용자들을 통해 ‘J’가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례와 증거들을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 한편, “원고가 논문 퇴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C에서 각종 음모론과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으며, 구독자들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믿으며 퍼뜨리고 있다. 학계의 권위, 명예, 원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서라도 제 논문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여성혐오와 증오의 의지 잘 보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원고를 맹비난하였다.
- (2) 원고는 2021. 2. 8. 이 사건 논문에서 원고를 여성혐오표현을 만든 F로 묘사 하였다는 내용의 영상을 처음 방송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논문 사건에 관한 영상만 올리다가, 2021. 5.경에는 여성혐오자로 낙인찍힌 본인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얼굴 성형수술을 한 다음 이후부터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가린 상태로 간간이 이 사건 논문과 관련된 방송을 하다가 2021. 6. 20.을 끝으로 국내에서의 인터넷 방송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 4, 7, 8, 31, 34, 35,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 · 피고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실명을 이용한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논문은 ‘J’라는 표현이 ‘AA+H’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였을 뿐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논문 발행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내용인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이므로 명예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논문 각주가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J’가 여성혐오용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유무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 58823 판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 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나. 이 사건 논문으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 (1) 허위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의 본문과 각주 18번에 사용된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J’는 원고의 실명인 ‘G’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고 있던 신조어인 'H(I)'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하여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음에도, 수정전의 이 사건 논문은 원고가 'AA+AB'의 합성어인 'J'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주제인 '남자 어린이(Y유충)의 Z으로의 성장, 진화과정의 주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허위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훼손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인 표현에도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바, 잘못된 연구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로서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논문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초경에도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고가 인사말로 사용하는 'J'라는 유행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J'의 의미를 왜곡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왜곡에 따라 일부 초등학생들이 'J'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2018. 5~6.경 방송, 언론 등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본인의 C 방송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히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을 통하여 바로 잡도록 조치를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 12.경의 시점에는 원고가 "J"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도 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실, ③ 학문적인 연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수 있는 사실을 연구의 기초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실명을 사용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J'에 관한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 내용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4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F이고, 원고의 유행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인터넷 방송 인사말이 공인된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공적 관심 사항이라 볼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의 논문은 'J 인사말의 변질에 관한 논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며, 'J'라는 용어도 피고가 여성혐오적 표현의 예로 거론하고 있는 여러 용어[J, AC, AD, 앙, 기모찌(아, 기분 좋아), 아메떼(그만해)]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피고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원고가 'AA+H'의 합성어인 'J'라는 여성혐오적 표현을 퍼뜨리는 존재라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소결론

따라서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은 원고가 'AA+H'의 합성어인 'J'라는 여성혐오적 표현을 퍼뜨리는 존재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는 4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인터넷 방송활동을 하고 있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수정 전 논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J'라는 용어가 초등학생이나 젊은 20-30대에 의하여 여성혐오 표현이나 여성혐오놀이 용어로 사용된 사실도 있고, 방송사도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 방송이나 보도까지도 한 사실, 피고는 'J'라는 의미에 대하여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본래의 의미 및 변질 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과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논문이 게재·게시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논문이 게재·게시된 이후의 피고의 대응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액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1.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판결문

사	건	2022나3707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15518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1/3”을 “1/2”로 경정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부대항소취지<sup>1)</sup>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부대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 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26호증”을 추가하며, 제11면 제4행의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 65494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제11면 제12행의 “J”를 “J”로 고쳐 쓰며, 제12면 제2행의 “사실” 다음에 “(피고 자신도 L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1차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의미 변질이 있었다는 2018. 4. 30.자 기사를 제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할 당시 참고한 자료라고 제출한 을 제26호증은 출력일자 등이 조작된 허위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AA+AB’의 합성어로 ‘J’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는 없고, ‘J’는 원고가 ‘H’에 자기 이름 앞글자인 ‘AL’를 결합해 사용한 인사말인데 애초 의미와 달리 여성 비하 언어로 변질되었다는 취지의 2019. 2. 14.자 검색기사가 있을 뿐이므로(을 제26호증의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1/3”은 “1/2”의 오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변론종결 후 2023. 2. 6.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를 진술하기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을 보더라도 특별히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가합51395 판결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 여부도 이 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심 법원에서 사회 A11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상고심에서 언론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판결 확정 후 일간신문 사회 A12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023년 2월 피고가 원고가 제대로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자 원고 언론사에서 강제집행 불허 및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 신청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당초 정정보도를 인용한 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보도 게재 지면인 A11면이 전면 광고이고 사회면의 첫 시작이 A12면인 점과 피고가 상당 기간 언론사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언론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도록 하였다.

1심 법원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여 현재 3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집행력 있는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 여부도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 언론사는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서 이 사건 선행판결 주문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의 활자체 및 글자 크기, 게재 시기를 준수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지면인 사회 A11면이 아닌 사회 A12면에 게재하였는데, 이는 게재 일자인 2018. 4. 19.자 신문의 A11면은 사회면이 아닌 전면 광고에 할당된 지면이었고, 사회면은 A12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선행판결이 정정보도문을 사회 A11면에 게재하라고 명한 것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신문 사회 A11면에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정정보도문도 같은 사회 A11면에 게재할 것을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된 2011. 7. 13.자 사회 A11면은 해당 일자 사회면 중 두 번째 지면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사회 A12면은 해당 일자 신문 사회면의 첫 번째 지면에 해당하는바, 전면 광고 지면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사회면의 첫 번째 지면의 경우 설령 A12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면의 두 번째 지면으로서의 A11면보다는 오히려 구독자들의 눈에 띄기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정정보도를 명한 근거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정보도문이 해당 일자 신문 사회면 중 두 번째 지면보다 구독자들의 눈에 띄기 수월한 첫 번째 지면에 게재된 것은 ‘피고의 명예회복’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후 정정보도문을 사회 A12면에 게재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원고 언론사 측 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정정보도문 게재 무렵까지 정정보도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고, 원고 언론사 측에게 게재 지면을 준수할 것도 요구하였는데, 위 게재 이후 2023. 2. 22.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무렵까지 약 4년 1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정보도 게재 지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판결문

사	건	2023가합51395 청구이의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9. 15.

##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손해배상(기)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3카정30237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3. 5.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간신문 'C'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2. 3. 19.경까지 D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 나. 원고의 기사 게재

원고는 2011. 7. 13. C 사회 A11면에 「E」라는 제목과 「F」라는 부제목 하에 [... 국회와 관련한 성(性) 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여당 C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 기재 기사(C 기자 G이 작성, 이하 '정정보도 대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다. 선행 소송의 경위

- 1) 정정보도 대상 기사를 포함한 국회 내의 성추문 관련 기사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 H 주식회사 및 그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91837호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4529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5. 6. 19. ① 원고는 위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 사회 A11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이하 '이 사건 정정보도문'이라 한다)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로 1회 게재하고, ② 만일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게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③ 원고는 G과 각자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sup>1)</sup>하였다(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포함한 위 항소심판결 전체를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1) 피고는 H 주식회사와 그 소속 기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일부 승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2015다4585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의 정정보도문 게재

원고는 2018. 4. 19. C 사회 A12면의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체 및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로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 마.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23. 2. 22. 원고가 C 사회 A11면이 아닌 같은 사회 A12면에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17억 7,000만 원(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2023. 2. 22.까지 총 1,770일 ×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채권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0568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3. 3.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 1) 이 사건 정정보도문 게재 당시 C의 A11면은 사회면이 아닌 전면 광고가 게재되는 지면이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측의 동의를 받아 사회면 중 첫 번째 지면에 해당하는 A12면에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피고가 이 사건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약 5년이 지난 후에서야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나. 피고

원고가 C 사회 A11면이 아닌 사회 A12면에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반하고 피고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사회 A12면에 게재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원고 측 요청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항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판단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바(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등 참조), 집행력 있는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 여부도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4. 19. C 사회 A12면의 우측 하단에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원고의 정정보도문 게재의무 이행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서 이 사건 선행판결 주문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의 활자체 및 글자 크기, 게재 시기를 준수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지면인 사회 A11면이 아닌 사회 A12면에 게재 하였는데, 이는 게재 일자인 2018. 4. 19. C의 A11면은 사회면이 아닌 전면 광고에 할당된 지면이었고, 사회면은 A12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 ② 이 사건 선행판결이 정정보도문을 사회 A11면에 게재하라고 명한 것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C 사회 A11면에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정정보도문도 같은 사회 A11면에 게재할 것을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된 2011. 7. 13.자 C 사회 A11면은 해당 일자 C의 사회면 중 두 번째 지면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사회 A12면은 해당 일자 C 사회면의 첫 번째 지면에 해당하는바, 전면 광고 지면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사회면의 첫 번째 지면의 경우 설령 A12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면의 두 번째 지면으로서의 A11면보다는 오히려 구독자들의 눈에 띄기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정정보도를 명한 근거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정보도문이 해당 일자 C의 사회면 중 두 번째 지면보다 구독자들의 눈에 띄기 수월한 첫 번째 지면에 게재된 것은 '피고의 명예회복'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③ 이 사건 선행판결은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하였고, 위 판결은 2018. 4. 12. 확정되었으므로 위 정정보도 게재의무 이행기간은 2018. 4. 13.부터 2018. 4. 19.까지라고 할 것인데, 위 기간 중 2018. 4. 14.를 제외 한 나머지 날들은 모두 C A11면이 전면 광고 지면, A12면이 사회면의 첫 번째 지면에 해당하였고, A11면이 사회면인 날은 위 2018. 4. 14.만이 유일하였다. 그런데 위 2018. 4. 14.는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이 사건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평일에 비해 통상적으로 실질적 구독률이 높지 않은 날이었다.
- ④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후 정정보도문을 사회 A12면에 게재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정정보도문 게재 무렵까지 정정보도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고, 원고측에게 게재 지면을 준수할 것도 요구하였는데, 위 게재 이후 2023. 2. 22.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무렵까지 약 4년 1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정보도 게재 지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합516420 판결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현재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중견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이고, 피고는 출판사 대표이다. 원고와 교제하였던 여성이 원고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알코올 중독 극복 과정을 담은 에세이 책을 내면서 원고와의 성관계, 원고의 과거의 연애사나 건강 정보, 원고 및 원고 가족 간의 갈등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원고는 이에 책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로 원고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며, 본 소송은 수정 후 재출간된 책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공적자 등과 같이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책 중에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일부 내용은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해당 책 중 일부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에 배포된 책은 회수해서 폐기하라고 명하였다.

1심 법원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여 현재 3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판결 요지]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 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 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 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인용 부분을 통해 공개된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 지극히 내밀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원고와 이 사건 저자 사이의 성관계를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 원고의 건강 정보를 적시하고, ㉢ 원고와 원고의 아들 부부, 특히 며느리와 의 다툼 내지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는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함은 물론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가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과 같이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인용 부분이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었다거나, 또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 판결문

사	건	2022가합516420 출판 및 판매금지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총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3.

##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서적에 관하여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이미 배포된 별지 1 기재 서적을 회수하여 폐기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별지 1 기재 서적에 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각 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70년 C언론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후 현재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중견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이고, 피고는 과거 원고와 교제를 하였던 D(이하 ‘이 사건 저자’라 한다)이 저자인 별지 1 기재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고 한다)을 출간한 출판사 ‘E’의 대표자이다.
- 나. 전직 C언론 기자인 이 사건 저자는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와 교제 하였고, 원고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알코올 중독 극복 과정을 담은 에세이인 이 사건 서적을 집필하였다. 피고는 2022. 3. 8. 이 사건 서적을 출간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358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따라 일부를 수정한 다음 재출간 및 판매하였다(이 사건의 판단 대상인 이 사건 서적은 재출간된 서적이다). 별지 3 목록 기재 각 내용은 이 사건 서적의 내용 중 일부이다.
- 다. 이 사건 저자는 이 사건 서적에서 원고를 익명으로 기재하면서 ‘F’로 지칭하였으나, G 온라인 사이트의 책 소개 내용과 출판사 서평에는 원고의 실명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이 사건 서적에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 원고의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제1항)과 ㉡ 허위 사실(제2항)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각 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행위를 하지말 것과, ② 이미 배포된 위 서적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구한다.

## 나. 피고

- 1) 이 사건 서적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이 사건 저자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사실에 기반을 두어 쓴 자전적 에세이로, 그 기재 내용에는 허위 사실이 단 하나도 없다.
- 2) 원고와의 교제 및 이별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서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인 내용이다.
  - ① 다만, 피고와 이 사건 저자는 이 사건 서적의 출판 전 수십 차례 감수를 거쳐 원고의 이름은 실명을 쓰지 않고 'F'로 적거나 원고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단어는 최대한 배제하는 등 그 내용상 원고로 특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원고에 대한 부분을 순화하여 적었으며,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이나 내용은 삼갔다. 피고는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358호)의 결정 사항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 ② 원고는 연예인으로서 공인에 준하는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며, 원고와 이 사건 저자 사이의 열애 사실이나 이후 이별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 서적의 출판 전인 2013년경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 3. 관련 법리

- 가.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 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 16280 판결 등 참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 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 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

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 법익의 내용과 증대성 및 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 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 영역을 침범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 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자기의 사상과 의견 표현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자기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므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함께 두어(헌법 제21조 제4항) 표현의 자유가 명예의 보호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등 참조).
- 라.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4.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 3 목록 제2항 부분 삭제 청구

##### 가.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각 내용이 원고와 이 사건 저자 간의 교제 기간 중 있었던 다툼이나, 두 사람 사이의 결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가족과 이 사건 저자 사이의 갈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내용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 나. 허위 인정 여부

-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각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5.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 3 목록 제1항 부분 삭제 청구

가. 우선 별지 3 목록 제1항 기재 각 내용은 원고와 이 사건 저자 간의 성관계, 원고의 과거의 연애사나 건강 정보, 원고 및 이 사건 저자와 원고 가족 간의 갈등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인용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적에 포함된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내용(이하 '이 사건 인용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이 사건 인용 부분을 통해 공개된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 지극히 내밀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원고와 이 사건 저자 사이의 성관계를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 원고의 건강 정보를 적시하고, ㉢ 원고와 원고의 아들 부부, 특히 며느리와의 다툼 내지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는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함은 물론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② 갑 제7, 8, 10 내지 16호증, 을 제1,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저자의 교제, 원고의 연애사, 원고나 그 가족과 위 저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두 사람의 이별, 2013. 9. 27. 예정되었던 위 저자의 기자회견 취소, 원고 및 그 가족과 위 저자 사이의 법적 분쟁 이후 합의 등에 관한 보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용 부분이 위 보도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특히 그중 성관계에 관한 내용은 일방 당사자인 이 사건 저자가 직접 공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인용 부분 중 원고의 건강 정보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서적의 발행 당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도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정보 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함부로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감정보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④ 원고가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과 같이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인용 부분이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었다거나, 또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 ⑤ 이 사건 저자나 피고가 이 사건 서적을 집필 또는 출간하면서 원고를 그 실명 이 아닌 'F'로 지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저자와 원고의 교제 및 이별 사실 등이 2013. 9.경을 전후하여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이상 방송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사건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로서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F'가 원고라는 점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이고(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이 사건 저자나 피고 역시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대로 G 온라인 사이트의 책 소개 내용과 출판사 서평에는 원고의 실명이 기재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서적의 발행을 전후하여서는 원고의 전(前) 연인이었던 이 사건 저자가 위 서적을 출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나 위 저자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면서 원고와 위 저자의 관계나 그 사이에 있었던 분쟁 등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 ⑥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서적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이 사건 저자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사실에 기반을 두어 쓴 자전적 에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저자가 알코올 중독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의 교제나 이후 이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서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밝히고 있는 이 사건 서적의 집필 또는 출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용 부분이 위 서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⑦ 이 사건 인용 부분이 이 사건 서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표현 행위 내지 위 서적의 출판 행위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 다. 기각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3 목록 제1항 기재 각 내용에서 이 사건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기각 부분'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위법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①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연예인으로서 공중의 관심을 추구하고 여러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노출됨으로써 폭넓은 사회적 영향력을 얻게 된 사람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통상의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고, 자신에 대한 일정 범위의 비판 등은 감수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이 사건 기각 부분이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위법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별지 3 목록 제1의 다.항의 경우
- 이 사건 서적의 목차 중 'F의 배신'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위 서적을 읽는 일반인들이 원고와 이 사건 저자의 이별 원인이 원고의 과거 연애사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연인이 다툼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는 것은 흔한 일로, 위 기재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원고와 헤어진 상대방인 이 사건 저자 입장에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이라 볼 여지도 있다.
- ㉡ 별지 3 목록 제1의 마. 내지 아.항의 경우
- 이 부분 각 내용이 원고와 이 사건 저자 사이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이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는 추상적·문학적 표현 또는 이에 가까운 내용들로서, 그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은 점, 이 사건 서적에서 위 각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내용 전개에 있어서의 필요성,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표현 행위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은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보호 가치에 비하여 헌법상 보장된 이 사건 저자의 표현의 자유나 출판업자인 피고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 ㉢ 별지 3 목록 제1의 타.항의 경우
- 그 내용 자체로 원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기각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서적의 출간은 원고와 이 사건 저자 사이에 작성된 2014. 1. 13.자 합의서(갑 제5호증) 위반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저자에 대하여 위 합의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갑 제19, 20호증,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자는 2022. 2. 28. 원고를 상대로 위 합의서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실, 서울방배경찰서는 같은 해 6. 30.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자의 변호인이 추가 수사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합의서의 작성 당사자도 아닌 이상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6. 이 사건 서적의 회수 및 폐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서적에 포함된 이 사건 인용 부분은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358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서적 중 일부를 수정한 다음 재출간 및 판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로 하여금 이미 배포된 이 사건 서적을 회수하여 폐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서적에 포함된 이 사건 인용 부분으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대한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은 피고에게 이미 배포된 이 사건 서적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한다.

###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합544319 판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사람은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 내용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국가기간방송사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모 유튜브 채널 운영 법인 및 해당 채널 제작·진행자 2명이다. 피고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원고가 이전에 내보낸 OO 주식회사 관련 의혹 보도(대표회장이 회사 자금을 자녀들 유학비로 유용했다는 내용)는 보도 대상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부정 청탁에 따른 것이며, 원고 언론사 소속 부장이 해당 보도 청탁의 대가로 BMW 차량을 받았다는 등의 영상을 내보냈다. 원고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1억 원을 요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해당 영상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들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그 영상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실제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삭제하고 손해배상 1천 5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되었다.

##### [판결 요지]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그 영상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실제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특히 원고와 OO 주식회사 사이에는, OO 주식회사 등이 원고, 원고 소속 사회부장 및 이 사건 보도를 취재한 원고 소속 기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보도의 일부 내용(위 보도 중 OO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OO 주식회사 회장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부분 및 회사 회장 아들이 회사의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한 점, ②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영상에서 적시한 각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도(앞서 본 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영상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단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보도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허위 보도라는 취지의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 진행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문

사	건	2022가합544319 영상삭제청구 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	론	2023. 6. 14.
판	결	2023. 7. 5.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을 유튜브 채널 'E'에서 삭제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 혁신과 문화의 창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가 기간 방송사로 설립된 법인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7. 13.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튜브 채널 'E'를 통해 각종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피고 C, D은 유튜브 채널 'E' 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하고 있고, 피고 순번 발언 내용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보도

원고는 2018. 11. 15. F 프로그램의 'G'라는 코너를 통해 "H"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J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자녀들의 유학 비용으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영상 제작 및 송출

피고들은 2022. 4. 28. 19:00경 유튜브 채널 'E'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K"이라는 제목의

영상(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함과 동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하였다.

이 사건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발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아래 '-' 부분은 피고 C가, '=' 부분은 피고 D이 각 발언한 부분이다. 이하 편의상 아래 순번 순서대로 '이 사건 제① 부분' 등으로 특정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분'이라 한다).

순번	발언 내용
	<p>= 이걸 위해서, 딱 청탁 방송을 하려고 만들었다가 딱하고 없어졌어, [A] 가 저 바닥까지 간 거예요.</p> <p>[A] 라는 데가 이미 청탁 방송으로 전략한 거야</p> <p>[L] 한테 치킨을 몇 마리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L] 치킨 처먹고 [I] 공격하는</p> <p>= 아니 그 저 [M] 의 부탁을 받고 [N] 를 공격하는 이런 수준도 아니고 이제는 [I] 부탁받고 [L] 공격하고 [L] 부탁받고 [I] 공격하는 치킨 전쟁에 참가해 가지고 [A] [O] 이제 나중에 이거 보면 [A] 가 공격하고 [P] 이 반박하고 이게 나와요</p> <p>[Q] 가 싸우고 아니 이게 보니까 이런 식이면은 [A] 가 나중에 [R] 청탁받아서 [S] 공격할 것 같애. 어? [R] 청탁 청탁 받아가지고 [R] 에서 저기 짜파게티 한 그릇 더 받아서 어 [S] 에 짜파게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랄 할 거 같아 [A] 가 어?</p> <p>(중략)</p>
①	<p>저는 그래서 그 면상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잡니다. 자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A] 뉴스 [T] 기자입니다. (박수) [L] (삐-효과음) 청탁받고, 아니 욕한 거 아닙니다. 하하하 너무 긴장하셨어, [L] 청탁받고 [I] 조지는 리포트를 한 [A] [T]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 면상 영원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출장도 존나게 많이 갔어 보니까 이거 뉴저지고요 막 보스턴도 가고 미국 여행을 아주 오지게 다녀어.</p> <p>= 저것도 다 [L] 이제 돈 받고 간 건가요?</p> <p>네, 아 그건 모르겠는데 또 국민의 세금으로 갖겠조 [A] 니까 여러분 이</p> <p>(중략)</p>
	<p>= [A] 를 들어가 가지고 저런 청탁 취재를 하고 다니니 얼마나 쪽팔리겠어요</p> <p>그러니까요! [A] 의 청탁을 받아서</p> <p>= 아니 근데 본인이 청탁을 받은 받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p> <p>아마 청탁을 직접 받은 거는 그 사람의 상관인 [A] 기자 [A] 사회부장</p>

순번	발언 내용
	<p>= 그니까 위에서 누가 받아서 하청을 줬겠지 하청업자 = 그니까 위에서 누가 청탁을 받아서 = 부장이나 차장이 받아가지고 야 저것 좀 해봐 했겠지 저 기자가 직접 자기가 돈을 받진 않았을 거 아니예요</p> <p>(중략)</p> <p>= 멘트가 네 했던 멘트가 이거예요 저 화면 띄워주세요 저 화면 이 [ T ] 이가 한 멘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산 집만 5곳입니다. [ I ] [ J ] 회장의 아들이 2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은 월세가 4700달러 한국 돈으로 5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빌리는데도 회사돈이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 직원들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이 제보자인 [ V ] 이 집이에요. 근데 애는 완전히 팩트도 하나도 안 맞는 하나도 안 맞는 보도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얼굴 면상을 들이밀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거 하고서 [ Q ] 가 개망신 주고 [ O ] [ P ] 이 아예 저 집가서 실제로 방송까지 했습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T ] 기자 [ A ] [ T ] 기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러고 삽니다. 정말 저게 이 [ A ] 가 심지어 이 리포트가 심지어 탐 리포트였어 탐 리포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이겁니다. 탐리포트였어요 [ I ] [ L ] 청탁 받아서 [ I ] 한거를 세상에 [ F ] 에 탐리포트를 했어요 = 근데 허위야 네</p> <p>(중략)</p> <p>이게 청탁 취재가 아니고 됩니까 = [ A ] 들 기자는 완전히 그냥 딱 저 짓거리하고 용돈받고 먹고사는 거네 네 = 완전히 옛날에 지방지 기자들 하는 예예예 = 지방지가 다 그런 식으로 먹고산다는 거 아니예요 [ R ] 이 [ S ] 조질 때 (웃음)</p> <p>(중략)</p> <p>이걸 보니까 [ O ] 나 [ Q ] 도 이 프로세스를 아니까 걸고 넘어지는거야, 이렇게 청탁 들어와서.. = 막 뭐 서로 뭐 아니 근데 아니 청탁이 아니 무슨 [ M ] [ N ] 도 아니야 이제, 아 치킨집들끼리 아 너무</p>

순번	발언 내용
	<p>안됐다 진짜 [ R ] 이(웃음)</p> <p>진짜 [ S ] 되는 거야</p> <p>= 아 진짜</p> <p>진짜 쪽팔립니다. 지금 [ A ] 가 위상이 이렇게까지 벌어졌습니다.</p>
②	<p>[ A ] 관련해서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려야죠. 이게 일단 이 시작점이 이름도 좇갈에 코너가 없어진 거로  알아요 [ G ] 니미 시발 코너 이름을 지네가 짓고 거의 아마 이걸로 아마 거의 1회로 끝났을걸요. 아마  이거 하나 만들고 문제 돼서 [ W ] 야 [ W ]</p> <p>= 아 그니까 이거를 보니까 저거를 하려고 만들었다가 없어진 것 같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p> <p>= 이걸 위해서, 딱 청탁 방송을 하려고 만들었다가 딱하고 없어졌어. [ A ] 가 저 바닥까지 간 거예요.  [ A ] 라는 데가 이미 청탁 방송으로 전략한 거야</p>
③	<p>네, 아 그건 모르겠는데 또 국민의 세금으로 갖겠죠 [ A ] 니까 여러분 이 아까 [ T ] 기자가 선 이 집  있잖아요. 방송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모두 분노하십시오. 이 [ I ] 회장의 가족이 이렇게 많은  집을 뭐 이용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제보를 한 이 제보를 한 그 [ V ] 이라는 사람이 가족과  살던 집이에요.</p> <p>= [ V ] 의 집이에요?</p> <p>예 [ V ] 이 어찌 됐던 회사의 경비로 근데 이걸 완전히 왜곡을 해서 [ J ] 회장의 집이다 완전히 왜곡을  해서 그래서</p> <p>= 보도 자체도 허위네</p> <p>완전히 다 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 O ] [ P ] 이 이 집을 찾아가요. 제기 [ V ] 을 만나러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 A ] [ T ] 기자님네? 다시 보여주세요 기자들 얼굴 뺄판 다시 다 보여줘 네</p> <p>(중략)</p> <p>그래도 기자라는 게 철칙이 팩트 체크는 해야죠  = 팩트체크도 안 한거예요?  아니 일단 제 집이</p>

순번	발언 내용
	<p>= 아, 집부터 틀려</p> <p>저 집이 [J] 회장 집인지 [V] 이 사는 집인지 그거라도 확인했어야하지어?</p> <p>= 아, 집부터 확인이 안 됐어</p> <p>그럼 정말 예가 했던 스탠드업 멘트가 뭐였나</p> <p>= 아 이게 지금 기사가 다 간거네</p> <p>기사 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아까 전에 저 면상 한번 집 앞에 서 있는 저 면상 저걸 이 저걸 보여주세요.</p> <p>저때 서있을 때 제가 했던</p> <p>= 멘트가</p> <p>네 했던 멘트가 이거예요. 저 화면 띄워주세요. 저 화면 이 [T] 이가 한 멘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p> <p>함께 산 집만 5곳입니다. [I] [J] 회장의 아들이 2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은 월세가 4700달러 한국 돈으로 5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집을 빌리는데도 화삿돈이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 직원들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이 제보자인 [V] 이 집이에요. 근데 애는 완전히 팩트도 하나도 안 맞는 하나도 안 맞는 보도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얼굴 면상을 들이밀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거 하고서 [Q] 가 개망신 주고 [O] [P] 이 아예 저 집가서 실제로 방송까지 했습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T] 기자 [A] [T] 기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저리고 삽니다. 정말 저게 이 [A] 가 심지어 이 리포트가 심지어 탐 리포트였어 탐 리포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이겁니다. 탐 리포트였어요. [I] [L] 청탁 받아서 [I] 한거를 세상에 [F] 에 탐리포트를 했어요.</p> <p>= 근데 허위야</p> <p>네</p> <p>= 아</p> <p>[A] 가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p> <p>= 그렇게 허위인데 이 기자가 안 잘리고 있어요? 이 [T] 기자가?</p> <p>[T] 기자는 뭐 일단 말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p> <p>= 시킨대로 해서 안 잘랐나?</p>
④	<p>자 저 마지막에 저는 [I] 로부터 1원 한 장 받은거 없다 저 얘기가 왜 나온거냐 왜 너 [A] 한테 받을 때는 [A] 랑은 허위 자료 다 해 놓고서 왜 이제 와서 탄소리 흑시 너 [I] 한테 협박 받은거냐 아니다</p> <p>이미 내가 했던 건 이미 법원을 통해서 허위인게 드러났고 실제로 저것도 [P] 에 다 나오는데 막상 그런식으로 싸우고 나니까 [X] 이 그러니까 [L] 회장이 난 몰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 모습에 분노해서 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된 거랍니다. 말 그대로 사기 사기극에 지금 [L] 와</p>

순번	발언 내용
	<p>[A]가 사기극을 동원해 동원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게 제보가 들어온게 이 문제의 그 [A] 아까 그 허위 소리한거 아까 보여주실까요 그 허위 소리한 CG보면 자 [U]이라는 [A] 사회부장이 있습니다. 저 CG넘겨줘 이 [U]이라는 [A] 사회부장이 이달 초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A] 내에서 어마어마한 뒷말이 많죠 실제로 저희한테도 제보가 온 게 [L]한테 벤츠를 받았다.</p> <p>= 벤츠를 받았다.</p> <p>벤츠를 받았다는 아 그 이야기가 [A]에서는 너무 공공연한 사실로</p> <p>= 벤츠 부장이다.</p> <p>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건 [I]의 고위 임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화면 이제 저희 넘겨주세요.</p> <p>= 벤츠 받았냐</p> <p>벤츠 받은거 맞냐 혹시 그런 ㅇ기 혹시 들으셨냐 [I]쪽입니다. [I]쪽에 그 고위 임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벤츠가 아니라 BMW예요</p> <p>= BMW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웃음)</p> <p>[L]니까 BMW... 그래서 암튼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벤츠지 BMW인지 본인이 해명하세요.</p> <p>= 근데 [U]이라는 사회부장 저 사람이 석연히 않게 자기 [A] 그만두고 사모펀드 들어간다.</p> <p>네 저것도 보여주세요. 이게 사표낼 때 실제 이 말이라 이때입니다.</p> <p>= 더 이상 언론사 안간다. 펀드회사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저 [L]라는 회사들 가장 그 1대 거의 사실상 1대 주주죠</p> <p>= 네 거의 1대 주주가 [Y]라는 맞아요</p> <p>= 사모펀드인데 [Y]에 들어간거 아니냐</p> <p>아님 [Y]랑 관련있는 회사일수도 있어요</p> <p>= 그런데 들어간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p> <p>네 정말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희도 [A] 쪽에도 다 확인 해본 결과 호남에다 완전 극좌파 [Z]노조 극좌파인 사람인데 어 저사람이 어 [AA] 정권 들어서고는 또 정치부장도 했었답니다. 권력놀음을 실컷 하다가</p> <p>= 이제 또 갑자기 속 빠져나와</p> <p>이제 정권 바뀌니까 반스런 그것도 펀드회사로, 펀드회사가 과연 [Y]랑 관련이 있을지 아 우리가</p>

순번	발언 내용
	<p>자 그런데 문제는 이 [ V ]이 했던 이 서류들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라서 문제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 허위예요?</p> <p>허위 허위 서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CG 보여주기 전에 이 [ V ]이 실제로 [ O ] [ P ]과 [ O ] [ P ]과 했던 전화녹취 영상 혹시 준비되면 보여주실까요. 이 모든게 다 거짓입니다. 모든게 다 거짓이라고 [ O ] [ P ]에 다 실토를 합니다. 그 동영상 준비되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p>
⑤	<p>( [ P ] 내용)</p> <p>자 저 마지막에 저는 [ I ]로부터 1원 한 장 받은거 없다 저 얘기가 왜 나온거냐 왜 너 [ A ]한테 받을때는 [ A ]랑은 허위 자료 다 해 놓고서 왜 이제와서 딴소리 혹시 너 [ I ]한테 협박 받은거냐 아니다 이미 내가 했던 건 이미 법원을 통해서 허위인게 드러났고 실제로 저것도 [ P ]에 다 나오는데 막상 그런식으로 싸우고 나니까 [ X ]이 그러니까 [ L ]회장이 난 몰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 모습에 분노해서 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된 거랍니다. 말 그대로 사기 사기극에 지금 [ L ]와 [ A ]가 사기극을 동원해 동원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p>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

- 1) 이 사건 영상 중 이 사건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사실은 모두 허위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이러한 허위 사실들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① 이 사건 보도는 보도 대상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부정 청탁에 따른 것이다.
  - ②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위해 'G' 코너를 신설하였다가 1회로 끝냈다.
  - ③ 이 사건 보도 중 V(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 한다)의 집을 I 회장 가족의 집인 것처럼 왜곡 보도한 부분은 허위 보도이다.

- ④ 원고 소속 사회부장이던 U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보도 청탁의 대가로 BMW 차량을 받았고, 이후 퇴사하여 L가 1대 주주인 사모펀드에 취직 하였다.
  - ⑤ 이 사건 제보자가 이 사건 보도 이후 제보 내용 관련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보도이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영상에서 원고 및 그 소속 기자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모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인격권침해 부분'이라 한다).

'이름도 좇잖애', 'G 니미 시발', 'W야 W', 'A라는 데가 이미 청탁 방송으로 전락한 거야', 'L한테 치킨을 몇 마리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L한테 치킨 처먹고 I 공격하는', 'A가 나중에는 R 청탁 받아서 S 공격할 것 같애. R에서 짜파게티 한 그릇 더 받아서 S 짜파게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랄할 거 같아 A가', 'L(팔) 청탁받고, 아니 욕한 거 아닙니다. 하하하 너무 긴장하셨어. L 청탁받고 I 조지는 리포트를 한 AT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면상 영원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 얼굴 쌍판 다시 다 보여줘', 'A들 기자는 완전히 그냥 딱 저 짓거리(청탁받은 기사 보도) 하고 용돈 받고 먹고 사는 거네', 'A가 L 이렇게 돌이 한 팀 먹었어 한 팀'

-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90,000,000원, 모멸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 송출일부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영상 삭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행위 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는 이 사건 영상의 삭제를 구한다.

### 3.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D의 이 사건 영상을 통한 방송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은 이 사건 영상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위 영상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추임새만 넣었으므로, 피고 D 개인에게 피고 회사 및 피고 C와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은 상당 기간 피고 C와 함께 유튜브 채널 'E'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영상도 마찬가지로, ② 이 사건 영상은 피고 D과 피고 C가 서로 문답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하며 진행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분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피고 D이 피고 C보다

먼저 발언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영상은 피고 D를 ‘E장’이라고 소개하였고(이 사건 영상의 재생 시간 00:03:47경부터 00:03:48경까지 부분 참조), 피고 C도 방송 도중 피고 D를 “소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한 점(이 사건 영상의 재생 시간 00:43:45경 부분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피고 C와의 공동 진행을 통해 이 사건 영상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분에 관한 각 발언의 직접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피고 회사, C와 공동하여 위 영상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분 및 인격권 침해 부분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제① 내지 ⑤ 각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1) 사실의 적시 여부

######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제① 내지 ④ 각 부분의 경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을 접하는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제① 내지 ④ 각 부분이 ‘① 원고는 보도 대상인 I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인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위해 ‘G’ 코너를 신설하였고, 위 보도 이후 1회로 위 코너를 끝냈다, ③ 원고는 미국에 있는 이 사건 제보자의 집을 마치 I 회장 가족의 집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보도하였다, ④ 원고 소속 사회부장이던 U은 L로부터 이 사건 보도 청탁의 대가로 BMW 차량을 받았고, 이후 퇴사하여 L가 1대 주인인 사모펀드에 취직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위 각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이하 위 순서대로 ‘이 사건 제① 내지 ④ 각 적시 사실’이라 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제⑤ 부분의 경우

원고는 피고 D, C가 이 사건 제⑤ 부분을 통해 '이 사건 제보자가 이 사건 보도 이후 제보 내용 관련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보도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보자가 이 사건 보도 이후 제보 내용 관련 진술 등을 번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 D, C가 이 사건 보도 전체가 허위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⑤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제보자가 이 사건 보도 이후 제보 내용 관련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 제보자가 원고 측에게 전달한 서류들이 다 거짓 이라고 밝힌 이상 위 보도는 허위 보도이다'라고 명시적·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제보자가 이 사건 보도 이후 제보 내용 관련 진술 등을 번복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후 '말 그대로(이 사건 제보자의) 사기극에 지금 L와 원고가 동원된 거죠'라고 발언한 점 및 이 사건 제⑤ 부분의 객관적 내용, 이 사건 영상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는 위 부분의 의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하면, 그 표현에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⑤ 부분을 접하는 일반 시청자로서는 위 부분이 그 자체로써 원고나 그 소속 기자들에 관한 어떠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보도의 진위 여부에 대한 피고들의 추정적 내지 평가적인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제⑤ 부분에서 드러난 피고들의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앞서 본 이 사건 제보자가 이 사건 보도 이후 제보 내용 관련 진술 등을 번복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위 기초가 되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⑤ 부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때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①, ④ 각 적시 사실의 경우

(1)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제①, ④ 각 적시 사실은, 원고는 보도 대상인 I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인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보도를 하였고, 당시 원고 소속 사회부장이던 U은 이후 L로부터 위 보도 청탁의 대가로 BMW 차량을 받았으며, 퇴사하여 L가 1대 주주인 사모펀드에 취직하였다는 것으로,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한 행위의 유형 등만 대략적으로 나타날 뿐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시간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①, ④ 각 적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①, ④ 각 적시 사실과 같은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제①, ④ 각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 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①, ④ 각 적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각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제① 적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제① 부분이 '(원고 측이) L 소유 고급 고깃집(AB)에서 접대를 받은 후, 편파 방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Q 내지 O P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거나 동일한 취지로 평가적 의견을 개진 하고 비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sup>1)</sup> 「'I 죽이기'에 L 회장부터 임직원까지 관여했다」는 제목의 2020. 10. 6.자 Q 기사(을다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에는 L X 회장이 방송사 기자에게 이 사건 제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1) 피고 D의 2023. 6. 12.자 준비서면 1, 2쪽 참조.

언급만 있을 뿐이고, 위 기사의 전체 내용을 살펴봐도 구체적으로 원고가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는 이 사건 제① 적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관련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초로 이 사건 제보자를 인터뷰한 원고 소속 AC 기자는 '이 사건 제보자를 소개해준 사람은 L X 회장이 아니라 L의 직원인 AD이고, 위 제보자가 사전에 X 회장을 위 인터뷰 장소에서 만났다거나, X 회장이 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즉 원고 소속 기자들이 I의 경쟁 업체인 L 측의 주선으로 이 사건 제보자를 만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 측은 위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미국 현지 취재, 필적 감정 등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보도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이 제출한 자료나 이 사건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원고측이 L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④ 적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제④ 부분에서 "I의 고위 임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22. 5. 2.자 내용증명을 통해 I에 대해 '피고 회사 측이 이 사건 영상에서 통화했다고 언급한 I의 고위 임원이 누구인지, 해당 임원은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I는 2022. 5. 10.자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I의 고위 임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허위 사실 유포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I 또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영상 제작에 지원이나 참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밖에 피고들은 이 사건 제④ 적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 소속 사회부장이던 U이 BMW 차량을 타고 다니기는 하나 위 차량은 U의 배우자가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약 4년 6개월 전인 2014. 5. 21.경 자동차 등록을 마친 차량이고, ㉡ U은 원고를 퇴사하면서 2022. 4. 1.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이 사건 영상이 송출된 이후인 2022. 5. 12.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이 사건 제② 적시 사실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G'라는 뉴스 프로그램 코너를 신설하여 2018. 11. 15. 처음 이 사건 보도를 한 이래 2020. 9. 8.

「AE」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년 10개월간 총 24건의 기획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위해 'G' 코너를 신설하였고, 위 보도 이후 1회로 위 코너를 끝냈다'는 이 사건 제②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③ 적시 사실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소속 T 기자는 이 사건 보도에서 “같은 집에 살면서(이 사건 제보자와 IJ 회장 아들이 같은 집에 살았다는 취지)”, “함께 산 집만 다섯 곳입니다”, “J 회장의 아들이 2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은”이라는 언급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보자가 가족과 살던 집을 IJ 회장의 집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보도의 전체 내용을 살펴봐도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③ 적시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보자의 집을 IJ 회장의 집이라고 왜곡하여 허위 보도를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하였는바[피고 C, D은 “이 제보를 한 그 V이라는 사람이 가족과 살던 집이에요. (중략) 근데 이걸 완전히 왜곡을 해서 J 회장의 집이다 완전히 왜곡을 해서 그래서(피고 C)”, “보도 자체도 허위네(피고 D)”, “완전히 다 허위입니다(피고 C)”라고 각 발언하였다, 이 사건 영상의 재생 시간 00:23:32경부터 00:23:53경까지 부분 참조], 이 사건 제③ 적시 사실도 허위라고 인정된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원고는 허위인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5천 명에 육박하는 원고의 사원들 중 단 2명 정도의 직원들 개인에 대해 청탁 보도의 직접 가담자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원고 자체, 즉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은 원고가 보도한 이 사건 보도가 청탁에 의한 허위 보도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속 기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위 기자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가 소속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영상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I에 대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보도 이후 이 사건 제보자가 제보 관련 내용을 반복하기도 하였으며, 경쟁 업체인 I와 L 사이의 분쟁에 양사의 최고위직 임원들이 관여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보도를 한 원고는 공영 방송사로서 국민들의 폭넓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나 취재 과정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일반 시청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이 사건 영상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그 영상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실제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특히 원고와 I 사이에는, I 등이 원고, 원고 소속 사회부장이던 U 및 이 사건 보도를 취재한 원고 소속 기자 T를 상대로 이 사건 보도의 일부 내용(위 보도 중 I의 자금으로 I 회장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부분 및 I 회장 아들이 I의 미국 법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738)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한 점(다만 위 사건에서 I 등이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를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영상에서 적시한 각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도(앞서 본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영상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단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보도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허위 보도라는 취지의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국가 기간 방송사이자 공영 방송사로서 원고의 지위와 책무,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목적, 이 사건 영상의 형식, 내용, 표현 방법, 이 사건 영상 제작의 영리성, 이 사건 영상이 송출된 유튜브 채널의 전파성과 인지도, 이 사건 영상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및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금액을 1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부분과 관련하여: 인격권 침해 내지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인격권 침해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에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부분에 관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부분의 객관적인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의 각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나, 원고 및 그 소속 기자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는 해당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적 존재로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부분의 발언을 통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국가 기간 방송사이자 공영 방송사로서 원고의 지위와 책무,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목적, 이 사건 영상의 형식, 내용, 표현 방법, 이 사건 영상 제작의 영리성, 이 사건 영상이 송출된 유튜브 채널의 전파성과 인지도, 이 사건 영상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및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금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위자료 합계 15,000,000원(= 12,0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일인 2022. 4.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영상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기사 등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1) 진실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적시 사실 및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언론의 자유보다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에 이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 채널 'E'에서 삭제 할 것을 명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편집자 주)**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pdf 파일은 지면 관계상 인쇄본에 실지 못한 판결문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